

시장구조와 경쟁효율

황인학

발 간 사

경제력집중에는 일반집중, 복합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의 네가지 유형이 있다. 이중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시장집중을 가장 문제삼고 선진공업국의 경쟁정책도 시장독과점에 따른 경제적 폐해의 완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위 4가지 유형이 주로 재벌기업에게서 관찰된다는 사실 때문에 경제력집중을 재벌문제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제도적으로는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30대재벌에의 경제력집중 완화를 주요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데서 보듯이 일반집중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시장집중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독과점 사업자 및 품목의 지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 경쟁제한적인 시장행태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위한 규제조항을 두고는 있지만 제도의 기준이나 운용실적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공업국처럼 일반집중보다는 시장집중의 문제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집중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지배력이 증가하고 독과점의 폐해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또 30대재벌이 국민경제상에 점하는 위치는 다른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에 일반집중에 대한 규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본 보고서의 저자가 다른 연구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일반집중도는 우리나라에서 현저하게 높은 것은 아니며 비교기준에 따라서는 OECD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낮다.

일반집중에서 시장집중으로 경제력집중에 대한 관심이 전환되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경쟁환경의 변화이다. 국경을 초월하여 외국의 다국적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시대에 국내 대기업을만 적용대상으로 하는 일반집중 억제시책은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 열린경제체제 아래에서는 국내외 기업이 함께 활동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규범을 운용하는 것이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사회후생 극대화원칙에 부합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경쟁정책은 각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쟁제한적인 기업행태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훼손 당하지 않는지에 좀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현행의 공정거래법은 일반집중의 억제시책으로서가 아니라 시장경쟁의 촉진책으로서 제자리를 되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시장집중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가지 중요한 쟁점사항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이를 열거하면 첫째, 시장의 경쟁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 비용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뒷받침할 만큼 높은 수준인가? 둘째, 학계의 연구와 경쟁정책에서 시장지배력의 척도로 흔히 활용되는 상위 k-기업 집중도, 허핀달 집중지수, 산업별 재벌집중도는 사회적 비용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집중도가 높을수록 자원배분의 효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집중도는 신뢰할만한 경쟁척도'로 보는 일반적인 가설은 통계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가? 셋째, 앞에 언급한 여러 가지 집중지표가 시장경쟁의 진면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위의 쟁점 각각은 시장구조와 경쟁효율의 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적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연구과제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산업조직론의 고전적인 연구분야에 속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일반집중에 대한 높은 관심 탓인지 이들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실증분석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저자가 기존연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위의 세가지 쟁점을 새로운 관점에서 실증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연구나 정부의 경쟁정책 운용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이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본원의 황인학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이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지리한 통계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정하 연구조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밖에도 본 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에 참석하여 귀한 말씀을 주신 이재우 박사를 비롯하여 산업연구실 제위, 권영민 박사, 이주선 박사, 한광석 박사에게 감사드리며 또 본 보고서를 충실히 읽고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두분 심사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연구보고서에 담긴 모든 내용은 저자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7년 10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 승 희

차례

제1장 문제의 제기/15

1. 연구의배경/15
2. 연구의 목적/18
3. 이 책의 구성/ 24

제2장 한국의 시장구조와 경쟁정책/26

1. 시장구조와 시장집중/26
 - (1) 시장구조의 결정요인/26
 - (2) 시장구조의 측량과 집중도/30
2. 시장집중과 경쟁정책
 - (1) 집중지표와 경쟁정책/35
 - (2) 경쟁정책의 양면성/46
3. 한국 제조업의 시장구조/50
 - (1) 시장의 분류/50
 - (2) 품목별 시장집중/52
 - (3) 산업별 기업집중/56

제3장 시장집중과 사회적 비용/65

1. 독점의 사회적 비용/67
 - (1) 전통적 후생삼각형/67
 - (2) 라이켄슈타인의 X-비효율/73
 - (3) 포스너의 지대추구가설/76
 - (4) 경쟁배제전략과 사회적 비용/80
2. 불완전경쟁의 사회적 비용 추정모형/84
 - (1) 기본모형/84
 - (2) 응용연구 1 : 시장효율지표의 선택/90
 - (3) 응용연구 2 : 지배기업모형과 사회적 비용/94
3. 사회적 비용의 추정/97
 - (1) 추정방법/97
 - (2) 추정결과/101
 - (3) 추정결과의 시사점/114
4. 시장집중과 사회적 비용의 관계/119

제4장 시장집중과 동태적 경쟁/124

1. 구조-성과 논쟁/124

2. 시장과정으로서의 경쟁/127
3. 이동지표의 측정/131
4. 구조지표와 이동지표의 관계/137
 - (1) 구조지표와의 관계/137
 - (2) 시장비효율도와의 관계/142

제5장 요약 및 결론/145

1. 결과 요약/145
2. 정책적 시사점/149
3. 분석의 한계/152

참고문헌/155

부록/162

영문초록/193

표차례

<표 1> 시장지배력 지표의 종류	14
<표 2> 집중도의 정책활용사례(1997년 4월 기준)	18
<표 3> 시장지배적사업자 연도별 지정현황	19
<표 4>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범위반행위 시정실적	19
<표 5> 유형별·형태별 기업결합과 위반행위 시정실적	22
<표 6> 한국의 진입 및 가격규제 현황	25
<표 7> 시장의 정의와 독점금지법(사례)	29
<표 8> 미국의 시장구조별 GNP 비중	32
<표 9> 산업별 집중도의 변화추이(1991~1995)	34
<표 10> 1991년도 재벌계층별 집중도	35
<표 11> 1995년도 재벌계층별 집중도	36
<표 12> 재벌집중도, CR ₄ , 허핀달 지수의 상관관계(1995년)	38
<표 13> 독점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요약	51
<표 14> 시장선점을 위한 설비투자와 사회적 손실(사례)	53
<표 15> 사회적 비용의 4가지 추정모형	66
<표 16> 전통적 후생손실 삼각형의 추정결과(모형 1)	69
<표 17> 내부 비효율을 감안한 후생손실 삼각형의 추정결과(모형 2)	70
<표 18> X-비효율론에 입각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결과(모형 3)	71
<표 19> 지대추구론에 입각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결과(모형 4)	72
<표 20> 사회적 비용의 추정결과 요약	78
<표 21> 시장집중도와 시장비효율도의 상관관계(1995년)	82
<표 22> 산업별 이동지표의 측정	93
<표 23> 이동지표와 구조지표의 상관관계	95
<표 24> 이동지표와 시장비효율도의 상관관계	98

부 록 차 례

<부표 1-1> HHI지수와 CR ₄ 의 범위 조건표	113
<부표 2-1> 제조업부문 산업별 집중도의 변화추이(1991~1995년)	114
<부표 2-2> 제조업부문 산업별 상위8개사와 시장점유율(1995년)	115
<부표 2-3> 제조업부문 산업별 재벌집중도(1991년)	117
<부표 2-4> 제조업부문 산업별 재벌집중도(1992년)	118
<부표 2-5> 제조업부문 산업별 재벌집중도(1993년)	119
<부표 2-6> 제조업부문 산업별 재벌집중도(1994년)	120
<부표 2-7> 제조업부문 산업별 재벌집중도(1995년)	121
<부표 3-1> 사회적 비용 추정 자료(1992년)	122
<부표 3-2> 사회적 비용 추정 자료(1993년)	123
<부표 3-3> 사회적 비용 추정 자료(1994년)	124
<부표 3-4> 사회적 비용 추정 자료(1995년)	125
<부표 3-5> 제조업부문 산업별 사회적 비용과 시장비효율도(기본모형) ...	126
<부표 3-6> 제조업부문 산업별 사회적 비용과 시장비효율도(수정모형) ...	127
<부표 3-7> 제조업부문 산업별 사회적 비용과 시장비효율도(X-비효율모형)	128
<부표 3-8> 제조업부문 산업별 사회적 비용과 시장비효율도(지대추구모형)	129
<부표 3-9> 산업별 시장비효율도와 구조지표의 분포도	130
A. 시장비효율도와 허핀달 집중지수	130
B. 시장비효율도와 상위3대기업 집중도	130
C. 시장비효율도와 5대재벌 집중도	131
D. 시장비효율도와 30대재벌 집중도	131
<부표 4-1> 산업별 이동지표	132

<부표 4-2> 산업별 진입/퇴출지수(TURNE)와 구조지표의 분포도	133
A. TURNE와 상위4대기업 집중도	133
B. TURNE와 허핀달 집중지수	133
C. TURNE와 5대재벌 집중도	134
D. TURNE와 30대재벌 집중도	134
<부표 4-3> 산업별 시장점유율 불안정도(TURNc)와 구조지표의 분포도	135
A. TURNc와 상위4대기업 집중도	135
B. TURNc와 허핀달 집중지수	135
C. TURNc와 5대재벌 집중도	136
D. TURNc와 30대재벌 집중도	136
<부표 4-4> 산업별 점유율 상관도(CORSH)와 구조지표의 분포도	137
A. CORSH와 상위4대기업 집중도	137
B. CORSH와 허핀달 집중지수	137
C. CORSH와 5대재벌 집중도	138
D. CORSH와 30대재벌 집중도	138
<부표 4-5> 산업별 점유율 회귀분석 계수(REGSH)와 구조지표의 분포도	139
A. REGSH와 상위4대기업 집중도	139
B. REGSH와 허핀달 집중지수	139
C. REGSH와 5대재벌 집중도	140
D. REGSH와 30대재벌 집중도	140
<부표 4-6> 산업별 시장비효율도와 이동지표의 분포도	141
A. 시장비효율도와 진입/퇴출지수(TURNE)	141
B. 시장비효율도와 시장점유율 불안정도(TURNc)	141
C. 시장비효율도와 점유율 상관도(CORSH)	142
D. 시장비효율도와 점유율 회귀분석 계수(REGSH)	142

그림 차례

<그림 1> 경제력집중의 유형과 관계	3
<그림 2> 구조, 행태, 성과 변수간의 상호관계 예시	12
<그림 3>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23
<그림 4> 품목별 시장집중의 추세변화(상품수 기준)	31
<그림 5> 품목별 시장집중의 추세변화(출하액 기준)	31
<그림 6> 독점의 사회적 비용	42
<그림 7> 불완전 경쟁하의 사회적 비용	57
<그림 8> 진입/탈락지수와 30대재벌 집중도의 산업별 분포도	97

제 I 장 문제의 제기

경제학은 전혀 상반된 견해를 펼치는 두 사람 모두에게 노벨상을 주는 유일한 분야이다. 1974년에 뮌헨과 하이예크가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것은 이를 말해준다.

Economics is the only field in which two people can share a Nobel Prize for saying opposite things. Specifically Myrdahl and Hayek shared one. -Jokes about Economists and Economics (www.etla.fi/pkm/joke.html).

1. 연구의 배경

경제력집중은 경제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약방의 감초마냥 늘 거론되는 문제이다. 경제력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에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다른 경제정책이 왜곡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공기업 민영화는 당위적인 추세라 하면서도 재벌이 참여하면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업간 인수합병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하면서도 혹 재벌의 무분별한 기업사냥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의구하여 적대적 기업인수의 요건을 강화시킨 것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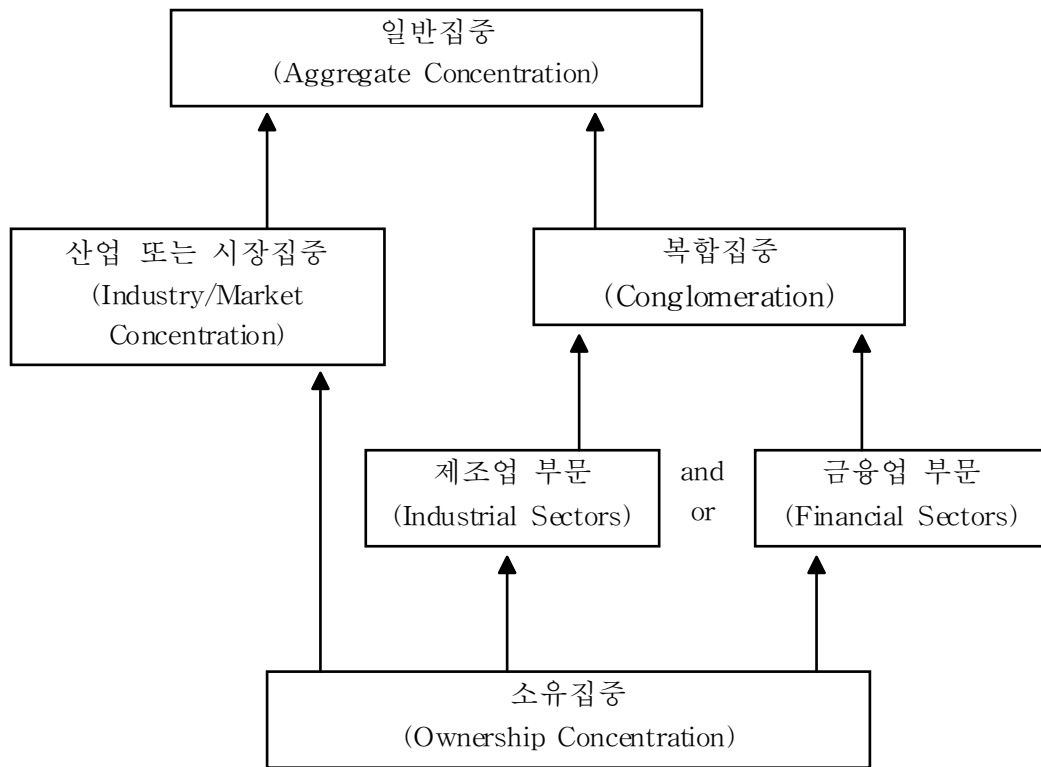
그러나 정부정책의 검토과정이나 일반 여론에서 흘러나오는 경제력집중은 그 개념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모호한 경우가 적지않다. 경제력집중은 소유집중, 시장집중, 복합집중, 일반집중 등 최소한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1>에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들 각 유형의 경제력집중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여기서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이 밀접한 관계가 반드시 단선적인 상승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다각화는 복합 및 일반집중을 증가시키지만 시장집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각 유형의 경제력집중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력집중의 완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할 때에는 어느 유형의 경제력집중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경제력집중 운운하며 정책을 운용할 경우 정부정책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기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정치논리를 경제논리로 포장하기 위해 경제력집중의 개념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¹⁾

그동안 경제력집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항상적인 정책적 이슈가 되어온 만큼 이 부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소유집중, 시장집중, 복합 및 일반집중의 세 유형이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관찰된다는 사실 때문에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재벌문제와 동일

1) 이의 한 예로는 삼성그룹이 승용차 시장에 다변화 진입하는 것은 허용하고, 현대그룹이 일관제 철소 사업에 진출하려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림 6> 경제력집중의 유형과 관계



출처: Kemani-Shapiro-Stanbury(1988), Mergers, Corporate Concentration and Powers in Canada, 21쪽

시하고 유형별 세분화보다는 포괄적, 또는 조합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도 학계의 이러한 연구성향에 크게 영향받고 있다는 증거는 1996년판 『공정거래연보』의 다음 표현에서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력집중’은 ……기업집중(일반집중), ……시장집중(산업집중), ……소유집중, ……업종다각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력집중’도 이와 같은 관점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특정인’이 혈연을 중심으로 다수의 대기업들을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가운데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이 아닌 선단식 그룹경영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영위업종을 다각화하여 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115쪽)”

경제력집중의 한국적인 특성상 나무 하나하나가 아닌 숲 전체를 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재벌문제와 동일시하는 포괄주의적 접근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적지않은 문제점을 수반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포괄주의적 접근방식은 경제력집중 각 유형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상충성, 각 유형에 내재된 경제적 폐해의 차이점을 간과한

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정부가 모든 유형의 경제력집중을 문제삼아 시정하려고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한국의 경제력집중 현상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한 방법은 먼저 경제력집중 유형별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유형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경제력집중의 관련 이슈를 단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는 연구의 일환이다. 한국의 일반집중에 관련된 현상과 인식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으며²⁾ 여기서는 <그림 1>의 좌측에 표시되어 있는 시장집중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시장집중에 관한 이슈들 중에서도 여기서는 특히 시장집중과 경제적 효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2. 연구의 목적

선진공업국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시장집중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경제력집중의 가장 큰 문제로 여긴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시장집중보다는 30대재벌에의 경제력집중과 같이 일반집중의 문제에 대해 더 비중을 두어 왔다. 공정거래법상에 기업결합의 심사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시장집중지표를 활용하고, 시장을 독과점화하는 기업행태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대체로 시장집중보다는 30대재벌에의 경제력집중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반집중도는 한국 특유의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할만큼 높지 않다. 비교지표에 따라서는 오히려 OECD 선진국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 일반집중의 심화가 반드시 시장의 독과점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경제적 효율성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집중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집중을 구태여 우려할 이유는 없다. 여기에 경제가 개방화되는 추세에서 일반집중 억제시책은 궁극적으로 국내기업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의 대기업에 대해 역차별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소비자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이슈는 일반집중에서 점차 시장집중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2) 일반집중의 현상과 인식에 대해서는 필자의 출고(1997)를 참조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의 경쟁정책이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장집중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시장구조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고 사회적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상적인 시장구조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완전경쟁이다. 이 상태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의 가격신호에 순응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사회적 자원은 최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완전경쟁은 이론적 허구일 뿐이며 현실경제에서 이 모형이 상정하고 있는 경쟁상황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은 시장경제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理想으로서, 그리고 현실경제가 理想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서 유용하다는 믿음 때문에 자주 언급되고 있다.³⁾

현실에서 우리가 접하는 시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불완전 경쟁이 주류를 이룬다. 불완전 경쟁이라 함은 달리 말하면 일부 경제주체가 시장지배력을 보유,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시장가격에 순응하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윤을 더 얻기 위해 시장가격을 높이려 한다. 이 결과 경제현실에서 관찰되는 시장가격은 완전경쟁상태에 비해 높게 되고 소비자 부담은 높아지는 사회적 손실(deadweight loss)이 초래된다. 경쟁이 불완전한 시장구조일수록 사회적 손실도 높아진다는 사실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시장구조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며, 또 각국 정부가 경쟁정책을 운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구조, 또는 시장경쟁의 불완전도는 어떻게 측정되는가? 사회적 손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쟁의 척도로 흔히 시장집중도가 이용된다. 시장집중도는 해당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수와 규모를 지수화한 것으로서 각국의 경쟁정책이나 학계의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 기업결합의 심사와 독과점품목의 선정기준으로 상위 k기업집중도를 이용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허핀달 집중지수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불완전 경쟁, 사회적 손실, 시장집중도, 그리고 경쟁정책의 운용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몇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현실경제에서 경쟁부족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정부가 시장개입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가? 또 반독점법 등에서 집중도를 시장경쟁의 대리

3)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커즈너는 완전경쟁모형을 규범적 이상으로도, 현실경제의 비교척도로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상세한 설명은 Kirzner(1991) 참조.

지표로 활용하는 정책관행에는 문제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소수기업에의 매출집중이 시장지배력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의미하는가? 경쟁을 과정으로 보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장과정론에 따르면 진입과 퇴출, 기업간 순위변동을 반영하는 이동지표가 진정한 의미의 경쟁척도라 한다. 그러나 집중도와 이동지표는 상호밀접한 대체관계에 있다는 믿음 때문에 측정이 까다로운 이동지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통적 믿음은 실증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가, 즉 이동지표와 집중도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에 불과한가?

이 보고서는 1991년~1995년 기간 중 한국의 제조업부문 21개 산업(KSIC 중분류 산업)을 대상으로 위의 질문에 해답을 구해보는 데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 위에 의문사항들은 시장구조와 경쟁효율의 관계를 규명하는데서 뿐만 아니라 경쟁정책의 운용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들이다. 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산업조직론의 고전적인 연구분야에 속해있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연구가 이 분야의 기존연구에 대해 어떤 차별성이 있고, 또 어떤 의의가 있는가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크게 보아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대해 두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독점이 아닌, 불완전경쟁이라는 좀더 일반적인 경쟁상황을 전제로 사회적 손실비용을 추정한다. 사회적 손실비용을 추정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흔히 해당산업이 독점이라고 간주하는 한편, 산업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동일하다는 다소 자의적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경쟁이 이론적인 허구인 것처럼 완전독점 또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Monopoly is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대부분의 시장은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 달리 경제현실을 좀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불완전경쟁 모형, 또는 지배기업이론(dominant firm theory)에 기초하여 사회적 손실비용을 추정한다.

이 보고서에서 도출되는 사회적 손실비용의 이론추정모형은 전통적인 구조, 행태, 성과변수를 모두 포함한다. 즉, 한 산업의 사회적 비용은 허핀달 집중지수, 기업간 경쟁행태, 산업의 초과이윤에 의해 결정되며 독점은 특수한 경우의 하나로 포함된다. 이론 모형의 실증적용에 있어서도 전통적 후생손실 삼각형을 추정하는 외에도 본 보고서는 X-비효율론, 지대추구이론 등을 가미한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부족에 따른 사회적 비용규모를 추정한다.

둘째, 본 보고서에서는 시장경쟁의 척도로서 기존연구에서 중시해 온 집중

도 외에 이동지표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기존의 구조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집중도는 시장지배력을 반영한다. 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이윤율은 높고 경쟁효율은 낮게 된다는 구조-성과적 해석은 집중도를 시장지배력의 대리지표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집중-고이윤율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때문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 등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시카고 학파의 효율성 가설(efficiency hypothesis)은 그 중의 하나이다. 또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에서 집중도는 시장지배력과 무관하다는 경합시장이론(contestable market theory), 소수의 대기업으로 구성된 고집중 산업에서도 이들간 효과적인 경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유효경쟁론(effective competition theory)도 집중도와 경쟁효율은 항상 역(逆)의 관계에 있다는 구조주의적 가설을 반박하고 있다.

집중도가 시장지배력, 더 나아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적절한 척도인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집중도에 내재된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집중도는 경쟁을 일정한 시점에 주어진 정태적 상태(state of affairs)임을 전제로 측정된 지표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경쟁은 상태가 아니라 여러 시점에 걸쳐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process)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이런 관점에서는 모든 기업을 匿名化하여 규모의 분포만을 가지고 작성하는 집중도보다는 개별기업의 이동지표(mobility statistics)가 시장경쟁의 보다 정확한 척도가 된다. 여기서 이동지표는 한 산업에서 진입과 퇴출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간의 순위는 얼마큼 어떻게 변동하는지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동안 이동지표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정책적 활용은 물론 학계의 연구에서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이동지표가 집중도에 비해 계산이 번잡하다는 점, 그리고 집중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별 이동지표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도와, 그리고 사회적 손실비용과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이동지표의 유용성을 재평가한다.

3. 이 책의 구성

이 보고서는 전체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다음에 이어지는 제II장에서는 시장구조와 집중도의 관계, 집중도를 시장지배력의 척도로 활용하고 있는 경쟁정책의 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한국 제조업부문에서 시장집중도가 장·단기에 걸쳐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경쟁의 불완전성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낭비는 얼마나 될까, 또 이 사회적 비용과 집중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다룬다. 먼저 제1절에서는 독점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경쟁상황을 전제로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고 있는 기존연구들의 방법론과 연구결과에 대해 살펴본 후, 제2절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불완전경쟁이론에 기초하여 사회적 비용의 추정모형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3절의 실증분석에서는 전통적인 후생손실삼각형, X-비효율론, 지대추구이론을 각각 반영하여 한국 제조업에서의 사회적 비용규모를 추정한다.

제III장 제3절에서 추정된 사회적 비용은 추정모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 후생손실삼각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규모는 1992~1995년 기간 중 연평균으로 GNP 대비 0.12%~0.23%, X-비효율론에 따라 접대비와 광고비를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볼 경우에는 GNP 대비 0.15%~1.36%, 그리고 지대추구이론을 전폭 수용할 경우에는 GNP 대비 2.76%~2.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III장 제4절에서는 집중도와 사회적 비용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행한다. 여기에서는 집중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비용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관계는 일반적인 기대만큼 밀접하지는 않음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집중도가 시장경쟁도의 척도로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표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제IV장에서는 경쟁을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장과정론에 따라 산업별로 여러 가지 이동지표를 측정한다. 그리고 측정된 이동지표가 집중도, 그리고 사회적 비용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살펴본다. 이 분석을 통해 제IV장에서는 집중도와 이동지표는 대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표를 사용하는가는 단지 선택의 문제라는 일반적인 가설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보인다. 또 이 결과는 시장경쟁도의 판단, 경쟁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집중도 외에도 이동지표를 중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는 한편, 정책적 시사점과 분석의 한계에 대해 정리한다.

제 II 장 한국의 시장구조와 경쟁정책

Adams(1986): 모든 힘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업의 힘도 응당 분산되어야만 한다(405쪽).

Since all powers tends to develop into a government in itself, industrial power should be decentralized.

Demsetz(1973): 기업은 더 나은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소수 기업이 이에 성공하면 그 노력은 (단기적) 독점력으로 귀결되는 한편, 시장집중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지배력이 발생한다 하여 이를 부정하는 것은 진보를 향한 동기 자체를 말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3쪽).

If rivals seek better ways to satisfy buyers or to produce a product, and if one or a few succeed in such endeavors, the reward for their entrepreneurial efforts is likely to be some (short term) monopoly power and this may be associated with increased industrial concentration. To destroy such power when it arises may very well remove the incentive for progress.

1. 시장구조와 시장집중

(1) 시장구조의 결정요인

한 시장을 경쟁형이니, 독점형이니, 또는 과점형이니 하고 구분하는 것은 시장구조에 관한 문제이다. 경제학자들이 시장구조에 대해 첨예한 관심을 갖는 1차적인 이유는 경제적 효율성 때문이다. 경쟁이 완전한 시장에서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만, 현실의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이라는 이상적 규범(ideal norm)에서 멀어질수록 경제적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정설로 굳어져 있다. 시장의 독과점도가 높은 경우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 규정하고 경쟁촉진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정책논리도 시장구조와 경제적 효율성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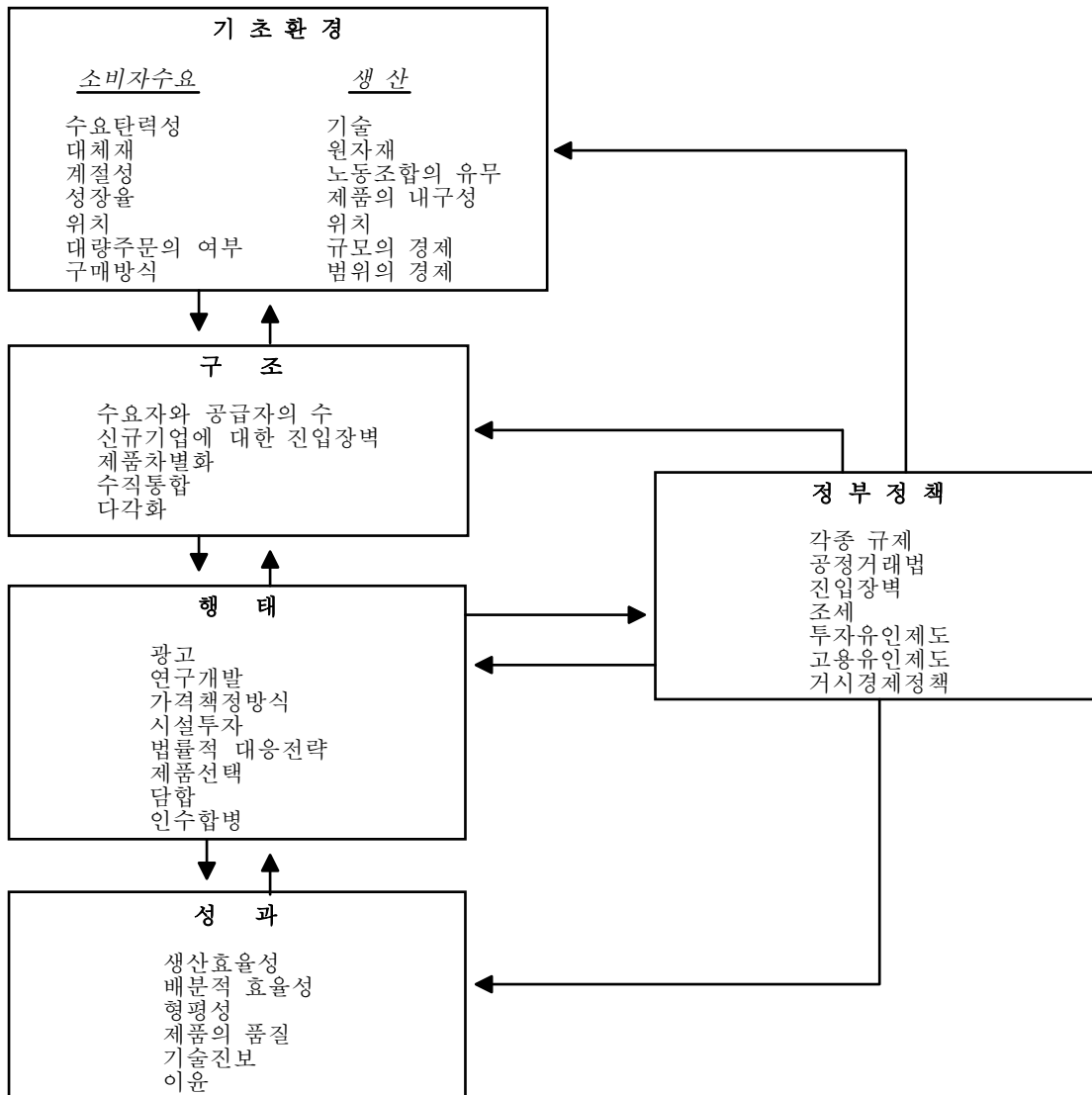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관점에서도 시장구조는 주목의 대상이다. 앞에 인용된 “모든 힘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업의 힘 역시 당연히 분산되어야만 한다”는 아담스(Adams,

1986)의 주장은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이러한 주장은 구 제도학파의 경제학자와 일부 산업사회학자를 중심으로 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 학자는 시장지배력을 지닌 대기업이 기업패권(corporate hegemony)을 형성하고, 정부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 패권을 행사하는 점에 특히 우려한다. 즉, 대기업 상호연대를 통해 공익과의 상충여부를 불문하고 기업이익을 옹호하고 또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자신들의 경제적 지배력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각국의 반독점법 형성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촉진이 본연의 기능이어야 할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의 억제가 주요 목표로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별기업 입장에서도 시장구조에 대한 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관련 시장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가격이나 생산량 결정, 신규사업에의 진출과 같은 경영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장에서 가격순응자가 될지 아니면 가격선도자가 될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초래하지 않고, 또 이미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의 도전을 최소화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은 시장구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경쟁정책은 물론, 개별기업의 의사결정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장구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셔러(Scherer, 1980)에 따르면 시장은 기초조건, 구조, 행태, 성과 등 네가지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시장의 기초조건은 다시 수요와 기술의 특성으로 이원화되고, 시장구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 진입장벽의 높이, 제품차별화의 정도, 수직적 통합, 다각화 등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에 시장행태는 가격전략, 제품전략, 광고 등 주로 마

<그림 7> 구조, 행태, 성과 변수간의 상호관계 예시



출처: Carlton-Perloff(1989), 4쪽

케팅 요소를 포괄한다. 시장성과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성, 이윤 등을 뜻하고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생산과 배분의 효율성, 기술진보, 완전고용과 형평성 등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산업조직론에서는 시장의 기초조건과 시장구조로부터 시장행태와 시장성과가 결정되는 인과관계를 중시해왔다. 즉, 기업의 수, 진입장벽, 다각화 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구조(structure)는 개별기업의 마케팅 전략 등의 행태(behavior)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과 이윤, 더 나아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 시장성과(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구조(S) → 행태(C) → 성과(P)의 단선적인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산업조

직론은 흔히 SCP 분석패러다임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산업조직론으로도 불리우는 최근의 연구경향은 SCP 분석패러다임에 회의적이다. 시장구조, 행태, 성과는 단선적이 아니라 오히려 좀더 복잡하고 중층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림 2>는 최근의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즉, <그림 2>는 기업의 수나 진입장벽과 같이 시장구조의 결정요인으로 예전에 중시되어 왔던 변수들외에도 기업행태, 시장성과, 그리고 정부정책에 의해서도 시장구조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광고나 R&D와 같은 행태변수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고, 또 생산효율성이나 내부유보이윤과 같은 성과변수도 시장행태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 또한 공정거래법의 운용이나 진입규제, 부도방지협약과 같은 퇴출억제정책 등을 통해서, 그리고 물가관리와 같은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SCP 분석패러다임과 달리 최근에는 시장구조가 좀더 복잡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구조-행태-성과는 단선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호순환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것은 모든 것에 의존한다(Everything depends on everything)”는 경제학의 한 격언을 상기시킨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인 SCP 패러다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기존의 구조-성과 분석은 당연히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 기존의 시장구조 측정방법과 측정된 구조지표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2) 시장구조의 측정과 집중도

시장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감안하는 구조지표를 만들기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경제학자들은 특정 기업군이 한 시장에서 매출, 고용, 또는 자산 등의 상대적 비중을 수치화한 시장집중도(market concentration indices)를 시장구조의 대리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집중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이중 상위 k기업집중도, 허핀달 집중지수, 엔트로피지수 등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몇가지 집중도의 계산식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에서 어떤 종류의 집중도이든지 시장내 기업의 수와 시장점유율로 평가된 기업규모에 의해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따라서 시장집중도는 시

4) 집중지수의 특성과 장단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윤창호·이규억(1997)의 제8장, 정갑영(1991)

장구조의 다원적 측면을 시장내 활동기업수와 상대적 규모를 기준으로 1차원적 지표로 축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도는 시장

<표 1> 시장지배력 지표의 종류

구 조 지 수	- 상위 k 기업집중도	$CR_k = \sum_{i=1}^k S_i \quad (0 < CR_k \leq 1)$
	- 허핀달지수	$HHI = \sum_{i=1}^n S_i^2 \quad (0 \leq HHI \leq 1)$
	- 엔트로피지수	$E = - \sum_{i=1}^n S_i \log S_i \quad (0 \leq E \leq \log n)$
	- 홀-타이드먼지수	$HT = \frac{1}{2 \sum_{i=1}^n i S_i - 1} \quad (\frac{1}{n} \leq HT \leq 1)$
	- 지니지수	$G = 1 - \frac{2 \sum_{i=1}^n i S_i - 1}{n} \quad (0 \leq G < 1)$
성 과 지 수	- 러너지수	$L = \frac{\text{가격} - \text{한계비용}}{\text{가격}}$
	- 베인지수	$B = \frac{\text{총수입} - \text{총비용} - \text{감가상각액} - \text{투자의 기회비용}}{\text{총투자액}}$
	- Tobin Q	$Q = \frac{\text{자본시장에서 평가된 기업가치}}{\text{유형자산 교체비용}}$

주: 구조지수에서 S_i 는 시장내 기업 i 의 시장점유율

구조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장구조에 의해 시장성고가 결정된다는 SCP 분석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집중도는 시장지배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즉, 시장집중도는 시장구조의 요약지표인 동시에 시장경쟁의 강도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율성의 대리지표로 해석, 활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집중도를 시장지배력의 척도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집중도가 시장경쟁의 사후적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기업은 디자인 및 제품개발력, 생산비용 경쟁력, 그리고 마케팅 경쟁력 중 어느 하나, 또는 복합적인 핵심역량으로 시장경쟁에 뛰어들고, 이 경쟁과정이 성공적인가의 여부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보면 그 모든 결과는 시장내 경쟁기업수와 시장점유율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집중도는 시장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쟁강도의 적절

의 제7장, 또는 Ottosen(1991)의 제2장을 참조

한 척도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경쟁의 결과는 시장점유율 뿐만 아니라 기업이윤으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러너지수, 베인지수 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성과지수로 측정되기도 한다. 특히 구조지수와 성과지수는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구조-성과관계에 대한 많은 실증연구결과에 힘입어 두 지수는 시장지배력이라는 같은 현상의 서로 다른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⁵⁾

그러나 기업의 숫자 및 규모로 측정되는 집중도와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에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따른다. 특히 보몰-판자-윌리그(Baumol, Panzar, Willig, 1982)의 경합시장이론(contestable market theory)은 집중도를 시장지배력의 지표로 보는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 가장 주목할만한 반론을 제시한다. 집중도는 그 계산식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시장내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사이의 경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경합시장이론은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현재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가격을 올릴 경우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와 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을 탈취해갈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 기업의 가격인상능력은 그만큼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규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은 埋沒資本(sunk cost)에 영향을 받고 이 매몰자본이 적을수록 잠재적 경쟁은 더 높아진다는 것이 경합시장이론에서 주장하는 요지이다. 특히 매몰자본이 전혀 없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치고빠지는 전략으로 크립탈취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장에는 오직 1개의 기업이 존재한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독점가격을 부과할 수 없으며, 집중도와 시장지배력은 무관하게 된다.

물론 경합시장이론에도 문제점은 있다. 집중도와 시장지배력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는 인과관계를 무력화시킬 만큼 시장 각 부문에 충분한 잠재적 경쟁이 존재하는가, 또는 이러한 잠재적 경쟁을 가능케 할만큼 각 산업에서 매몰자본이 충분히 적은가에 대한 의문은 그 중 하나이다.⁶⁾ 따라서 집중도가 시장지배력의 행사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어느 정도의 관계에 있는가는 결국 실증분석으로 입증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는 본 보고서 제Ⅲ장에서 다루어진다.

이밖에도 집중도는 시장경쟁의 본질을 왜곡,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되기도 한다. 집중도는 <표 1>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정시점에서 시

5) 고집중산업에서 이윤율도 높은 현상이 관찰되는 까닭이 과연 시장지배력 때문이라는 전통적인 해석에도 적지않은 비판이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템셋츠를 위시한 시카고 학파에서 제기하는 효율성가설(eficiency hypothesis)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Ⅲ장에서 설명된다.

6) 경합시장이론에 대한 이견에는 Brock(1983)을 참조.

장내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계산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집중도 계산에서 모든 기업은 匿名化하고 단지 시장점유율로 표시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시장경쟁을 정태적인 상태(state of affairs)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시장에서 어느 기업이 경쟁에서 탈락하여 도태하는지, 새로운 기업의 진입에 의해 기존업체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또 시장에 계속 잔류하고 있는 기업들이라 해도 기업간 순위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등 기업의 흥망성쇠 과정은 집중도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경쟁은 여러 시점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업의 진입과 퇴출, 잔류기업의 순위변동이 집중도보다 경쟁의 진면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집중도에 내포된 이러한 한계와 대안적 지표에 대해서는 제IV장에서 다시 논의한다.

2. 집중도와 경쟁정책

(1) 시장점유율과 경쟁정책

집중도는 독과점지표, 또는 경쟁효율지표로서 명백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연구와 정부의 경쟁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정 시장에서 집중도가 높을수록 시장지배력도 높고 따라서 자원배분의 비효율도 증가한다는 인식이 그만큼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표 1>에 열거된 여러 집중지표 중에서 특히 정책활용빈도가 가장 높은 지표는 상위 k기업 집중도(CR_k)와 허핀달 지수이다. 미국에서는 1982년 기업결합지침(The Merger Guidelines)을 계기로 경쟁정책의 운용기준을 CR_k 에서 허핀달 지수로 전환한 바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계산이 간단하고 소수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장점 때문에 CR_k 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공정거래법상에 경쟁저해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의 판단이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할 때에 CR_k 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집중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산업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정책의 운용기준으로 삼고 있는 집중도는 <표 2>와 같다. 이 중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제도에 대해 좀더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동 제도를 운용하는 취지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미리 고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남용행위 등

을 자체토록 하는 사전예방효과가 있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방지에 대한 국민적 감시효과도 있음을 감안할 때 지정고시제도의 실익이 있다”7)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4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제도는 조만간 폐지되고 동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으로 흡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차 동 제도가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임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 유무가 시장지배력 유무와 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권(1996)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의 이윤율이 제조업 평균에 비해 뚜렷이 높지 않고, 또 매년 지정·고시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적지않은 변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동 제도가 시장지배력과 무관하게 운용되고

<표 2> 집중도의 정책활용사례(1997년 4월 기준)

구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추정
내용	<p><공정거래법 제2조의 7> 최근 1년간 국내 총공급액이 1000억원 이상인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가.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나.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p>	<p><공정거래법 제7조 제④항> 1.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의미)의 합계가 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에 해당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와의 점유율의 차이가 100분의 25이상 2.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로서 가.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 나.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p>
예외	<p><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진입제한이 없는 시장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것 · 지정·고시일 이전 2년간 실질적으로 가격인상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지정·고시일 이전 2년간 공정거래법 저촉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13조>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업결합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결합</p>

자료: 공정위

7) 공정거래연보, 1995년판 53쪽.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제도는 운용면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동 제도는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법률에 명시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해당요건을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시장집중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법률적 판단을 우선했던 셈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지배력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은 집중도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 잠재적 경쟁도, 유효경쟁도 등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또 이러한 요인들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공정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1997년 4월에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의 대외개방성, 진입장벽의 높이, 가격인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는 분명히 바람직한 제도변화라 할 수 있지만 시장지배력의 남용혐의를 심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요인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적지않은 예산과 행정력을 소진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 제도를 운용해 온 과정을 보아도 동 제도의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정책효과는 지극히 미미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매년 140개 내외의 품목과 약 400여개의 사업자가 동 제도의 적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남용, 타사업자 방해, 신규진입제한, 기타 소비자의 이익저해 등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로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지극히 미미하다. <표 4>를 보면 동 제도가 운용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1995년까지 시장지배력 남용혐의로 지적된 경우가 단 23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동 제도를 운용해야 할 실익이 거의 없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반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대한 위반사례는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 유무에 관계없이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 위반사례이다. 따라서 동 제도의 운용에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반면에 정책운용의 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동 제도를 폐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로 편입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표 3> 시장지배적사업자 연도별 지정현황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사업자수	314	320	352	335	332	316	326
품목수	135	136	144	140	140	138	140

자료: 공정위

<표 4>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범위반행위 시정실적

구 분	1981-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합 계
남용행위	9	2	-	6	2	1	3	1	24
불공정거래행위	216	23	19	46	58	39	72	-	473
합 계	225	25	19	52	60	40	75	-	497

자료: 공정위

한편, 기업결합은 기업간에 자본, 인적자원, 조직의 경제적 통합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단일한 관리체제하에 두고 개별기업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소멸하는 기업간 결합의 과정과 형태로서 기업의 성장, 또는 기업지배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기업결합에는 수직, 수평, 혼합결합 등의 유형이 있다. 이들 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업결합은 기업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업결합에 대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예산의 약 2/3가량이 기업결합 정책과 관련되어 집행되고 있다함은 경쟁정책 중에서도 기업결합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준다.⁸⁾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규제는 그 기준과 운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 번째의 문제점은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요령이 매우 엉성하다는 점이다. 중점심사기준을 집중도에 의거하고 있는 외에는 어떤 경제논리에 의해 개별사안을 심사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업결합은 한편으로는 시장집중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규모의 경제 확대에 따른 비용절감, 시너지 효과 등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의 개별사안별로 경제적 효과를 심사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결합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해당행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8) 유상영·이인권(1996), 169쪽.

두 번째 문제점은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1981년 부터 시작되어 왔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 이후 1996년까지 총 3342건의 기업결합이 있었지만 이 중 단 2건만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지적되었을 뿐이다. 과거에 이처럼 기업결합정책의 운용이 지극히 부실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과거 고도성장기에 대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에 관대한 배려를 했다는지, 부실기업 정리나 산업합리화 등의 이유로 기업결합정책을 과행적으로 운용했다는지, 또는 공정거래법이 독과점에 대한 원인규제나 구조규제방식보다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좀 더 문제삼는 폐해규제에 중점을 두었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가 여기에 속한다.⁹⁾ 여기에 더 나아가 공정위 안에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없다는 사실도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형식적 운용하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년 초에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개정에 따라 주식의 대량소유제한규정이 폐지되면서 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하는 등 지금의 기업결합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체결되고 외국기업의 한국기업 인수합병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의 기업결합정책의 부실한 기준과 제도운용은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에 비해 미국의 동 제도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 하에 운용되고 있다.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우리의 제도와 비교해보면 대략 세가지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기업결합심사에 집중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허핀달 지수(HHI)를 사용한다. 1982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기업결합심사를 비롯하여 시장의 독과점도 판단에 상위 4대기업집중도(CR₄)를 이용하여 왔다. 그러다 1982년 「기업결합에 관한 지침(The Merger Guidelines)」을 통해 정책운용기준을 CR₄에서 HHI로 변경하였다. 특히 이 지침에 따르면 HHI가 0.10이하면 저집중, 0.10<HHI≤0.18이면 중집중, HHI가 0.18 이상이면 고집중으로 분류하고 있다.¹⁰⁾

9) 최근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심사에서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다소 추상적이고 경쟁정책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10) 여기에서 허핀달 지수(HHI)의 기준값을 왜 0.10과 0.18로 설정했는가에 대해 법무성에서는 “자체 조사에 따르면 HHI=0.10은 CR₄ 50%에, HHI=0.18은 CR₄ 70%에 상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책운용기준을 CR₄에서 HHI로 변경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의 CR₄ 기준이 여전히

제Ⅲ장 제2절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구조지표 중에서는 허핀달 지수가 이론적으로 시장경쟁의 경제적 효율성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지금의 CR_k에서 허핀달 지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유형별·형태별 기업결합과 위반행위 시정실적

(건, %)

구 분	81-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합계
형태별 기업결합									
수평	491 (26.6)	41 (26.1)	43 (27.9)	39 (26.2)	36 (29.3)	40 (20.5)	58 (17.9)	73 (18.6)	821 (24.6)
수직	349 (18.9)	20 (12.7)	45 (29.2)	38 (25.5)	34 (27.6)	24 (12.3)	43 (13.2)	69 (17.6)	622 (18.6)
혼합	1,006 (54.5)	96 (61.2)	66 (42.9)	72 (48.3)	53 (43.1)	131 (67.3)	224 (68.9)	251 (63.8)	1899 (56.8)
계	1,846 (100)	157 (100)	154 (100)	149 (100)	123 (100)	195 (100)	325 (100)	393 (100)	3342 (100)
수단별 기업결합									
주식취득	799 (43.3)	52 (33.1)	37 (24.0)	34 (22.8)	29 (23.6)	77 (39.5)	142 (43.7)	159 (40.5)	1329 (39.8)
임원겸임	186 (10.0)	5 (3.2)	5 (3.2)	2 (1.3)	2 (1.6)	2 (1.0)	4 (1.2)	16 (4.0)	222 (6.6)
합병	276 (15.0)	38 (24.2)	50 (32.5)	62 (41.6)	55 (44.7)	48 (24.6)	48 (14.8)	63 (16.0)	640 (19.2)
영업양수	125 (6.8)	6 (3.8)	7 (4.6)	12 (8.1)	13 (10.6)	13 (6.7)	10 (3.1)	25 (6.4)	211 (6.3)
회사신설	460 (24.9)	56 (35.7)	55 (35.7)	39 (26.2)	24 (19.0)	55 (28.2)	121 (37.2)	130 (33.1)	940 (28.1)
계	1,846 (100)	157 (100)	154 (100)	149 (100)	123 (100)	195 (100)	325 (100)	393 (100)	3342 (100)
기업결합 위반행위 시정실적									
기업결합신고위반	291	12	22	19	24	13	23	37	44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2	-	-	-	-	-	-	1	3
계	293	12	22	19	24	13	23	38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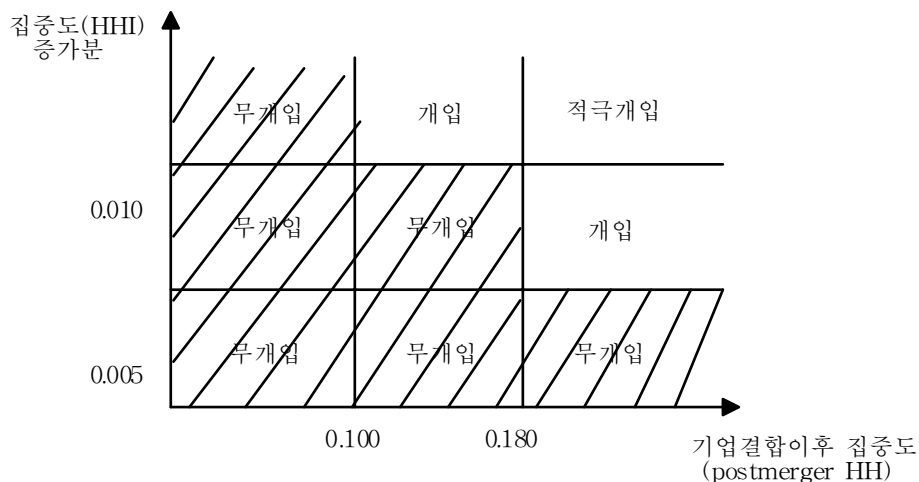
자료: 공정위

두 번째 특징은 제도운용의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특정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미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해당기업이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용기준은 <그림 3>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면 저집중 산업

히 살아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CR₄와 HHI는 1대1 대응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구조를 CR₄로 측정하는가, HHI로 측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발생시킨다. 예컨대 HHI = 0.18인 경우에도 CR₄는 최소 0.45(저집중에 해당)에서 최대 0.84(고집중)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CR₄와 허핀달 지수를 대조한 사례는 본 보고서의 부록 1을 참조.

(HHI<0.10)에서의 기업결합은 문제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고집중 산업(HHI>0.18)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시장집중도를 높이는 기업결합은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킨다고 보고 대체로 불허하는 입장을 취한다.¹¹⁾ 또한 HHI가 [0.10, 0.18]사이에 있는 산업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기업결합은 정책당국의 심사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지배력의 강화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에 더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입증(efficiency defence)되면 허용된다. 이처럼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해당 시장의 집중도, 기업결합이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효율성의 우선적 배려 등 기준이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을 계획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결합이 정책당국의 심사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의 심사, 취소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림 8>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자료: 1982 Merger Guidelines, 1992 Horizontal Merger Guidelines를 참조

셋째, 미국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집중도를 시장지배력의 절대적 척도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교적 최근까지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그림 3>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운용해왔다. 그리고 동 기준은 현재에도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의 1차적 판단기준으로 계속 유효하게 이용되

11) 이러한 HHI 기준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는 1986년 FTC가 Coca-Cola와 Dr. Pepper의 기업결합시도를 들 수 있다. 당시 FTC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탄산음료시장의 HHI를 0.0341만큼 증가시키고 기업결합후 HHI는 0.2636에 이르므로 기업결합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다고 주장함으로써 Coca-Cola와 Dr. Pepper의 기업결합을 저지시킨 바 있다. 유상영·이인권(1996) 163쪽 참조.

고 있다. 그러나 1992년 「수평결합에 관한 지침(The Horizontal Merger Guidelines)」에서는 정책당국의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1992년 지침에 의하면 정책당국이 기업결합을 반경쟁적인 것으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그림 3>의 집중도 기준 외에도 두가지 요건이 더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결합된 기업이 일방적 또는 상호조정을 통해 생산량 감축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업결합 이후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기존기업들이 일방적 또는 집단적으로 기업결합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얻을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그것이다.¹²⁾ 이러한 추가조건은 결국 집중도와 시장지배력 사이에 안정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기존의 도식적 해석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집중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기업결합이라 할지라도 시장지배력의 강화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되지 않는 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변천과정은 집중도와 시장지배력의 관계, 그리고 집중도의 정책활용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집중도는 전통적으로 시장지배력의 적절한 척도로 인식되어 왔고 여전히 각국의 경쟁정책 운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집중도는 생산자의 수와 규모의 분포에 바탕을 둔 구조지표일 뿐이다.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고 생산자의 분포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장구조와 경제적 효율이라는 시장성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는 경우에도 집중도는 다차원적인 시장구조의 문제를 1차원적인 시장집중의 문제로 축소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여기에 구조-성과간의 관계가 시장지배력에 의해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는 구조주의적 해석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과연 적절한 시장지배력의 척도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비판이 적지않다. 미국의 1992년 「수평결합에 관한 지침」은 이러한 비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집중도의 증가는 곧 시장지배력의 강화’라는 도식적 해석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쟁정책에서 집중도의 활용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고 그 운용기준도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선정기준이나 기업결합의 심사기준에서 보듯이 기업행태의 경쟁제한성 여부는 집중도의 절대적 크

12) Guideline 1992, Section 3.0. 1992년의 지침과 이전의 지침 간의 차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Keyes(1995)를 참조.

기에 의존하고 있다. 경쟁정책이 ‘집중도의 증가는 곧 시장지배력의 강화’라는 도식적 해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집중도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놓고 있는 결과 경제논리보다 법률적 판단이 우선되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있는가는 당연히 경제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률에 규정된 기준을 저촉하는지의 여부, 즉 법리적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2) 경쟁정책의 양면성

경쟁정책은 좁게 보면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펼치는 정책,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시행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정책을 굳이 이렇게 좁게 정의할 이유는 없다. 정책운용의 주관부처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을 경쟁정책으로 폭넓게 정의할 수도 있다.

경쟁정책을 폭넓게 정의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이 지향하는지 바가 과연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특히 정부 여러 부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실에 접하게 되면 한국의 경쟁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경쟁촉진인지, 아니면 경쟁제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하에 민간경제활동을 감시·감독하는 공정위의 역할과 정부 각 부문에서 운용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공존하고 있는 형국은 마치 극심하게 대조되는 ‘두 얼굴’의 모습과 같다.

<표 6> 한국의 진입 및 가격규제 현황

구 분	세세분류 산업수 (A)	규제 산업수 (B)	규제산업의 비중(%)		
			산업수 기준(B/A)	생산액기준	부가가치 기준
진입규제 현황(1992년 기준)					
전 산업	1,195	533	44.6	50.9	
제조업	585	187	32.0	36.8	37.0
비제조업	610	346	56.7	61.4	
가격규제 현황(1990년 기준)					
전 산업	1,047	288	27.5	53.6	
제조업	522	117	22.4	51.6	48.9
비제조업	525	171	32.6	55.3	

출처: 진입규제 현황은 김재홍(1994), 가격규제 현황은 이승철·홍성중(1994)

참고로 정부에 의한 진입규제와 가격규제 현황을 보면 <표 6>과 같다. 여기서 생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전 산업의 50%를 상회하는 영역에서 이들 진입 및 가격규제가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진입규

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진입규제는 시장내 활동기업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시장외부의 잠재적 진입자에 의해 시장내부의 기업행태를 규율하는 효과, 즉 잠재적 경쟁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높다. 물론 <표 6>의 진입규제에는 환경보호와 산업안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주도하의 경제개발과정에서 형성된 규제적 조항들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존속되고 있거나 또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규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가격규제 역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전체 수요에 비해 규모의 경제가 큰 자연독점산업에서는 한 기업에 전적으로 생산과 공급을 맡기고 대신 가격을 한계비용이나 평균비용에 일치시키도록 가격규제를 하는 것이 그런 경우이다. 이러한 산업에는 전력이나 가스공급, 통신, 또는 케이블 TV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network industries)이나 전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우편이나 교통서비스 산업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소위 공익산업으로도 불리우는 이들 산업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도모를 통해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겠다는 취지로 가격규제를 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가격규제는 사회적 후생의 증대라는 산업조직정책이 아니라 대부분 물가관리나 에너지소비의 절감을 통한 국제수지개선이라는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격규제의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독점 공기업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제시하는 ‘적정(?)’ 가격수준이라는 것도 대체로 상품별·용역별 협회 등 사업체단체와의 정보교환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가격규제는 사업자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사들 사이에 가격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가격담합과 같은 경쟁제한행위를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와 가격규제가 생산액 기준으로 각각 한국 경제의 절반 이상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민간경제활동에 개입하여서라도 한국의 시장구조를 경쟁형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또 공정위가 시장개입을 강화하겠다 하면 재계에서 정부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대응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스스로도 이러한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규제완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통상산업부에서 자체

조사한 진입규제 현황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분류코드 4단위) 기준으로 총 325개 업종의 63%에 해당하는 205개 업종 분야에서 진입규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¹³⁾ 이러한 조사결과는 1992년 말의 현황을 담고 있는 <표 6>에 비해 눈에 띄는 개선의 징후가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시장구조의 경쟁화를 가로막는 원인은 시장 내부의 문제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역시 그에 못지않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내부에 자생하는 경쟁제한적 요인들은 경제의 개방화가 더욱 진전되고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점차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면 시장개방의 촉진과 더불어 정부 스스로가 원인제공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요소 -진입 및 가격규제- 를 좀더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템세츠(Demsetz)를 위시한 시카고 학파와 하이에크(Hayek), 커즈너(Kirzner) 등으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이들은 시장집중도의 높고 낮음, 즉 시장구조와 관계없이 항상 충분한 경쟁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시장지배력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흔히 시장실패라고 불리우는 시장자체의 모순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시장개입 때문이며 따라서 정부개입의 손길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3. 한국 제조업의 시장구조

(1) 시장의 분류

앞절에서는 시장지배력의 행사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도는 집중도에 반영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시장집중도를 경쟁정책의 운용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몇가지를 보았다. 본 연구의 주 관심은 이러한 정책관행이 과연 얼마만큼 타당한지, 즉 집중도가 시장지배력의 신화할만한 척도인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장(산업)별로 집중도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계측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장·단기에 걸쳐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각 산업

13) 통상산업부, 「업종별 주요장벽 실태」, 1997.

에서 집중도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시장구조의 계측, 또는 집중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시장의 분류이다. 시장을 지나치게 좁게 정의하면 거의 모든 시장이 독점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너무 넓게 정의하면 경쟁적 구조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론면에서는 거래되는 상품이 소비와 생산면에서 갖는 대체성을 기준으로 시장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와 생산 양면에서 밀접한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들을 하나의 시장에 속한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상품을 생산과 소비 양측면의 대체탄력성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 측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생산의 대체탄력성과 소비의 대체탄력성이 같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분류작업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음료수 용기로 사용되는 유리병, 알루미늄캔, 철캔은 용기 수요자(음료수 제조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밀접한 대체재이다. 그러나 용기 생산자의 입장에서 세가지 용기가 전혀 다른 원료, 생산설비, 제조공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대체탄력성이 매우 낮다. 이 경우 이들 세 용기를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시장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례는 도처에서 발견되며 시장의 분류에 따라 집중도가 달라지고 독점금지법의 저촉여부도 달라지므로 시장분류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된다. <표 7>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의 사례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준으로 집중도의 변화추세를 살펴본다. KSIC가 시장구분의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그러나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KSIC 8단위(상품시장)와 KSIC 2단위(중분류 산업)를 기준으로 시장집중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여기서는 경쟁정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위 k기업 집중도와 허핀달 지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에서 시장구조의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표 7> 시장의 정의와 독점금지법(사례)

- 탐폰과 위생대는 별개의 시장인가, 같은 시장인가?

1997년 4월 프록터 앤 갬블(Procter & Gamble)이 탐브랜드(Tombrand Inc.)를 18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양사가 합의함에 따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양사의 합병이 독점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양사는 위생대(sanitary pad)와 탐폰(tampon)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여성의 위생용구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프록터 앤 갬블은 얼웨이즈(Always)와 휘스퍼(Whisper)라는 상표로 생리대(sanitary pad)시장의 36.3%(11억달러)를 차지하고, 탐브랜드사는 탐팍스(Tampax)라는 상표로 탐폰시장의 약 50%(6억5천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프록터 앤 갬블도 한때 릴라이(Rely)라는 상표로 탐폰제품을 판매한 적이 있었으나 제품의 유독성 논쟁이 일면서 1980년 이후 생산을 중단하였다. 향후 탐브랜드의 인수가 확정되면 프록터 앤 갬블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여성 위생용구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양사의 결합이 독점금지법을 저촉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이슈는 탐폰과 생리대가 같은 시장에서 같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효한 경쟁관계에 있는가의 여부이다. 만약 두 상품이 밀접한 대체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FTC는 양사의 합병으로 여성위생용구시장에서 프록터 앤 갬블의 독점력이 크게 확대된다는 이유로 양사의 합병을 중단시킬 수 있다. 따라서 FTC의 조사결과는 양사의 합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자료: Asian Wall Street Journal, 1997년 4월 10~12일자에서 발췌 요약)

(2) 품목별 시장집중

먼저 KSIC 8단위를 기준으로 1970~1994년 기간 중 상품별 시장집중도의 장기변동추세를 살펴보자. 이 분류는 상품을 기준으로 하는 가장 세밀한 분류이기 때문에 비교적 시장의 정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창호·이규역(1997)은 이들 상품시장에서 1개기업의 점유율이 80%를 상회하면 독점으로, 2개기업의 점유율이 80%를 상회하면 복점으로, 독점과 복점을 제외하고 3개기업의 점유율이 60%를 상회하면 과점으로, 그리고 3개기업의 점유율 합계가 60% 이하면 경쟁으로 구분하여 품목별 집중도를 조사한 바 있다.¹⁴⁾ 이들 학자의 연구결과에 기초할

14)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때, 1970~1994년 기간 중 시장구조의 변화과정은 <그림 4> 및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의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1980년대 이후 시장구조가 현저하게 경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그림 4>의 상품수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살펴보면, 1970년~1977년 기간은 시장구조가 고집중에서 뚜렷한 변화가 없이 정체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집중시켰던 시기였던 1977년~1982년 기간은 독점에서 과점적 시장구조로의 전환기였다. 동 기간 중 독점시장의 비중은 31.6%에서 23.4%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과점시장의 비중은 32.0%에서 47.4%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비교적 최근인 1982년~1994년 기간 중에는 독과점형에서 경쟁형 위주로 시장구조의 경쟁화가 빠르게 진전되었다. 동기간 중 독점과 복점시장의 비중은 34.5%에서 23.5%로 감소하고 경쟁시장의 비중은 18.1%에서 32.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1982년에는 시장구조가 과점(47.4%)→독점(23.4%)→경쟁(18.1%)→복점(11.1%)의 순서를 가졌으나 1994년에는 과점(44.4%)→경쟁(32.1%)→복점(15.3%)→독점(8.2%)의 순서로 경쟁형 시장구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시장이 세분화될수록 시장구조는 더 독점화되는 경향이 있고, 동 기간 중 상품수가 크게 증가(2260개→3132개)하는 등 시장이 더욱 세분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시장구조가 현저하게 경쟁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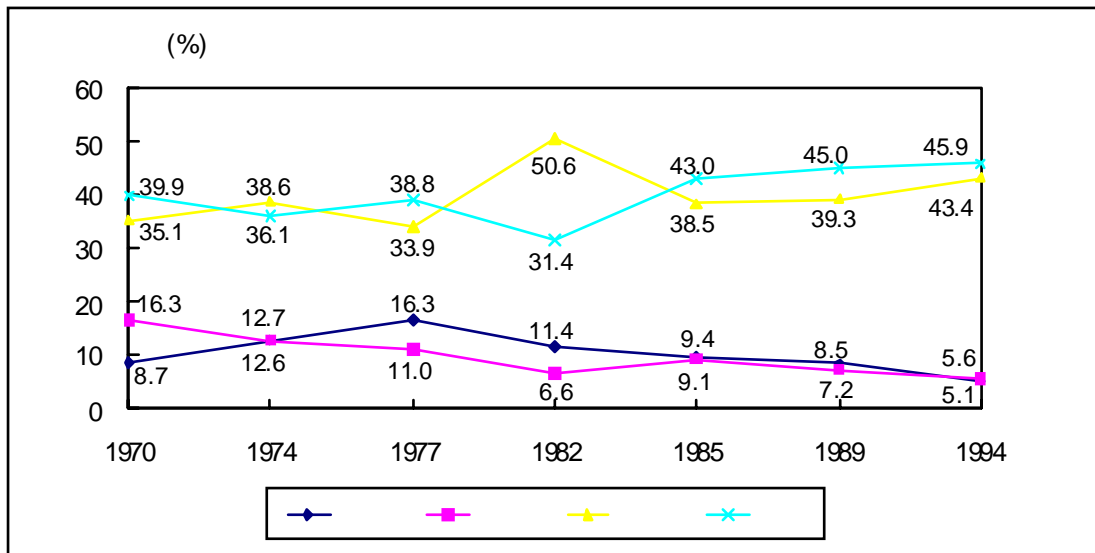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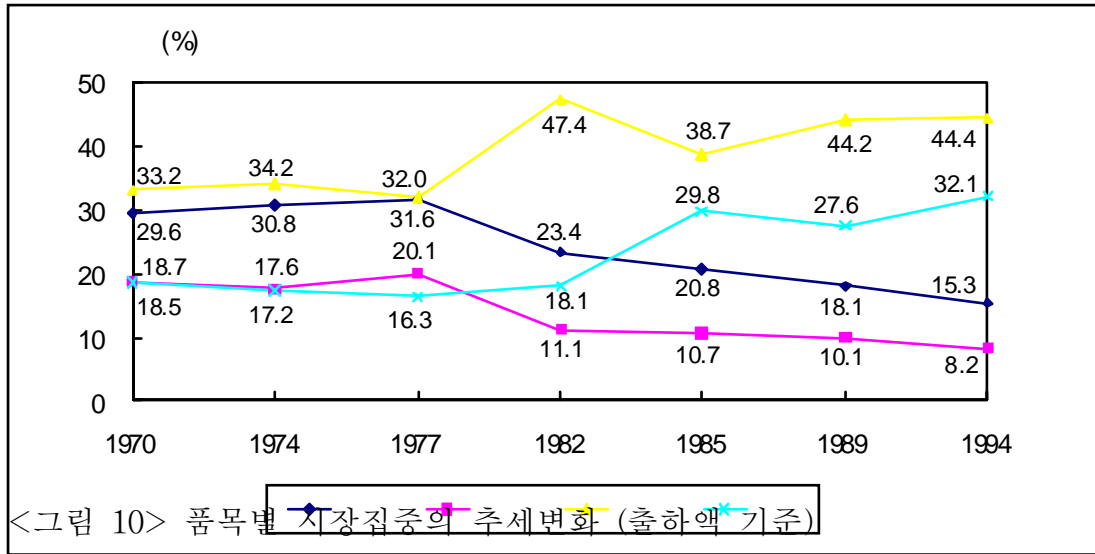
이와 같은 시장구조의 경쟁화 추세는 출하액 기준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5>에서 1970년~1977년 기간에는 시장구조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1977년~1982년 기간에는 과점형 상품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에는 경쟁구조로 지속적인 변화를 시현하고 있다. 그 결과 1982년에는 과점(50.6%)→경쟁(31.4%)→독점 및 복점(17.0%)의 순서로 과점형 상품시장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4년에는 경쟁형 상품시장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제조업부문의 시장구조가 경쟁(45.9%)→과점(43.4%)→독점 및 복점(10.7%)의 순서로 재편되었다.

독점은 $CR_1 \geq 80\%$, $S_1/S_2 \leq 10.0$, 복점은 $CR_2 \geq 80\%$, $S_1/S_2 \leq 5.0$, $S_3 \leq 5\%$

과점은 $CR_3 \geq 60\%$ (독점과 복점은 제외), 그리고 경쟁은 $CR_3 \leq 60\%$ 인 경우이다.

상세한 내용은 윤창호·이규억의 산업조직론(1997) 185쪽을 참조

<그림 9> 품목별 시장집중의 추세변화 (상품수 기준)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은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시장구조도 독과점형에서 경쟁형으로 뚜렷이 개선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구조가 현저하게 경쟁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에서는 선진경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시장집중도는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흔히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주로 공정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순식(1997)은 CR₃ 50%를 상회하는 집중형 시장의 비중이 1980년 87.8%에서 1994년 75.8%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여전히 문제라고 주장한다.¹⁵⁾

15) 주순식, “독과점산업 경쟁력, 경쟁촉진으로 높인다,” 나라경제, 1997년 7월호 참조.

우리나라의 시장집중도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보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라마다 시장분류 기준이 다르고, 독점·과점·경쟁을 구분하는 집중도의 기준값이 다르며, 또 시장규모나 시장개방의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시장구조의 비교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장구조를 참고하면 한국의 시장집중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의 시장구조별 GNP 비중은 <표 8>에 요약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셰퍼드(Shepherd, 1982)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CR₄ 40% 미만의 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진 산업에서 GNP의 76.7%가 창출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세세산업분류를 기준으로 CR₃ 40% 미만의 산업을 경쟁적 시장으로 볼 경우 이들 산업의 비중은 44.2% (1994년 출하액 기준)이다. 따라서

<표 8> 미국의 시장구조별 GNP 비중

구분	1939	1958	1980	시장분류기준
순수독점	6.2%	3.1%	2.5%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근접하고 초과적 진입봉쇄, 독점력을 행사한 증거
지배적 시장	5.0%	5.0%	2.8%	1개사의 점유율은 50~90%, 높은 진입장벽, 가격통제 등으로 높은 초과이윤을 획득
과점	36.4%	35.6%	18.0%	상위 4사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안정적이며 진입장벽과 담합의 가능성 존재
기타(경쟁)	52.4%	56.3%	76.7%	상위 4사 점유율이 40%미만으로 시장점유율이 불안정적으로 변동하며 진입장벽이 낮음

출처: William G. Shepherd(1982)

집중도의 국제비교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미국에 비해 한국의 시장집중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겠다.

(3) 산업별 기업집중

다음에는 제조업 중분류기준(KSIC 2단위)으로 집중도의 추세변동을 본다. 이 기준하에 제조업부문은 총 23개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중에서 담배 제조업(산업코드 16)은 사실상 국가독점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생재료가공처리업(산업코드 36)은 이제 시작되는 산업으로 그 규모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한다.

여기에서의 집중도 측정뿐만 아니라 다음 장에서의 시장비효율도 측정 등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중분류 제조업부문 21개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분류는 문제가 없지 않다. 특히 중분류하의 21개 개별산업은 동질적이지 않거나 서로 밀접한 대체관계에 있지 않은 상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또 본 연구는 한국신용평가(주)에서 발간하는 한국기업총람의 산업별·기업별 생산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측된 집중도를 시장집중도라고 표현하기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¹⁶⁾ 따라서 동 자료에 바탕을 둔 집중도 통계는 산업별로 기업집중도를 생산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구태여 제 I 장 <그림 1>의 경제력집중의 유형과 연결시키면 일반집중과 시장집중의 중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분석기간은 산업구조의 변동과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표준산업분류체계가 바뀐 1991년도 이후 1995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21개산업에서 상위 4대기업 집중도(CR₄)와 허핀달 지수(HHI)를 측정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1991~1995년 기간 중 산업별로 집중도가 증가하기도 감소하기도 했으나 전체를 가중평균한 집중도는 다소 증가하였다. 즉 CR₄는 1991년도의 42.8%에서 1995년도에는 45.2%로 증가하였고 허핀달 지수 역시 같은 기간 중 0.0889에서 0.0949로 증가하였다. 음식료품 제조업등 일부 산업에서는 CR₄의 변화와 허핀달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에서 이 두 지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연도에 관계없이 두 지표의 상관계수가 약 0.97로 높게 나타나는 점도 이를 반영한다. 허핀달 지수는 해당 산

업내 기업규모의 상대적 분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CR₄와는 속성이 약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표 사이에 상관계수가 높은 까닭은 대기업의 성장이 산업별 기업집중을 심화시킨 주요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은 주로 재벌그룹 소속의 계열사라는 점에서 산업별 집중도와 재벌의 비중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산업별 집중도와 산업별 재벌기업의 비중은 실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가? 이를 검증하기에 앞서 먼저 산업별로 재벌의 비중을 측정하면 <표 10>과 <표 11>과 같다. 1991년도 재벌계층별 집중도를

16)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장집중도는 해당시장에서 각 기업의 국내총공급액이 점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기업은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국기업총람은 주력상품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을 각 산업에 배치시키고 있다. 동 자료는 또 수출과 내수 구분없이 기업의 총생산액만을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집중도는 시장집중도라기보다는 중분류산업에서 생산면에서 계측한 대기업 집중도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표 9> 산업별 집중도의 변화추이(1991~1995)

COD E	제조업	HHI					CR 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15	음식료품	0.0183	0.0178	0.0183	0.0175	0.0170	0.1738	0.1700	0.1728	0.1687	0.1605
17	섬유	0.0220	0.0208	0.0202	0.0203	0.0228	0.2060	0.1952	0.1933	0.1868	0.2054
18	의복 및 모피	0.0145	0.0158	0.0191	0.0223	0.0253	0.1393	0.1503	0.1707	0.1953	0.2342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0.0218	0.0261	0.0305	0.0322	0.0329	0.1944	0.2248	0.2488	0.2572	0.2558
20	목재 및 나무제품	0.0667	0.0713	0.0871	0.1136	0.1166	0.4251	0.4532	0.5162	0.6137	0.6234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0.0264	0.0288	0.0316	0.0334	0.0328	0.2324	0.2494	0.2704	0.2729	0.2587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0.0360	0.0317	0.0340	0.0394	0.0347	0.2908	0.2667	0.2743	0.3221	0.3054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2633	0.2518	0.2584	0.2579	0.2477	0.9036	0.9037	0.9136	0.9066	0.9121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0.0273	0.0239	0.0247	0.0262	0.0246	0.2419	0.2331	0.2296	0.2349	0.2350
25	고무 및 플라스틱	0.0649	0.0714	0.0844	0.0702	0.0751	0.3967	0.4183	0.4568	0.4194	0.4366
26	비금속광물제품	0.0322	0.0310	0.0330	0.0318	0.0321	0.2797	0.2831	0.2840	0.2806	0.2799
27	제1차금속산업	0.1377	0.1336	0.1400	0.1256	0.1109	0.4891	0.4816	0.4929	0.4763	0.4555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0.0421	0.0095	0.0111	0.0110	0.0111	0.2738	0.1064	0.1098	0.1214	0.1224
29	기타기계 및 장비	0.0555	0.0498	0.0305	0.0458	0.0872	0.3863	0.3630	0.2708	0.3593	0.4361
30	사무,계산,회계용기계	0.0826	0.0726	0.0725	0.0785	0.0874	0.4693	0.4461	0.4286	0.4731	0.5199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 치	0.0688	0.0745	0.0868	0.0502	0.0609	0.4508	0.4613	0.4940	0.3865	0.4597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0.1174	0.1082	0.1178	0.1292	0.1457	0.5724	0.5439	0.5525	0.5726	0.6118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0.0466	0.0380	0.0427	0.0376	0.0376	0.3388	0.2918	0.3146	0.2752	0.2898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0.1665	0.1336	0.1357	0.1286	0.1218	0.6770	0.6118	0.6190	0.5959	0.5890
35	기타 운송장비	0.2456	0.2514	0.2465	0.2882	0.2693	0.7849	0.8130	0.8782	0.8488	0.8844
36	가구 및 기타	0.0376	0.0375	0.0489	0.0354	0.0395	0.3224	0.3159	0.3708	0.2965	0.3184
	가중평균집중률	0.0889	0.0854	0.0924	0.0911	0.0949	0.4284	0.4180	0.4370	0.4326	0.4522

자료: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총람 각년호.

<표 10> 1991년도 재벌계층별 집중도

(단위: %, 개)

CODE	제조업	1~5대재벌 점유율		6~10대재벌 점유율		11~20대재벌 점유율		21~30대재벌 점유율		30대재벌 점유율 합계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15	음식료품	7.53	2(1)	11.56	6(2)	7.25	9(2)	10.33	10(3)	36.67	27(8)
17	섬유	7.77	2(1)	3.39	1(1)	10.47	5(2)	10.40	5(2)	32.03	13(6)
18	의복 및 모피	0.58	1(1)	0.00	0	0.00	0	0.00	0	0.58	1(1)
19	가죽, 가방, 마구 류 및 신발	0.00	0	0.01	1(1)	8.59	1(1)	0.00	0	8.60	2(2)
20	목재 및 나무제 품	0.00	0	0.00	0	5.07	1(1)	0.00	0	5.07	1(1)
21	펄프, 종이 및 종 이제품	13.94	2(2)	0.98	1(1)	0.00	0	0.00	0	14.92	3(3)
22	출판, 인쇄 및 기 록매체복제업	8.02	2(2)	2.21	2(2)	5.63	1(1)	0.00	0	15.86	5(5)
23	코크스, 석유정제 품 및 핵연료 제조업	43.90	2(2)	46.46	2(2)	0.00	0	0.00	0	90.36	4(4)
24	화합물 및 화학 제품	16.30	10(3)	13.22	9(3)	1.72	5(2)	5.57	11(5)	36.81	35(13)
25	고무 및 플라스 틱	1.03	1(1)	0.37	2(1)	0.68	1(1)	21.54	4(3)	23.62	8(6)
26	비금속광물제품	20.68	5(4)	1.22	2(1)	2.24	3(3)	1.03	1(1)	25.17	11(9)
27	제1차금속산업	11.38	6(2)	1.03	1(1)	13.62	7(3)	6.64	2(2)	32.67	16(8)
28	조립금속제품	18.99	2(1)	0.00	0	4.59	3(2)	1.80	2(2)	25.38	7(6)
29	기타기계 및 장 비	44.23	12(5)	2.78	3(1)	4.82	4(4)	1.39	2(2)	53.22	21(12)
30	사무, 계산, 회계 용기계	0.00	0	6.09	1(1)	0.93	1(1)	0.00	0	7.02	2(2)
31	기타 전 기 기 계 및 전기변환장 치	26.57	7(3)	0.00	0	6.03	1(1)	0.85	1(1)	33.45	9(5)
32	영상, 음향 및 통 신장비제조업	72.10	19(5)	0.81	2(2)	0.43	1(1)	0.59	2(2)	73.93	24(10)
33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19.34	4(2)	0.00	0	0.00	0	0.00	0	19.34	4(2)
34	자동차 및 트레 일러	48.88	6(4)	0.06	1(1)	25.95	5(1)	4.16	2(1)	79.05	14(7)
35	기타 운송장비	78.15	6(3)	8.68	2(2)	0.01	1(1)	4.62	1(1)	91.46	10(7)
36	가구 및 기타	14.11	2(2)	0.00	0	0.00	0	0.00	0	14.11	2(2)
37	재생 재료 가공 처 리업	-	-	-	-	-	-	-	-	-	-
가중평균 집중도		29.00	91(5)	6.35	36(5)	6.94	49(10)	4.33	43(10)	46.62	219(30)

주: 기업수 열의 괄호안 숫자는 재벌그룹의 수를 표기

자료: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총람 1992년호.

<표 11> 1995년 재벌계층별 집중도

(단위: %, 개)

CODE	제조업	1~5대재벌 점유율		6~10대재벌 점유율		11~20대재벌 점유율		21~30대재벌 점유율		30대재벌 점유율 합계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15	음식료품	7.46	2(1)	10.18	5(2)	8.91	9(2)	7.07	6(2)	33.62	22(7)
17	섬유	8.87	2(2)	0.04	1(1)	10.17	6(2)	7.12	2(2)	26.20	11(7)
18	의복 및 모피	-	-	-	-	-	-	-	-	-	-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0.00	0	0.00	0	0.00	0	10.00	1(1)	10.00	1(1)
20	목재 및 나무제품	0.00	0	0.00	0	11.19	1(1)	0.00	0	11.19	1(1)
21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0.00	0	4.21	2(1)	0.00	1(1)	15.54	3(1)	19.75	6(3)
22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복제업	1.27	1(1)	3.06	2(2)	3.36	1(1)	0.00	0	7.69	4(4)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7.71	3(3)	29.88	2(2)	0.00	0	0.00	0	97.59	5(5)
24	화합물 및 화학제 품	24.20	13(4)	11.83	4(2)	7.08	11(5)	3.94	9(4)	47.05	37(15)
25	고무 및 플라스틱	1.58	2(2)	0.00	0	22.51	5(3)	0.67	1(1)	24.76	8(6)
26	비금속광물제품	7.13	3(2)	11.87	1(1)	7.08	7(5)	7.85	4(3)	33.93	15(11)
27	제1차금속산업	12.57	4(2)	2.25	3(3)	11.02	6(2)	7.37	2(2)	33.21	15(9)
28	조립금속제품	3.65	1(1)	0.00	0	3.97	4(3)	1.02	2(2)	8.64	7(6)
29	기타기계 및 장비	27.68	4(3)	6.04	5(3)	3.61	4(4)	2.50	3(2)	39.83	16(12)
30	사무, 계산, 회계용 기계	18.86	1(1)	2.98	1(1)	0.31	1(1)	0.00	0	22.15	3(3)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9.48	5(3)	0.00	0	8.55	3(3)	0.00	0	38.03	8(6)
32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제조업	77.07	16(4)	0.51	4(3)	0.46	2(2)	1.06	7(3)	79.10	29(12)
33	의료, 정밀, 광학기 기 및 시계	17.25	4(3)	0.00	0	0.00	0	0.00	0	17.25	4(3)
34	자동차 및 트레일 러	45.66	6(2)	24.67	7(3)	4.67	4(2)	0.28	1(1)	75.28	18(8)
35	기타 운송장비	84.35	4(2)	0.72	1(1)	8.97	2(2)	0.03	1(1)	94.07	8(6)
36	가구 및 기타	13.75	1(1)	0.00	0	0.00	0	0.00	0	13.75	1(1)
37	재생 재료 가공처리 업	0.00	0	0.00	0	12.91	1(1)	0.00	0	12.91	1(1)
가중평균 집중도		34.24	72(5)	8.29	38(5)	5.43	68(9)	3.31	42(8)	51.26	220(27)

주: 기업수의 괄호안 숫자는 재벌그룹의 수를 표기

자료: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총람 1996년호.

요약한 <표 10>과 1995년도의 집중도를 요약한 <표 11>을 비교하면 세가지 특 징적인 사항이 눈에 띈다. 첫째는 1991년~1995년 기간 중 전반적으로 30대재벌 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섬유제조업이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등 일부산업에서는 30대재벌의 비중이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총 21개 산업을 가중평균한 집중도는 1991년도 46.6%에서 1995년도에는 51.3%로 증가하고 있다.¹⁷⁾

두번째 특징은 재벌계층별로 산업생산집중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는 1991년~1995년 기간 중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 기간 중 10대재벌의 가중평균 집중도는 35.4%에서 42.5%로 증가하고 11~30대에 속하는 군소재벌의 비중이 11.3%에서 8.7%로 감소했다. 특히 5대재벌의 경우 동 기간중 합병, 계열분리 등의 활발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제조업부문내 계열사 숫자가 동 기간중 91개에서 75개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조업 생산에서 점하는 비중이 29.0%에서 34.2%로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들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경제력 편중현상이 크게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¹⁸⁾ 또 이러한 결과는 일반집중에 관한 별도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도 일치한다.¹⁹⁾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산업별 집중지수와 재벌의 산업별 비중 사이에는 정(+)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재벌이 산업집중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양자의 상관계수는 <표 12>에 요약되어 있다. <표 12>에서 재벌의 산업별 비중은 재벌의 계층화 방법에 따라 허핀달 집중지수와는 0.81~0.84의 상관도를, 그리고 CR₄와는 0.77~0.80의 상관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1991년 자료에 기초할 경우에도 대동소이하다.

<표 12> 재벌집중도, CR₄, 허핀달 지수의 상관관계(1995년)

구 분	5대재벌 비중	10대재벌 비중	20대재벌 비중	30대재벌 비중
CR ₄	0.7778	0.7702	0.7927	0.7576
HHI	0.8294	0.8149	0.8376	0.8182

17) <표 10>과 <표 11>의 재벌순위는 공정위에 따른 기준이다. <표 10>에서 1995년도 총 재벌수가 27개인 것은 30대재벌 중에 동아건설(15위), 극동건설(28위), 뉴코아(29위) 등 3대재벌의 계열사가 한국기업총람자료에 나타나지 않은데 기인한다.

18) 한국기업총람에 따르면 현대그룹의 제조업내 계열사 숫자는 1991년도의 19개에서 1995년도 16개로, 삼성그룹은 23개에서 19개로, LG는 29개에서 18개로 감소한 반면 대우그룹은 12개에서 변동이 없으며 1991년에 5대재벌에 속했던 쌍룡(8개)은 1995년에는 선경(7개)으로 대체되었다.

19) 경제력 일반집중에 관한 별도의 연구에서 30대재벌에의 일반집중도는 1990년대 이후 부가가치, 고용, 매출, 자산 등 어느 기준으로 보든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대재벌에 의한 경제력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본 보고서 <표 10>과 <표 11>의 밑줄에 표시되어 있는 30대재벌의 가중평균집중도는 한국 제조업에서 30대재벌의 비중을 나타내는 일반집중도와 같은 개념이다. 이 가중평균집중도 역시 1991년~1995년 기간 중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점은 최근 5년의 추세만으로 경제력집중의 전반적인 변화추세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에 분석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1980년대까지 분석기간을 확장하면 1990년대의 일반집중도는 1980년대의 집중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줄고(1997) 참조.

이처럼 시장집중도와 재벌규모, 특히 5대재벌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비대한 재벌조직이야말로 시장구조의 경쟁화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일견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앞의 제2절에서 보았듯이 진입 및 가격규제 등 과도한 정부개입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시장내부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재벌에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더 나아가 정부규제의 우선적 효과를 요구하는 체계에 대해 공정위를 비롯하여 일부에서 현재의 재벌형 기업조직, 선단식 경영, 문어발식 다각화 행태가 온존되는 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촉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집중도와 재벌비중이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사실 이상의 해석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집중도와 산업별 재벌비중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재벌의 시장지배력이 높고 그에 따라 시장경쟁의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해석은 구조주의적 해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중도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구조주의적 해석이 어느 만큼 근거가 있는지는 실증분석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다음 제Ⅲ장에서는 한국제조업에서 시장지배력의 행사 결과 어느 정도의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또 이 사회적 비용과 집중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재벌집중에 대한 일반적 우려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제Ⅲ장 시장집중과 사회적 비용

Scherer(1980): (하버거가 추정한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1978년 가격으로 환산하면 연간 20억달러, 미국인 1인당 9달러쯤으로 그럴듯한 식당에서 저녁 한끼 외식하는 비용에 불과하다(461쪽).

At 1978 levels of output, this implies a dead-weight loss about \$2 billion per year, or roughly nine dollars per capita-enough to treat everyone in the land to a steak dinner at a good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restaurant.

Hicks(1935): 독점이 좋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높은 이윤이 아니라 (경쟁의 피로에 시달리지 않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8쪽).

The best of all monopoly profit is a quiet life.

제Ⅱ장에서는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시장구조는 한 시장에서 경쟁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숫자와 규모에 바탕을 둔 시장집중도로 측정되어 왔다는 점, 둘째는 시장구조와 성과는 서로 체계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SCP 분석패러다임에 의거하여 각국의 경쟁정책에서 집중도를 시장지배력의 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셋째는 한국 제조업부문의 시장집중도 변천추이가 그것이다.

여기 제Ⅲ장에서는 두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째, 현실세계의 경쟁은 규범적 理想인 완전경쟁상태에서 이탈될 수 밖에 없는데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규모는 얼마나 되는가를 추정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시장지배력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추정된 사회적 비용의 규모와 산업별 분포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당위성, 시장개입의 강도, 그리고 경쟁정책의 운용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갖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추정된 사회적 비용이 시장집중도와 얼마만큼 밀접한 관

계에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시장집중도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또 그로부터 비롯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사이에는 일정하게 규칙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는 전통은 베인(Bain, 1956) 이후 산업조직론에서 확립되어 왔다. 경쟁정책의 운용기준으로 집중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전통에 연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Ⅱ장에서도 일부 거론한 바와 같이 집중도가 경쟁효율의 신뢰할만한 척도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비판도 적지않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집중도-사회적 비용의 관계분석을 통해 집중도가 갖는 한계, 더 나아가 전통적인 SCP 분석패러다임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장은 먼저 사회적 비용의 측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현실세계의 경쟁이 완전경쟁수준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는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제1절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시장구조가 독점이라는 전제하에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순수독점은 공기업과 같이 정부가 독점면허를 주고 보호하는 경우가 아니면 현실의 경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경제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장구조는 과점체제이다. 따라서 독점을 특수한 경우로 포함하는 불완전 경쟁을 전제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좀더 경제현실에 부합될 것이다. 이에 제2절에서는 불완전 경쟁하에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새로운 모형을 도출하고 제3절에서는 이 모형을 한국 제조업에 직접 적용하여 산업별로 사회적 비용규모를 측정한다. 집중도와 사회적 비용과의 상관관계는 마지막 제4절에서 살펴본다.

1. 독점의 사회적 비용

(1) 전통적 후생삼각형

경쟁부족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추정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독점을 전제하고 있다. 시장구조에는 독점 외에도 과점, 독점적 경쟁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독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는 까닭은 독점하에서 시장지배력(독점력)이 가장 높고, 또 사회적 손실도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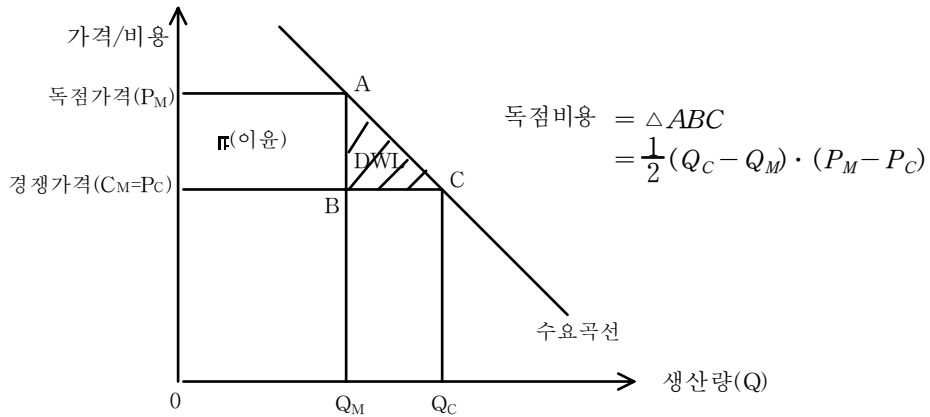
독점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과정을 좀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에 경쟁이 충분한 경우라면 개별기업은 정상이윤(normal profit)만을 얻게 되며 시장가격은 단위생산비용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를 <그림 6-a>로

설명하면 생산량과 가격이 (Q_C, P_C) 에서 균형이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어느 기업도 초과이익(excess profit)을 얻지 못하며 소비자 이익은 극대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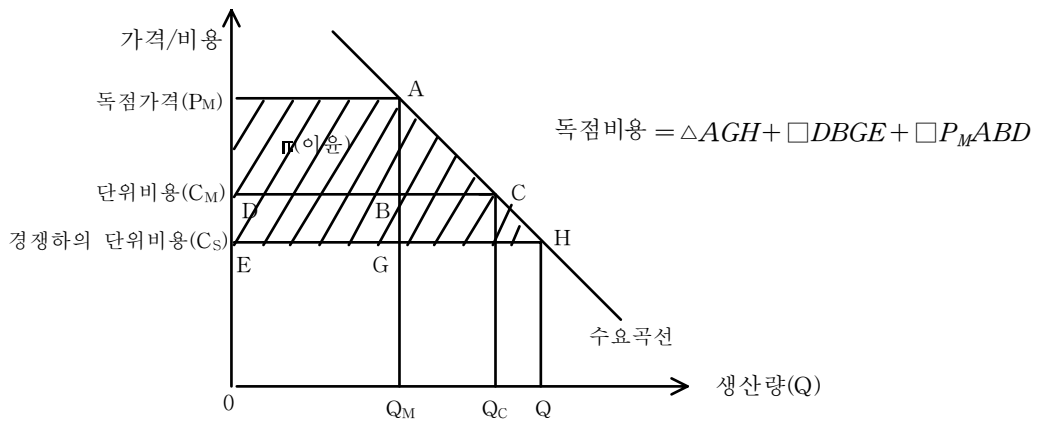
그러나 시장이 독점인 경우 독점기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점력을 행사하여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독점기업은 시장가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량 조정을 통해 시장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이 선택하는 생산량은 완전경쟁상태보다 적고 시장가격은 높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 이를 다시 <그림 6-a>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독점하에서의 시장균형이 (Q_M, P_M) 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완전경쟁상태에 있는 것과 비교하여 독점하에서 소비자는 사각형 면적 $P_M A C P_C$ 만큼 후생손실을 입게 된다.

독점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후생손실액 $P_M A C P_C$ 는 다시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소비자의 전체 후생손실 중에 $P_M A B P_C$ 는 독점기업의 초과이익으로 이전되고 삼각형 $A B C$ 의 면적에 해당하는 후생은 사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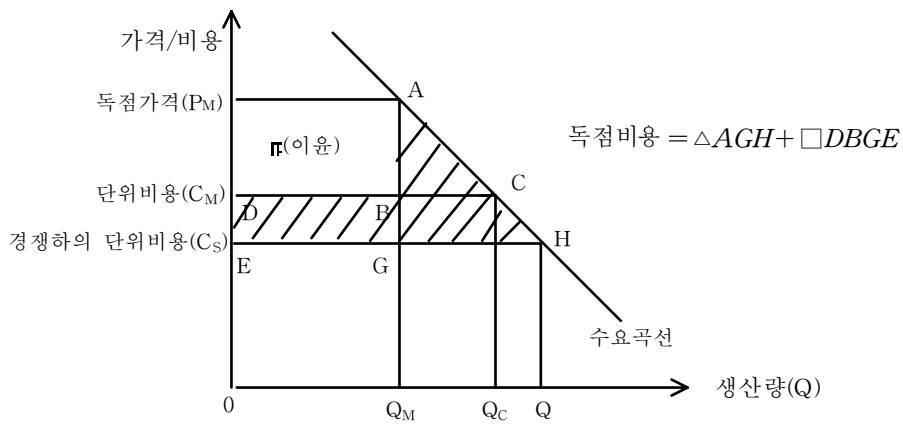
<그림 11> 독점의 사회적 비용



(a) 전통적 독점비용(DWL)



(b) 지대추구와 독점비용



(c) X-비효율과 독점비용

서 영영 사라진다. 이와 같이 독점기업이 독점력을 행사한 결과 사회에서 유실되

는 후생손실을 흔히 死藏된 損失(deadweight loss), 또는 독점의 사회적 비용 (social cost of monopoly), 독점의 후생비용(welfare cost of monopoly)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다. 또 이러한 까닭으로 <그림 6-a>의 삼각형 ABC는 후생손실 삼각형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그 이유가 분명해지겠지만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독점의 사회적 비용이라 하면 삼각형 ABC로 표시되는 후생손실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반드시 독점이 아니라도 경쟁이 완전하지 않고 따라서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적 비용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회적 비용은 독점하에서 가장 크다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시장구조 중에서도 특별히 독점을 문제시하는 전통적 논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독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실제 얼마나 되는가? 각국에서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할만큼 독점의 폐해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는 시도는 하버거(Harberger, 1954)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하버거는 <그림 6-a>의 후생손실 삼각형 추정하기 위해 다음의 추정식을 이용한 바 있다.

$$\begin{aligned}
 DWL_1 &= \frac{1}{2} \Delta P \cdot \Delta Q & (\Delta P &\equiv P_m - P_c, \quad \Delta Q \equiv Q_c - Q_m) \\
 &= \frac{1}{2} TR \cdot \frac{\Delta P}{P_m} \cdot \frac{\Delta Q}{Q_m} & (TR &\equiv P_m \cdot Q_m, \quad \text{독점기업의 총수입}) \\
 &= \frac{1}{2} TR \cdot t^2 \cdot \eta & (t &\equiv \frac{\Delta P}{P_m}, \quad \eta = \frac{P_m}{Q_m} \cdot \frac{\Delta Q}{\Delta P}; \quad \text{수요의 가격탄력성})
 \end{aligned}$$

위에서 t 는 독점가격이 경쟁가격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 즉 가격왜곡도를 나타낸다.²⁰⁾ 하버거는 위의 추정식에서 모든 산업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η)은 1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미국 제조업부문 전체에서 발생하는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GNP의 0.06%에 이른다고 결론지었다.

독점의 사회적 비용이 GNP의 0.06%라면 이는 매우 적은 규모이다. 이 정도의 규모는 셔러(Scherer, 1970)의 표현을 빌자면 미국인 1인당 9달러에 해당하며, 모든 미국인의 하루 저녁 외식비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하버거의 연구결과는 독점의 폐해를 강조하고 경쟁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해 온 많은 시장개입론자들을 당혹시키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하버거의 추정결과는 달리 해

20) 산업별 t 값의 실제 추정에서 하버거는 제조업 전체의 평균이윤율과 개별산업의 이윤율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석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독점구조를 해소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추가적 이득은 GNP의 0.06%를 넘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시장을 감시하고 반독점법을 집행하는데는 적지않은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또 정부의 시장개입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시장개입은 득보다 失이 많을 수 있음을 하버거의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버거의 연구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새롭게 추정하려고 노력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하버거 이후에 사회적 비용의 추정에 대한 연구는 크게 네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그림 6>의 후생손실 삼각형으로 표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하버거의 추정모형은 가정과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량주의적 접근방식이다. 둘째, <그림 6-a>의 삼각형 ABC는 독점기업의 내부비효율성을 감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적 시각에 토대를 둔 연구방향이다. 이 부류의 연구는 라이벤슈타인(Leibenstein, 1966)의 X-비효율론(X-inefficiency hypothesis)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방향은 <그림 6-a>의 삼각형 ABC는 독점력의 행사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독점권의 획득과 유지과정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에 기초하고 있다. 이 부류의 연구는 툴록(Tullock, 1967)과 포스너(Posner, 1975) 등이 주장하는 지대추구가설(rent-seeking hypothesis)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독점기업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과다한 설비를 구축하거나 기존의 경쟁자를 축출하기 위한 경쟁배제전략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보이려는 연구이다.

새로운 각도에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각각의 연구방법과 결과에 대해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첫 번째의 개량주의적인 시도에서 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하버거의 추정식에서 가격왜곡도의 추정방법이나 가격탄력성에 대한 가정이다. 특히 전 산업의 가격탄력성이 1로 동일하다는 가정은 커다란 논란거리였다. 탄력성이 1이라는 가정은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원리와 배치되고, 또 전 산업에서 탄력성이 동일하다는 가정은 산업별로 서로 다른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일었다. 이에 하버거 이후의 새로운 연구에서는 가격탄력성을 달리 가정하거나, 아니면 직접 추정을 통하여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려는 시도가 이어

졌다.

그러나 이들 새로운 추정에서도 하버거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독점의 사회적 비용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가격탄력성을 2.0으로 가정한 슈와르츠만(Schwartzman, 1960)은 독점비용이 GNP의 0.1%를 넘지 못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시그프리트-티이만(Siegfried & Tieman, 1974)의 연구에서도 독점비용은 국민소득의 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이들의 연구는 단지 전체적인 독점비용은 적지만 자동차 산업이 전체 후생손실의 44%를 차지하는 등 독점비용이 일부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뿐이다.

산업자료 대신에 Fortune 500대기업을 조사한 워세스터(Worcester, 1973)의 경우도 독점비용은 GNP의 0.3%를 넘지 못함을 밝히고 있다. 한편 한국 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는 이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에 머무르고 있다. 예를 들면, 강명헌(1988)은 이 비용이 GNP의 0.5%~1.0%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따라서 만약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새롭게 추계하려는 노력들이 하버거의 연구결과를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한다면 삼각형 ABC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개량주의적 시도는 대체로 당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 라이벤슈타인의 X-비효율

하버거나 그 이후의 개량주의적 연구는 모두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즉 독점기업도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삼각형 ABC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논리에 따라서 삼각형 ABC의 면적을 추정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윤극대화는 다른 쪽에서 보면 비용최소화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들 가정은 기업연구에서 당연하게 여겨온 행태가설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들 가정은 최소한 독점기업에게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금전적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편안한 삶”을 영위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점은 일찌기 히스(Hicks, 1935)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히스에 따르면 “독점이 좋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The best of all monopoly profits is a quiet life)”이라고 한다. 즉 독점기업은 구태여 고통을 수반하는 비용 최소화 노력 없이도 여전히

히 높은 이윤을 누리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등한시하고 주어진 여건을 즐기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희스의 이러한 지적은 라이벤슈타인(Leibenstein, 1966)의 X-비효율론(X-inefficiency hypothesis)으로 체계화된 바 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추종하고 있다.

따라서 X-비효율론은 모든 기업이 이윤극대화, 또는 비용최소화를 추구한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오직 시장경쟁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만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뿐, 독점력을 가진 기업은 비용절감보다는 독점상태를 즐기는 한편, 편안한 경영환경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독점력을 낭비한다고 주장한다. 경쟁압력이 낮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서 방만한 경영행태는 현실적으로 관찰되기도 한다. 임원들이 지나치게 넓은 사무실이나 많은 판공비를 사용하고 과도한 고용규모를 유지하며, 노조의 높은 임금인상의 요구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며, 옥상옥(屋上屋)의 경영구조를 갖는 것은 그러한 사례의 일부이다. 경쟁기업으로부터의 도전이 없으면 경영자가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고 생산비를 줄이려는 공정혁신 노력도 등한시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인간 본연의 당연한 속성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독점기업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X-비효율을 사회적 낭비로 볼 경우 전통적인 후생삼각형은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독점의 사회적 비용은 내부비효율을 감안하여 <그림 6-c>에서처럼 재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독점기업의 평균생산비용은 C_m 이다. 그러나 C_m 은 독점에 따른 내부비효율이 반영된 생산비이다. 만약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있었다면 기업은 생존을 위해 더 절실하게 비용절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하의 평균생산비용은 C_m 보다 낮은 C_s 에서 결정된다.

라이벤슈타인이 주장하는 요지는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바로 이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독점의 사회적 비용은 X-비효율 비용인 사각형 DBEG와 새로운 후생삼각형 AGH의 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X-비효율론에 따르면 하버거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이 추정한 독점의 사회적 비용이 적게 나타난 것은 전체 비용의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후생삼각형 ABC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하버거의 후생삼각형에 기초한 독점의 사회적 비용이 기대에 비해 매우 적다는 사실에 당혹해 하던 경제학자나 경쟁정책 당국자들에게 X-비효율론은 하나의 훌륭한 피난처를 제공한 셈이다. 그리고 이 X-비효율론은 많은 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제니-웨버(Jenny & Weber, 1983)는 독점하의 단위비용

이 경쟁하의 비용보다 10% 높다고 가정하면 프랑스에서는 X-비효율에 따른 비용만도 GDP의 약 5%에 이른다고 추정한 바 있다. 또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강명헌(1988)은 총수입의 6.5%에 해당하는 X-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6~8%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림 6-c>의 사각형 DBEG전부를 사회적 손실로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쟁압력이 없기 때문에 독점하에서 단위비용이 경쟁수준에 비해 높다는 점은 인정되고 따라서 삼각형 AGH가 독점에 따른 사회적 후생손실이라는 점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사각형 DBEG에 해당하는 비용은 독점기업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기업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에서 손해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모두가 손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DBEG의 발생과정을 보면 좀더 분명히 이해될 수 있다. 독점기업은 노동자에게 보다 너그러운 임금이나 많은 여가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경영자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품위유지비를 허용하는 등의 이유로 경쟁체제하의 기업보다 단위생산비용이 높게 된다. 물론 독점적 위치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사회적 손실로 보아야 하겠지만 전자의 경우는 주주로부터 경영자나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로의 소득재분배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모두를 사회적 손실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²¹⁾

(3) 포스너의 지대추구가설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적다는 하버거의 연구결과에 대응하는 또 다른 방향의 연구는 지대추구가설(rent-seeking hypothesis)에 토대를 두고 있다. 지대추구의 개념은 본래 툴록(Tullock, 1967)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대추구비용이 독점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요소로 추가된 것은 포스너(Posner, 1975)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포스너는 독점이윤이 존재한다면 많은 수의 기업들이 서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점을 중시한다. 독점적 사업권 획득을 위해 기업들이 정부관료에 물밑접촉하며 뇌물을 제공하고, 또 독점력의 유지를 위해 과다한 광고비를 지출하는 행위는 모두 지대추구행위로 보아

21) 헤이-모리스(Hay & Morris, 1991)도 이러한 맥락에서 DBEG 전부를 사회적 손실로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586쪽).

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후생삼각형을 독점의 사회적 비용으로 보는 견해는 주로 독점력의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지대추구론자들은 독점력의 획득과 유지과정에서 적지않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하겠다.

특히 포스너가 전통적 후생삼각형(ABC)이 실제의 사회적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다음 두가지 가설이 전제되어 있다. 첫째, 독점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전체비용은 독점지대와 같다(the rent dissipation postulate). 둘째, 지대추구비용은 사회적으로 전혀 무익하다(the wastefulness postulate). 이 두 가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독점의 사회적 비용은 <그림 6-b>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즉 지대추구론에 따르면 독점의 사회적 비용은 후생 삼각형(AGH)에 광고비 등의 지출(DBGE)과 세전 이윤(P_mABD)을 합산한 것으로 정의되며 이는 당연히 전통적 후생삼각형(ABC)의 면적을 훨씬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포스너의 두 가설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두 가설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포스너가 지대낭비가설을 주장한 배경을 다음의 예시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재산 Y 를 가지고 있는 지대추구자들이 독점지대 R 이 보장되는 사업권 획득을 위해 경쟁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지대추구자는 사업권 획득을 위해 모두 똑같이 I 만큼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자. 지대추구자들이 모두 위험중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고 또 누구나 지대추구경쟁에 합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대추구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수(n)는 기대소득이 현재의 소득과 일치하는 점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E(Y) = \frac{1}{n}(Y - I + R) + \frac{n-1}{n}(Y - I) = Y$$

위의 관계식에서 독점지대가 지대추구비용의 총계와 일치함($R=nI$)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의 도출과정에서 전제되고 있는 ①지대추구자는 위험중립적이고 ②지대추구경쟁에 누구나 합류할 수 있으며 ③지대추구자들은 소득(Y), 독점지대의 규모에 대한 평가(R), 투자규모(I) 등 모든 면에서 대칭적이라는 가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세가지 가정 중 일부를 완화할 경우 지대추구비용은 독점지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²⁾

22) 예를 들면 힐만-캣츠(Hilman & Katz, 1984)는 위의 가정 중 ①의 위험중립적 대신에 위험회

지대추구비용의 전부를 사회적 낭비로 볼 것인가, 또는 일부분만을 사회적 낭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대추구에 지출된 비용이 왜 사회적으로 무익한가는 다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독점권 수혜를 노리는 기업들의 노력과 지출, 둘째는 기업들이 로비과정에서 뿌리는 돈을 노리는 관료들의 노력, 그리고 셋째는 지대추구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그것이다.

이들 유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PCS 사업, 유선방송과 같이 정부가 특정 사업에 인·허가권을 갖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독점권을 획득하려는 기업은 정책결정자에 접근가능한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뇌물을 제공하려 할 것이다. 이때 지출되는 비용은 위에서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회낭비적 지대추구비용에 속한다.²³⁾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뇌물이 관행화되어 있는 한편, 인·허가권 등 이권이 큰 부서일수록 뇌물의 액수나 뇌물수수의 빈도가 높다.²⁴⁾ 따라서 정부관료들 사이에는 이권이 큰 부서에 배치되거나 아니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승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출한다는 점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관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노력과 비용은 위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지대추구비용에 속한다. 그리고 독점인허의 결과로 稅收가 증가하면, 그 돈의 사용처를 놓고 정부부처간 또는 이해집단간 서로 경합을 벌이게 되는데 이는 세 번째 유형의 지대추구비용에 속한다.

위의 설명에서 보는 것처럼 지대추구이론은 대체로 정부를 상대로 독점권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민간기업들 사이의 경쟁에서 독점적 지위의 획득을 위한 노력,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단기적 독점이윤 전체를 사회적 손실로 본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기업가적 이윤추구의 동기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

피적이라고 가정함으로써, 로저슨(Rogerson, 1982)은 ②의 완전경쟁가정을 수정함으로써, 그리고 자드로우 부부(Jadlow & Jadlow, 1988)는 ③에서 독점지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미함으로써 R 은 nI 보다 적음을 입증하고 있다.

23) 뇌물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적 낭비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독점사업권 획득을 위해 관료에게 전달되는 뇌물은 해당사업의 서비스 소비자로부터 관료에게로의 소득재분배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뇌물을 사회적 손실로 보는 이유는 뇌물 수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때문이다. 뮐엘러(Mueller, 1990)에 따르면 뇌물자금 마련에 드는 노력과 비용, 로비스트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뇌물을 받는 부서로의 배치나 지위승진을 위해 정부관료들이 쓰는 시간과 수고 등을 뇌물수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231쪽).

24) 1996년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64.6%는 떡값을 받을 용의가 있고(부정방지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 또 국민들의 85%는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인식(현대경제사회연구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대추구가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할 사례는 코올링-뮤엘러(Cowling & Mueller, 1978)를 제외하고는 없다. 이들 학자는 포스너의 두 가설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 독점의 사회적 비용이 각각 GNP의 10%를 넘는다고 추정한 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따르고 있다.

(4) 경쟁배제전략과 사회적 비용

하버거의 연구를 효시로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는 <표 13>에 요약되어 있다. 이 밖에 X-비효율론, 지대추구론 외에도 최근에는 독점기업의 경쟁배제전략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여기에서 경쟁배제전략이라 하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고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라든지, 또는 이미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업체를 시장에서 축출하고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뜻한다. 따라서 경쟁배제전략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

<표 13> 독점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요약

연구자	추정모형	주요가정	추정결과	분석대상
Harberger (1954)	후생손실삼각형	전산업의 가격탄력성 = 1	GNP의 0.06%	미국 73개 제조업 (1924~28년)
Kamerschen (1966)	후생손실삼각형	① 가격탄력성 = 1 ② 가격탄력성 = Lerner지수의 역수	① NI의 1.03~4.55% ② NI의 3.87~7.55%	미국 기업자료 (1956~61년)
Siegfried & Tiemann (1974)	후생손실삼각형	가격탄력성 = 1	NI의 0.07%	미국 125개 광공업 (1963년)
Cowling & Mueller (1978)	① 후생손실삼각형: $\frac{1}{2}II$ (II :기업이윤) ② 내부비효율을 반영한 후생손실삼각형: $\frac{1}{2}(II+A)$ (A :광고비) ③ X-비효율: $\frac{1}{2}(II+A)+A$ ④ 지대추구: $\frac{1}{2}(II+A)+A+II'$ (II' :세후이윤)		(GCP 대비 비율) ① 미국: 3.96%, 영국: 3.86% ② 미국: 6.52%, 영국: 4.36% ③ 미국: 12.27%, 영국: 5.39% ④ 미국: 13.14%, 영국: 7.20%	·미국:734개기업 (1963~66년) ·영국:103개기업 (1968.9~70.4)
Sawyer (1980)	후생손실삼각형	① 가격탄력성 = 1 ② 가격탄력성 = Lerner지수의 역수	① 제조업순매출액의 0.95% ② 제조업순매출액의 6.93%	-
Jenny & Weber (1983)	후생손실삼각형 X-비효율	· 고집중 산업의 가격탄력성 = Lerner지수의 역수, 저집중산업의 가격탄력성 = 1 · 생산비의 10%를 사회적 낭비로 가정	① GDP의 0.85% ② GDP의 7.39%	프랑스 SIC 2단위 52개 산업 (1967~70년)
Olson & Bumpass (1984)	후생손실삼각형 X-비효율	① Harberger방식 ② Cowling & Mueller방식	○의 1.33~1.53% ② NI의 6.89~7.32%	미국 제조업체 (1967~81년)
Wahlroos (1984)	후생손실삼각형	① 가격탄력성 = 1 ② 추정 가격탄력성 이용	① 미국:GDP의 0.037~0.068% ② 핀란드:GDP의 0.2~0.6%	① 미국: 광공업43개산업 (1962~75년) ② 핀란드: 제조업80개 산업 (1970~79년)
Gisser (1986)	지배 기업모형의 후생손실삼각형	① 쿠르노 경쟁 가정 ② 담합 가정	① GNP의 0. ② GNP의 1.82%	445개 SIC 제조업 (1977년)
강명현 (1988)	후생손실삼각형 X-비효율	· 가격탄력성 = 1.5 · 6.5%의 X-비효율	① GNP의 0.5~1% ② GNP의 6~8%	56개 제조업 (1977~85년)

장은 얼핏보면 지대추구론과 같은 맥락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대추구론은 정부를 상대로 독점권 획득 및 유지(독점권 재계약)를 위해 경쟁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데 반해 경쟁배제전략은 정부가 개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독점기업의 경쟁배제전략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라이온스(Lyons, 1986)이다. 라이온스는 독점기업이 신규기업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초과설비를 보유하는 경우에 주목하고 있다. 초과설비는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 모든 설비를 가동하여 파괴적인 가격경쟁을 하겠다는 묵시적 협박의 의미를 갖는다. 만약 이 협박이 먹혀 들어간다면 신규진입은 발생하지 않게 되고 또 기왕에 설치된 초과설비는 결국 이용되지 않고 사장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낭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전략적 초과설비의 유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지 않는 전통적 후생손실 삼각형은 독점비용을 저평가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라이온스가 주장하는 요지이다. 그러나 라이온스의 주장은 초과설비가 신규기업의 진입억제력을 지닌다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 가설은 이론적으로나 실증분석적으로나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²⁵⁾

시장선점을 위한 ‘너무 이른’ 투자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면 밀스(Mills, 1991)는 시장이 채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설비투자 경쟁을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투자는 사회적으로 볼 때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후생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에서 너무 이른 투자설비경쟁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표 14>의 신문기사도 이같은 맥락에서 문제의식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살롭-셰프만(Salop & Scheffman, 1987)은 또 다른 형태의 경쟁배제전략이 사회적 비용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시도할 즈음에 기존기업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원료와 중간자재를 사재기하여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독점기업이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사회적 후생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

25) Lyons의 주장은 Bain-Modigliani-Sylos의 한계가격책정이론(Limit Pricing Hypothesis)과 Spencer의 초과설비론(Excess Capacity Hypothesis)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subgame perfect equilibrium에서 초과설비가 신규기업의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credible threat)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반대 이론이 적지않다. 초과설비는 현실에서 관찰되기는 하지만 이는 주로 경기변동, 설비투자의 불가분성, 최대수요(peak demand)에의 대비에 그 원인이 있고 진입저지 동기에서 비롯된 전략적 초과설비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실증분석결과가 있다. 필자의 논문(1994) 참조.

의는 아직은 이론분석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 경쟁배제전략이 반드시 사회적 후생감소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표 14> 시장선점을 위한 설비투자과 사회적 손실(사례)

제3의 이동통신이라 할 개인휴대통신(PCS)의 10월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때이른 시장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 갖가지 경품을 곁들인 관측행사에도 대대적인 홍보행사까지 어루러져 일대 결전을 앞둔 긴장감조차 감돈다.

SK와 신세기가 양분하고 있는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 PCS까지 본격 가세함으로써 국내시장은 군웅할거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셈. 기존의 이동통신시장이 오랫동안 아날로그 방식의 공영독점시대를 거쳐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복수경쟁체제로 바뀐 것은 불과 2년전이다.

그런데 셀룰러폰의 복수경쟁체제가 채 종착되기도 전에 다시 PCS방식이 도입되고 시티폰까지 등장, 한꺼번에 혼전의 양상으로 빠져들었다. 좋게 보면 통신개방시대를 맞아 이동통신의 백화제방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같은 이동통신의 과잉투자가 시장의 성숙이나 기술력의 축적도 없이 한꺼번에 범람함으로써 시장혼란과 자본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적지않다. 기존 셀류러 2개사에 PCS3개사까지 가세하고 여기에 중소 시티폰과 유사 통신사업자까지 합하면 60개 가까운 사업자들이 좁은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 많은 사업자들이 초기투자에 자본을 마구 쏟아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는 걱정된다. 더구나 아주 가까운 장래에 IMT2000과 같은 세계 표준형 첨단통합 서비스 시스템이 발족될텐데 지금의 무모한 과열경쟁과 중복투자는 자원낭비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 1997년 8월11일자 만물상에서 발췌)

2. 불완전 경쟁의 사회적 비용 추정모형

(1) 기본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후생손실비용을 추정하고 있는 기존연구들은 모두 순수독점, 아니면 완전담합을 가정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순수독점은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희귀한 경우이다. 또한 완전담합은 죄수들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의 상황과 흡사하여 자체 모순을 안고 있는데다 경쟁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로 인해 장기간 존속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은 과점시장에서 비협조적 경쟁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다.²⁶⁾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 경쟁하에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도출한다. 특히 코올링-워터슨(Cowling & Waterson 1976)에 의해 소개된 이후 과점시장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모형에서 출발하여 후생손실 삼각형의 면적을 추정하는 방법을 도출한다. 여기서 도출되는 사회적 비용의 추정모형은 다음에 밝혀지겠지만 기존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독점을 특수한 한 경우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좀더 일반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 제2절에서는 모든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가정하에 불완전 경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모형을 도출한다. 앞에서 X-비효율론을 설명하면서 보았듯이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의 경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이윤(비용)을 극대화(최소화)하느냐의 여부는 사회적 비용의 추정규모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단 이윤극대화 가정하에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기본모형을 도출하고 다음 제Ⅲ장 제3절 실제의 추정과정에서 X-비효율론과 지대추구가설을 접목한다.

하나의 산업(시장)에 불특정 다수의 기업 n 개가 있다고 하자. P 는 시장가격을 q_i ($i = 1, 2, \dots, n$)는 개별기업 i 의 생산량이라 하면 산업전체의 생산량은 $Q = \sum_{i=1}^n q_i$ 그리고 시장수요함수는 $P = g(Q)$ 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개별기업 i 의 비용함수를 $C_i = c_i(q_i)$ 로 표시하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별기업 i 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게 된다.

$$\text{Max}_{q_i} \pi_i = Pq_i - c_i(q_i)$$

이윤 극대화를 위한 1차조건(first-order condition)으로부터 개별기업 i 의 비용-마진에 대한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26) 여기 제2절 이하에서는 독점력 대신 시장지배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독점력은 순수독점, 또는 완전담합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과점시장에서 대기업이 보유하고 행사하는 시장지배력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P - MC_i)/P = S_i(1 + \lambda_i)/\eta \quad \dots\dots\dots(1)$$

위에서 MC_i 는 기업 i 의 한계생산비($\frac{\partial C_i}{\partial q_i}$)를, S_i 는 기업 i 의 시장점유율($\frac{q_i}{Q}$)을, λ_i 는 기업 i 의 생산량 결정에 대해 경쟁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기업 i 가 갖는 기대, 즉 기대변이 conjectural variation($\frac{\partial \sum_{j \neq i} q_j}{\partial q_i}$)를 나타내며, η 는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frac{\partial P}{\partial Q} \cdot \frac{Q}{P}$)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1)에서 개별기업의 마진율은 시장점유율에 비례하고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의 주된 관심은 경쟁부족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완전경쟁수준에서 얼마나 이격되는가, 즉 가격의 상대적 왜곡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찰된 시장가격의 비교기준으로서 완전경쟁가격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독점인 경우라면 이 기준점은 한계생산비용이 시장수요곡선과 일치하는 점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한 산업내에 여러 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이들 기업간 비용함수가 다를 경우는 사회적 한계생산비용을 별도로 구해야 한다. 여러 기업들의 서로 다른 비용함수로부터 사회적 한계생산비용을 도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여기서는 개별기업의 한계생산비용의 가중평균치를 그 산업의 사회적 한계생산비용(SMC)으로 정의한다. 이를 수식으로 풀면 사회적 한계생산비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MC(MC_1, MC_2, \dots, MC_n) = \sum_i \alpha_i \cdot MC_i \quad \dots\dots\dots(2)$$

식(2)에서 α_i 는 가중치이며, 여러 형태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alpha_i = S_i$ 로 정의한다.²⁷⁾

사회적 한계생산비용(SMC)을 정의하였기 때문에 개별기업에 대한 관계식(1)을 산업에 대한 관계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식(1)의 좌우에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S_i)을 곱하고 n 개의 기업에 대해 총합하면 산업에 대한 다음의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27) 이와 같이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가중치로 삼는 것에 대해 돈시모니 등(Donsimoni et al. 1984)이 “응용연구에서 관례(the usual course of works in applied work)”로 보고 있다.

$$(P - SMC)/P = H \cdot (1 + \lambda)/\eta \quad \dots\dots\dots(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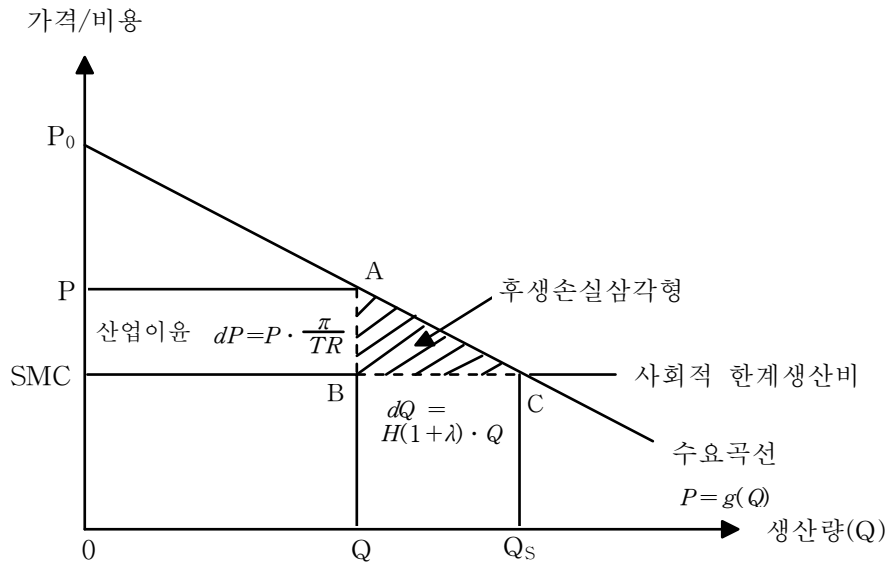
식(3)에서 H는 제2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 허핀달 시장집중지표($\sum_i S_i^2$)를, λ 는 개별기업의 기대변이의 가중평균($\sum_i S_i^2 \lambda_i / \sum_i S_i^2$)을 나타낸다.

윗 식(3)은 기업마다 생산비용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회적 한계생산비용을 정의한 것 외에는 코올링-워터슨(1976)의 결과와 같다. 즉 식(3)은 러너지수($\frac{P - SMC}{P}$)라 불리우기도 하는 시장성과지수, 달리 표현하면 완전경쟁 시장가격에서 현실경제의 경쟁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격의 상대적 왜곡도를 나타낸다. 여기에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이 일치하는 장기적 상황을 상정하고 Π 는 산업전체의 이윤을, TR은 산업의 총매출액을 표시한다고 하면 식(3)은 러너지수 대신에 산업이윤율에 대한 관계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Pi/TR = H \cdot (1 + \lambda)/\eta \quad \dots\dots\dots(4)$$

한편, 불완전 경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그림으로 보면 독점에서 처럼 후생손실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림 7>의 빗금친 삼각형이 바로 그것이다. 즉, 시장경쟁이 충분하였다면 산업생산량과 시장가격은 (Q_s, SMC)에서 균형을 이루었을 것이나 불완전 경쟁이 지배적인 현실세계에서는 (Q, P)에서 시장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후생삼각형의 밑변 ($dQ = Q_s - Q$)만큼 생산량이 적게 생산되고 또 삼각형의 높이($dP = P - SMC$)만

<그림 12> 불완전 경쟁하의 사회적 비용



큰 가격이 높아지는 가격왜곡효과가 발생한다. 이 중 시장가격왜곡도는 식(3)으로 표시됨을 보았고, 생산량 왜곡도는 가격탄력성 계산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Q_s - Q)/Q = H(1 + \lambda) \dots\dots\dots(5)$$

이상의 식(3)~식(5)를 이용하면 <그림 7>의 후생손실 삼각형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

$$\begin{aligned} DWL_2 &= dP \cdot dQ/2 \\ &= \Pi \cdot H(1 + \lambda)/2 \end{aligned} \dots\dots\dots(6)$$

따라서 불완전 경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기업성과지표(Π), 시장 구조지표(H), 그리고 시장행태변수(λ)에 의해 결정된다. 식(6)의 사회적 비용의 추정모형은 독점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추정식에 대해 세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식(6)은 시장구조지표 뿐만 아니라 시장행태, 성과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구조-성과관계를 둘러싼 논쟁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제 I 절에서 설명한 SCP 분석패러다임에 따르면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산업내 기업들이 경쟁제한적 행태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고 따라서 산업내 초

과이윤도 높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시 말하면 집중도(H)와 사회적 비용(DWL)은 거의 1:1 대응에 가까운 정비례적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론자는 집중도와 이윤이 정(+)의 관계에 있지만 이는 시장지배력 때문이 아니며 특히 잠재적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집중도와 시장지배력은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집중도(H)와 사회적 비용(DWL) 사이에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결국 집중도(H)와 사회적 비용(DWL)이 실제로 얼마만큼 긴밀한 관계에 있는가는 실증분석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제Ⅲ장 제4절에서 살펴본다.

둘째, 식(6)은 지금까지 보아온 추정모형과 달리 몇가지 특수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내 초과이윤이 매우 적은 경우($\Pi \rightarrow 0$), 또는 지배적 기업없이 무수한 중소기업의 기업들이 경쟁하여 시장집중도가 매우 낮은 경우($H \rightarrow 0$), 또는 소수의 대기업이 유효경쟁을 벌이는 경우($\lambda \rightarrow -1$)에는 사회적 비용 역시 $DWL \rightarrow 0$ 으로 수렴할 것이다. 교과서적인 완전경쟁이나 보몰(Baumol) 등이 주장하는 완전경합시장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완전독점이나 완전담합의 산업에서는 $H(1 + \lambda) = 1$ 이기 때문에 $DWL = \Pi/2$ 로 추약될 수 있다. 또 산업조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쿠르노(Cournot) 경쟁을 가정하면 $\lambda = 0$ 이므로 후생손실규모는 $\Pi \cdot H/2$ 로 추정될 수 있다.

셋째, 식(6)은 앞에서 살펴본 이 분야의 기존연구들이 경쟁부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과대추정하였음을 시사한다. 기존연구는 독점이나 완전담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식(6)에서 $H(1 + \lambda) = 1$ 을 가정하여 $DWL = \Pi/2$ 를 추정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표 13>에서 보듯이 코올링-뮤엘러(Cowling & Mueller, 1978)의 추정모형은 정확히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시 반복하지만 완전독점이나 담합의 현실적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러한 맥락에서 기서(Gisser, 1986)는 미국경제의 경우 독점이나 담합보다는 쿠르노 경쟁이 경제현실에 더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만약 기서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면 사회적 비용은 $DWL = \Pi \cdot H/2$ 으로 추정해야 하며 코올링-뮤엘러의 연구를 위시하여 기존의 연구는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동일한 규모를 가진 5개기업이 쿠르노 경쟁을 하고 있는 경우 사회적 비용은 산업이윤의 1/10이 되지만 독점을 가정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는 사회적 비용을 이윤의 1/2로 추정하고 있는 셈이다.

(2) 응용연구 1: 시장효율지표의 선택

<그림 7>의 후생손실 삼각형은 비록 시장경쟁을 정태적인 상태로 보는 제한된 분석틀 안에서의 논의이기는 하지만 시장구조를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시장구조에 대한 당초의 관심이 경쟁의 상태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측정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고 후생손실 삼각형의 면적은 바로 이 비효율성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제Ⅱ장 <표 1>에서 요약한 바 있는 다양한 시장지배력 지표도 <그림 7>의 후생손실 삼각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면 러너지수와 베인지수와 같은 성과지표는 이 삼각형의 높이인 가격왜곡도와 관련이 있다. 반면에 허핀달 지수나 상위 k기업 집중율 등 구조지표는 삼각형의 밑변, 즉 생산량 왜곡도와 관계가 있다.

SCP 분석패러다임에 따르면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구조지표나 성과지표는 다같이 유용하다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그림 7>의 삼각형 밑변이나 높이 중 하나만을 가지고 삼각형 전체의 면적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또 이러한 주장은 밑변의 길이(구조)와 높이(성과)는 서로 정(正)의 관계가 있다는 거듭된 실증분석의 결과에 힘입어 큰 무리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시장지배력, 그리고 그 결과인 사회적 비용의 산업간 비교시 대상산업의 가격탄력성이 같지 않다면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 중 하나로 삼각형의 면적을 비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밑변의 길이는 같아도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삼각형 높이는 커지고 따라서 삼각형의 면적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산업간 비교에 있어서 한 산업의 삼각형 면적이 더 크다고 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반드시 더 비효율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A시장에서의 후생손실 삼각형이 B시장에서보다 크다는 것이 반드시 A시장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하는 것은 오류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장의 절대규모가 크면 클수록 일반적으로 후생손실규모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잉여와 산업이윤의 합인 사회후생규모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상대적 자원배분효율도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완전경쟁하에서 도달가능한 사회후생수준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가를 가지고 시장효율도를 정의할 수 있다. 반대로 시장비효율도는 <그림 7>의 후생손실 삼각형의 면적이 완전경쟁하에서 도달가능한 사회후생수준 대비 몇 %인가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수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시장효율도}(ME) \equiv \frac{CS + \Pi}{CS + \Pi + DWL}, \quad \text{또는}$$

$$\text{시장비효율도}(MI) \equiv \frac{DWL}{CS + \Pi + DWL} = 1 - ME \quad (\text{CS: 소비자 잉여})$$

또 이러한 정의하에 수요곡선이 선형이라고 가정하면 시장효율성 지표는 어렵지 않게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ME = \{2H(1 + \lambda) + 1\} / [\{H(1 + \lambda)\}^2 + 2H(1 + \lambda) + 1] \quad \dots\dots\dots(7)$$

시장의 상대적 효율도를 나타내는 위 식(7)은 $H(1 + \lambda)$ 의 감소함수이다. 따라서 시장의 상대적 효율성은 생산량의 상대적 왜곡도를 나타내는 $H(1 + \lambda)$ 와 1:1 대응관계에 있고 가격왜곡도와는 무관하게 된다. 이 결과는 러너지수 등 성과지표로 시장경쟁의 강도를 측정할 경우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 $H(1 + \lambda)$ 는 돈시모니 등(Donsimoni, et.al, 1984)이 새로운 관점의 ‘적절한 시장 집중지표 the appropriate concentration measure’ 라고 분류한 계열에 속한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²⁸⁾ 여기서 새로운 관점이라 함은 집중도만으로도 시장지배력과 그 결과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기존의 시각에 대해 식(7)은 시장행태를 동시에 감안하지 않는 집중도만으로는 왜곡된 해석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쿠르노 경쟁을 가정($\lambda = 0$)하면 시장의 상대적 효율성은 허핀달 지수만의 감소함수로 표시될 수 있다. 즉

$$ME = (2H + 1) / (H^2 + 2H + 1) \quad \dots\dots\dots(8)$$

$$MI = H^2 / (H^2 + 2H + 1) \quad \dots\dots\dots(9)$$

여기서 $0 \leq H \leq 1$ 의 범위에 있으므로 ME는 $3/4 \leq ME \leq 1$ 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즉, 시장경쟁이 완벽하면 ME는 1의 값을, 시장이 완전독점이면 ME는 3/4이다. 반면에 $0 \leq MI \leq 1/4$ 의 값을 갖게 되며 허핀달 지수가 증가하면 MI도

28) 돈시모니 등은 $\sum_{i=1}^n \alpha_i s_i (1 + \lambda_i)$ 를 적절한 시장집중지표라 한다. 이 지표에 가중치를 $\alpha_i = s_i$ 라 하면 본문의 식(5)에서와 같이 $H(1 + \lambda)$ 가 도출된다.

증가한다.

따라서 수요곡선이 선형이라는 다소 제한적인 가정하에 도출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의 결과는 허핀달 집중지수에 대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허핀달 지수가 시장의 자원 배분기능의 상대적 효율성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왕에 시장구조지표를 경쟁정책에 활용하겠다면 다른 지표에 비해 허핀달 지수의 활용빈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Ⅱ장 제2절에서 본 것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선정이나 기업결합의 심사에서 상위 k기업 집중도(CR_k)를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 1982년의 『합병에 관한 지침(The Merger Guideline)』 이후 CR_k 에서 허핀달 지수로 정책기준을 선취한 것처럼 우리의 정책운용기준도 바뀔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허핀달 지수가 자원배분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적 잘 반영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경쟁을 정태적인 상태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시장경쟁은 여러 시점에 걸쳐 진행되는 역동적 과정임을 감안하면 허핀달 지수라고 해도 시장경쟁의 효율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갖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다시 논의한다.

(3) 응용연구 2: 지배기업모형과 사회적 비용

현실의 산업조직을 자세히 관찰하면 대부분의 산업이 소수의 대기업군과 다수의 중소기업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산업조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론이 지배기업모형(dominant firm theory)이다. 이 모형에서 대기업은 시장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적 기업(dominant firm)으로, 중소기업은 주어진 대기업이 설정한 시장가격에 순응하는 주변부 기업(competitive fringe)으로 이원화된다. 이러한 지배기업모형이 현실의 산업조직을 좀더 잘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모형하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측정되고 또 그 결과는 앞서 도출한 추정산식 (6)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조직의 이원화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또 지배적 기업과 주변부 기업의 행태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칼튼-펠로프(Carlton & Perloff, 1989)를 참조할 수 있다.²⁹⁾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배기업모형은 다음의

두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지배적 기업이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주변부 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것이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현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분업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경쟁적인 주변부 기업의 존재를 감안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시장가격이 낮게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주변부 기업이 존재할 경우 지배적 기업이 직면하는 실효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가격도 주변부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낮은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배기업모형이 적용되어야 하는 산업을 추정산식 (6)으로 추정하면 시장 비효율도는 과대평가될 수 있다. 이 점은 기서(Gisser, 1986)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기서에 따르면 독점보다는 쿠르노 과점모형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후생손실을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합성이 더 높지만 이 방법도 주변부 기업의 존재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액이 과대평가되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상이윤(normal profit)만을 얻는 경쟁적인 주변부 기업군(중소기업)과 지배적 기업군(대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에서의 사회적 후생손실 추정산식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가. 지배기업모형에서 사회적 비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새로운 기호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d \equiv$ 지배적 기업군(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수

$H_d \equiv \sum_{i=1}^d S_i^2$: 지배적 기업군의 허핀달 집중지수

$\lambda_d \equiv \sum_{i=1}^d S_i^2 \cdot \lambda_i / H_d$: 대기업들의 기대변이 가중치

$CR_d \equiv \sum_{i=1}^d x_i / X$: 대기업들의 시장점유율 누계

$\Pi \equiv \sum_{i=1}^d \pi_i = \sum_{i=1}^n \pi_i$: 대기업 전체이윤 = 산업이윤

η :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

η_d : 잔여수요(residual demand; 대기업의 수요곡선) 가격탄력성

η_f : 주변부 기업의 공급탄력성

위의 기호와 지배기업이론을 이용하면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³⁰⁾

29) Carlton & Perloff(1989), Modern Industrial Economics, 제8장 참조.

30) 이의 도출과정에 대해서는 필자의 1992년 미발간 논문 "On the Measure of Welfare Performance in Oligopoly Market"을 참조할 수 있다.

$$DWL_3 = \frac{\Pi \cdot H_d \cdot (1 + \lambda_d) \cdot \eta}{2CR_d \cdot \eta_d} \dots\dots\dots(10)$$

위의 식(10)은 식(6)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분석에서의 활용도도 제약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주변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극히 적어 무시할 만하거나 또는 이들 기업의 점유율이 매우 안정적이라 하면 위의 추정산식은 식(6)과 비슷한 형태로 전환된다. 그 까닭은 위에서 정의된 여러 가지 탄력성 사이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eta_d = \eta / CR_d + \eta_f(1 - CR_d) / CR_d$$

위의 관계식에서 주변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경우는 $CR_d \rightarrow 1$ 을 의미하므로 $\eta / \eta_d \rightarrow 1$ 이 됨을 알 수 있다. 또 주변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적지는 않지만 매우 안정적이라 하면 이는 이들의 공급탄력성이 0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즉, $\eta_f \rightarrow 0$ 이므로 위에서 $CR_d \rightarrow \eta / \eta_d$ 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이 둘 중 한가지만 성립해도 위의 추정식(10)은 가격탄력성이 포함되지 않는 추정식 (6)과 비슷한 형태로 축약될 수 있다. 즉,

$$DWL_4 = \Pi \cdot H_d \cdot (1 + \lambda_d) / 2 \dots\dots\dots(11)$$

추정식 (6)이 독점 및 담합, 쿠르노 과점, 완전경쟁을 특수한 경우의 하나로 포괄하고 있듯이 위의 추정식 (11)도 지배적 기업간 경쟁관계에 따라 다양한 경우들을 특수한 케이스로 포함하고 있다. 또 식(11)은 개방경제하의 시장효율성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수입비중이 적거나 안정적인 산업에서는 주변기업의 생산물 대신에 수입을 대입하면 위에서 도출된 추정산식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3. 사회적 비용의 추정

(1) 추정방법

앞에서 도출한 추정모형에 의거하여 1992~1995년 기간 중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 본다. 여기에서 이용되는 자료는 한국기업총람의 산업별 재무분석 자료와 기업별 매출액 자료이다. 동 자료는 제Ⅱ장 제3절 산업별 집중도 계측에서 이미 이용한 바 있으며 다음 장에서 이동지표를 측정할 때에도 계속 이용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추정모형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모형을 선택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업총람자료의 성격에 대해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 자료는 상장, 외감,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중분류(KSIC) 산업기준하에 산업별로 재무자료를 요약, 작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제외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도 기준으로 제조업 부문의 전체 기업수는 총 91,372개이지만 한국기업총람 자료는 6,446개의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 기계 및 장비제조업을 예로 들면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는 총 11,582개의 기업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비해 한국기업총람은 약 290개의 대기업 자료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별 매출총액에서는 한국기업총람이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나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두 자료에서 기업수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엇비슷한 것은 한국기업총람에서 제외된 기업들이 주변부 기업임을 뜻한다. 따라서 앞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추정모형 중에서 추정식 (11)이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의 성격에 가장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추정식 (11)은 경쟁부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후생손실 삼각형으로 나타난다는 전통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연구를 검토하면서 언급했듯이 전통적인 후생손실 삼각형은 시장지배력이 높은 대기업의 내부비효율을 감안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비용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추정식 (11)을 기본모형으로 하고, 이 기본모형에 라이벤슈타인의 X-비효율이나 포스너의 지대추구론을 가미하여 다양한 가설하에 경쟁부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다.

특히 여기서는 코올링-뮤엘러(Cowling & Mueller, 1978)와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네가지 경우를 추정한다. 첫째, 모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전제하에 불완전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다. 이는 <그림 7>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후생손실삼각형의 면적 ABC를 추정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시장지배력을 지닌 대기업은 사실상 비용극소화 노력을 등한시하고 내부비효율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다. 이는 편의상 <그림 6>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사회적 비용은 후생손실 삼각형 ABC가 아니라 삼각형 AGH로 정의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라이벤슈타인의 X-비효율론을 수용하여 광고비와 접대비를 또 다른 사회적 낭비요소로 보고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초과이윤은 모두 낭비된다는 포스너의 지대추구가설을 따를 경우 제조업 부문의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상의 추정모형은 <표 15>에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모형을 가지고 실증분석함에 있어서 당면하는 어려움의 하나는 산업의 초과이윤(Π)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측하느냐는 것이다. 여기서는 산업이윤을 직접 추정하는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을 경제적 이윤의 대리변수로 삼는다. 물론 당기순이익은 회계상의 이윤(accounting profit)으로서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자원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과는 차이가 있다. 또 기업별로 감가상각방식이 다르고 이익분식(profit masking)을 하는 관행 때문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차이가 상향편차가 될지, 아니면 하향편차가 될지는 사전에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節稅目的을 위해 이익규모를 축소하는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 또 다각화 기업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타 사업부문으로 이익의 일부를 유출시키는 경우에 회계상 이익은 경제적 이윤의 하향 추정치가 된다. 반면에 기업회계 작성 과정에 자산과 노동력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상장이나 증자요건의 충족을 위해 이익규모를 늘리는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양자간의 관계에 대해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경제적 이윤은 회계상의 이윤보다 적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³¹⁾ 따라서 회계상 이익을 경제적 이윤의 대리변수로 이용한다고 해서 사회적 비용이 낮게 추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하겠다.

31) 경제적 이윤과 회계상의 이윤과의 관계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Ottosen(1991)을 참조.

<표 15> 사회적 비용의 4가지 추정모형

추정모형	특 징	변수설명
① $DWL = \Pi \cdot H \cdot (1 + \lambda) / 2$	전통적 후생손실 삼각형	Π : 세전 순이익 H : 허핀달집중지수 λ : 기대변이 가중치 A : 광고비+접대비 Π' : 세후 순이익
② $DWL = \frac{(\Pi + A) \cdot H \cdot (1 + \lambda)}{2}$	X-비효율, 지대추구비용을 감안한 후생손실 삼각형	
③ $DWL = \frac{(\Pi + A) \cdot H \cdot (1 + \lambda)}{2} + A$	X-비효율론에 입각한 전체 후생손실규모	
④ $DWL = \frac{(\Pi + A) \cdot H \cdot (1 + \lambda)}{2} + A + \Pi'$	지대추구론에 입각한 전체 후생손실규모	

<표 15>를 실증분석에 적용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역시 계측이 까다로운 시장행태변수, 즉 기대변이 가중치(λ : weighted conjectural variation)가 추정모형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약 쿠르노 경쟁을 가정하면 $\lambda=0$ 이 되므로 이 변수에 대한 추정의 문제는 사라진다. 이러한 가정은 이론연구나 실증분석의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변수는 $-1 \leq \lambda \leq (n-1)$ 의 범위에 있으며 산업내 각 기업이 좀더 경쟁적인 관계에 있을수록 λ 는 음(-)의 값을 갖는 반면 담합 등으로 경쟁제한적인 관계에 있을수록 λ 의 값은 증가한다.³²⁾ 그리고 산업조직론에서는 경쟁기업수가 적을수록 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쉽게 노출되는 등 서로간의 상호의존성을 충분히 의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경쟁제한적 공동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λ 는 정(+)의 영역에서 그 크기가 증가함을 뜻한다.

따라서 전 산업에 쿠르노 경쟁($\lambda=0$)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산업별 경쟁행태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고집중 산업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실제보다 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까닭에 산업별 λ 의 값을 추정해야 하지만 이 작업은 별도의 독립적인 연구과제가 될만큼 쉽지가 않다.³³⁾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λ 의 값을 직접 추정하는 대신에 곽만순·박승록(1997)의 기존연구를 활용하고, 쿠르노 경쟁의 가정($\lambda=0$)에 바탕을 둔 결과와 비교평가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일부 산업에서 한계생산비용이 음(-)의 값을 갖는 등 λ 의 값이 고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과소평가할 위험은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³⁴⁾

32) $0 \leq H(1+\lambda) \leq 1$ 과 $(1/n) \leq H \leq 1$ 의 관계를 이용하면 λ 값의 범위를 알 수 있다.

33) λ 의 추정방법 및 이에 관한 기존연구의 서베이는 브레스나한(Bresnahan,1989)을 참조.

34) 곽만순·박승록(1997)이 추정한 λ 의 값은 의복제조업에서 -0.28로 가장 낮고 조립금속제품과 1차금속산업에서 각각 1.95, 1.26으로 가장 높은 반면 이 밖의 산업에서는 $0 < \lambda < 1$ 의 범위에 분포

(2) 추정결과

<기본모형①: 전통적 후생손실 삼각형에 기초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

제조업 부문 각 산업별로 불완전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는 <표 16> ~ <표 19>에 정리되어 있다. 이 중 <표 16>은 전통적인 후생손실 삼각형, 다시 말하면 <표 15>에서 기본모형 ①에 의거하여 추정한 결과를 담고 있다.

기본모형에 의거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특징은 제조업 전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각 산업내 지배적 기업들이 쿠르노 경쟁을 하고 있다는 설정하에 이 규모는 1995년도에 GNP 대비 0.2%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곽만순·박승록(1997)의 기대변이 추정치를 이용하면 사회적 비용은 GNP 대비 0.36%(약 1조2천억원)로 다소 증가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독점을 전제로 강명헌(1988)이 추정한 0.5% ~ 1.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 전체의 광고비 총액(약 3조4천억원)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표 16>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제조업 부문의 사회적 비용이 1992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 비용은 시장행태변수($\frac{1}{2}$)에 대한 가정에 따라 1992년도의 GNP 대비 0.07%~0.12%에서 1995년에는 GNP 대비 0.19%~0.36%로 증가하였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까닭은 두가지 요인 때문이다. 그 중 하나는 제II장 제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동기간 중 허핀달 집중지수가 0.0854에서 0.0949로 증가했기 때문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동기간 중 경기호황에 힘입어 제조업 부문의 이익이 약 4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³⁵⁾

추정결과의 세번째 특징으로는 비록 사회적 비용의 전체규모는 적지만 일부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전자와 반도체산업을 주도하는 4대재벌의 계열사가 집중된 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제조업 전체의 약 63.1%(1995년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포항체

하고 있다. 따라서 쿠르노 경쟁을 가정하는 추정모형 $\frac{1}{2}$ 에 비해 $\frac{1}{2}(1+\frac{1}{2})/2$ 의 값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35) 담배와 재생재료가공처리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1992년 약 3조2천억원에서 1995년에는 약 11조 8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자료를 비롯하여 후생손실액 계산에 이용된 기초통계자료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철이 선도하고 있는 제1차 금속제조업이 14.3%, 정유회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은 6.9%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3개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제조업 전체의 약 70.0%~84.3%에 달하는 등 산업별 편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정모형②: 내부비효율을 감안한 후생손실 삼각형의 추정>

전통적인 후생손실 삼각형, 즉 <그림 7>의 삼각형 ABC는 경쟁부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존연구를 정리하면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기존연구는 독점을 전제로 한 분석인 반면, 본 연구는 좀더 일반적인 불완전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차이는 있지만 집중도가 높은 과점산업에서는 독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X-비효율론이 적용될 여지는 충분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X-비효율론의 일부를 수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다.

<표 16> 전통적 후생손실 삼각형의 추정결과(모형 1)

(단위: 억원, %)

CODE	제조업구분	H/2				H(1+ $\frac{1}{2}$)/2			
		1992	1993	1994	1995	1992	1993	1994	1995
15	음식료품	16 (0.96)	29 (1.28)	30 (0.88)	5 (0.08)	28 (0.94)	51 (1.23)	52 (0.83)	9 (0.08)
17	섬유	31 (1.90)	18 (0.79)	47 (1.38)	6 (0.09)	46 (1.59)	27 (0.65)	70 (1.11)	9 (0.07)
18	의복 및 모피	10 (0.63)	13 (0.56)	21 (0.61)	32 (0.48)	8 (0.26)	9 (0.22)	15 (0.24)	23 (0.19)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	-	10 (0.30)	17 (0.25)	-	-	16 (0.26)	26 (0.21)
20	목재 및 나무제품	-	20 (0.86)	3 (0.08)	-	-	28 (0.68)	4 (0.07)	-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13 (0.79)	2 (0.10)	21 (0.61)	44 (0.66)	17 (0.58)	3 (0.07)	27 (0.44)	57 (0.46)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9 (0.38)	40 (1.17)	12 (0.18)	-	15 (0.35)	67 (1.08)	20 (0.16)
23	코크스,석유정제 품 및 핵연료	143 (8.64)	254 (11.09)	357 (10.48)	605 (9.09)	203 (6.94)	361 (8.67)	508 (8.11)	860 (6.94)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30 (1.82)	35 (1.54)	110 (3.21)	170 (2.55)	42 (1.42)	49 (1.17)	151 (2.42)	234 (1.89)
25	고무 및 플라스틱	28 (1.72)	42 (1.85)	18 (0.53)	30 (0.45)	39 (1.33)	58 (1.38)	25 (0.39)	41 (0.33)
26	비금속광물제품	52 (3.17)	51 (2.23)	56 (1.64)	47 (0.70)	88 (3.02)	86 (2.06)	94 (1.50)	78 (0.63)
27	제1차금속산업	204 (12.34)	460 (20.06)	503 (14.74)	782 (11.74)	461 (15.78)	1,040 (24.97)	1,137 (18.16)	1,767 (14.26)
28	조립금속제품	2 (0.14)	4 (0.16)	10 (0.29)	9 (0.14)	7 (0.24)	11 (0.27)	29 (0.46)	27 (0.22)
29	기타기계 및 장비	36 (2.19)	9 (0.40)	112 (3.29)	270 (4.06)	70 (2.40)	18 (0.43)	217 (3.46)	521 (4.21)
30	사무,계산,회계용 기계	7 (0.43)	25 (1.08)	45 (1.33)	60 (0.91)	14 (0.47)	48 (1.15)	88 (1.40)	116 (0.94)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05 (6.36)	193 (8.41)	39 (1.14)	66 (0.99)	200 (6.83)	367 (8.81)	74 (1.18)	126 (1.01)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39 (14.43)	405 (17.65)	1,529 (44.81)	4,116 (61.81)	453 (15.51)	769 (18.47)	2,904 (46.41)	7,821 (63.11)
33	의료,정밀,광학기 기 및 시계	2 (0.15)	2 (0.08)	4 (0.10)	5 (0.07)	3 (0.09)	2 (0.05)	4 (0.06)	5 (0.04)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	24 (1.05)	227 (6.65)	281 (4.21)	-	41 (0.98)	386 (6.16)	477 (3.85)
35	기타 운송장비	729 (44.12)	683 (29.79)	230 (6.73)	101 (1.51)	1,240 (42.44)	1,161 (27.90)	390 (6.24)	171 (1.38)
36	가구 및 기타	3 (0.19)	14 (0.63)	-	2 (0.04)	4 (0.15)	20 (0.48)	-	3 (0.03)
합계		1,653 (100.0)	2,293 (100.0)	3,411 (100.0)	6,660 (100.0)	2,922 (100.0)	4,162 (100.0)	6,258 (100.0)	12,392 (100.0)
GNP대비 (%)		0.07	0.09	0.11	0.19	0.12	0.16	0.21	0.36

주: 일부 산업에서 (-)표시는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을 뜻함.

<표 17> 내부 비효율을 감안한 후생손실 삼각형의 추정결과(모형 2)

(단위: 억원, %)

CODE	제조업구분	((+A)H/2				((+A)H(1+ λ)/2			
		1992	1993	1994	1995	1992	1993	1994	1995
15	음식료품	64 (2.89)	83 (2.77)	95 (2.13)	75 (0.93)	112 (2.87)	145 (2.70)	165 (2.05)	130 (0.87)
17	섬유	43 (1.93)	29 (0.95)	59 (1.33)	21 (0.26)	64 (1.63)	42 (0.79)	88 (1.09)	32 (0.21)
18	의복 및 모피	18 (0.82)	23 (0.77)	35 (0.79)	54 (0.67)	13 (0.34)	17 (0.31)	25 (0.32)	39 (0.26)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	5 (0.17)	23 (0.52)	33 (0.41)	1 (0.02)	8 (0.15)	37 (0.45)	53 (0.36)
20	목재 및 나무제품	-	24 (0.80)	7 (0.16)	1 (0.01)	-	34 (0.64)	10 (0.13)	2 (0.01)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19 (0.84)	9 (0.31)	29 (0.65)	53 (0.66)	24 (0.63)	12 (0.23)	38 (0.47)	70 (0.47)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22 (0.75)	62 (1.40)	34 (0.42)	-	38 (0.70)	105 (1.30)	58 (0.39)
23	코크스,석유 정제 품 및 핵연료	198 (8.88)	334 (11.15)	470 (10.53)	703 (8.70)	281 (7.21)	475 (8.87)	668 (8.28)	998 (6.71)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98 (4.42)	109 (3.62)	197 (4.42)	262 (3.24)	136 (3.49)	150 (2.80)	272 (3.37)	362 (2.43)
25	고무 및 플라스틱	48 (2.14)	66 (2.20)	37 (0.83)	51 (0.63)	65 (1.67)	90 (1.67)	50 (0.62)	69 (0.46)
26	비금속광물제품	61 (2.74)	61 (2.03)	65 (1.45)	57 (0.71)	103 (2.63)	102 (1.91)	109 (1.35)	96 (0.65)
27	제1차금속산업	233 (10.46)	497 (16.55)	542 (12.14)	827 (10.23)	526 (13.52)	1,122 (20.96)	1,225 (15.19)	1,869 (12.55)
28	조립금속제품	4 (0.19)	5 (0.18)	12 (0.27)	11 (0.14)	12 (0.32)	16 (0.30)	35 (0.43)	33 (0.22)
29	기타기계 및 장비	56 (2.50)	19 (0.63)	138 (3.09)	322 (3.98)	107 (2.76)	37 (0.68)	266 (3.30)	622 (4.17)
30	사무,계산,회계용 기계	14 (0.65)	33 (1.11)	62 (1.38)	96 (1.18)	28 (0.72)	64 (1.20)	119 (1.47)	185 (1.24)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19 (5.36)	212 (7.07)	51 (1.14)	83 (1.03)	227 (5.83)	403 (7.52)	97 (1.20)	159 (1.07)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395 (17.73)	588 (19.60)	1,907 (42.72)	4,757 (58.85)	750 (19.26)	1,117 (20.87)	3,623 (44.93)	9,039 (60.70)
33	의료,정밀,광학기 기 및 시계	7 (0.31)	6 (0.21)	8 (0.19)	10 (0.13)	8 (0.20)	7 (0.13)	9 (0.12)	12 (0.08)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73 (3.27)	125 (4.17)	370 (8.29)	452 (5.59)	124 (3.18)	213 (3.97)	629 (7.80)	768 (5.16)
35	기타 운송장비	760 (34.16)	717 (23.90)	277 (6.21)	156 (1.93)	1,293 (33.20)	1,219 (22.77)	471 (5.84)	265 (1.78)
36	가구 및 기타	16 (0.70)	31 (1.04)	18 (0.39)	24 (0.29)	22 (0.55)	43 (0.81)	24 (0.30)	33 (0.22)
합계		2,226 (100.0)	3,000 (100.0)	4,463 (100.0)	8,084 (100.0)	3,895 (100.0)	5,354 (100.0)	8,063 (100.0)	14,890 (100.0)
GNP대비 (%)		0.09	0.11	0.15	0.23	0.16	0.20	0.27	0.43

주: 일부 산업에서 (-)표시는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을 뜻함.

<표 18> X-비효율론에 입각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결과(모형 3)

(단위: 억원, %)

CODE	제조업구분	$(\Pi+A)H/2+A$				$(\Pi+A)H(1+\lambda)/2+A$			
		1992	1993	1994	1995	1992	1993	1994	1995
15	음식료품	5,516 (20.83)	5,954 (20.77)	7,509 (19.63)	8,233 (16.82)	5,564 (19.76)	6,016 (19.39)	7,579 (18.11)	8,288 (14.87)
17	섬유	1,155 (4.36)	1,061 (3.70)	1,252 (3.27)	1,350 (2.76)	1,176 (4.18)	1,074 (3.46)	1,281 (3.06)	1,361 (2.44)
18	의복 및 모피	1,000 (3.78)	1,105 (3.86)	1,327 (3.47)	1,772 (3.62)	995 (3.53)	1,099 (3.54)	1,317 (3.15)	1,757 (3.15)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715 (2.70)	706 (2.46)	812 (2.12)	1,042 (2.13)	716 (2.54)	709 (2.29)	826 (1.97)	1,062 (1.90)
20	목재 및 나무제품	88 (0.33)	119 (0.41)	83 (0.22)	75 (0.15)	87 (0.31)	129 (0.42)	86 (0.21)	76 (0.14)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414 (1.56)	464 (1.62)	510 (1.33)	651 (1.33)	419 (1.49)	467 (1.51)	519 (1.24)	668 (1.20)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635 (2.40)	826 (2.88)	1,191 (3.12)	1,331 (2.72)	634 (2.25)	842 (2.71)	1,234 (2.95)	1,355 (2.43)
23	코크스, 석유 정제 품 및 핵연료	633 (2.39)	955 (3.33)	1,344 (3.51)	1,492 (3.05)	716 (2.54)	1,096 (3.53)	1,542 (3.68)	1,787 (3.21)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5,821 (21.98)	6,030 (21.03)	6,874 (17.97)	7,765 (15.87)	5,859 (20.81)	6,071 (19.57)	6,949 (16.61)	7,865 (14.11)
25	고무 및 플라스틱	587 (2.22)	623 (2.17)	578 (1.51)	602 (1.23)	604 (2.15)	647 (2.08)	591 (1.41)	620 (1.11)
26	비금속광물제품	612 (2.31)	658 (2.30)	626 (1.64)	721 (1.47)	654 (2.32)	699 (2.25)	670 (1.60)	760 (1.36)
27	제1차금속산업	666 (2.51)	1,019 (3.55)	1,162 (3.04)	1,640 (3.35)	959 (3.41)	1,644 (5.30)	1,845 (4.41)	2,682 (4.81)
28	조립금속제품	394 (1.49)	320 (1.12)	386 (1.01)	388 (0.79)	402 (1.43)	331 (1.07)	409 (0.98)	410 (0.74)
29	기타기계 및 장비	832 (3.14)	654 (2.28)	1,254 (3.28)	1,514 (3.09)	883 (3.14)	672 (2.17)	1,382 (3.30)	1,814 (3.25)
30	사무,계산,회계용 기계	216 (0.82)	265 (0.93)	472 (1.23)	904 (1.85)	230 (0.82)	296 (0.95)	529 (1.26)	993 (1.78)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504 (1.90)	652 (2.27)	525 (1.37)	654 (1.34)	612 (2.17)	843 (2.72)	571 (1.36)	730 (1.31)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3,281 (12.39)	3,699 (12.90)	7,761 (20.29)	13,556 (27.70)	3,636 (12.92)	4,228 (13.63)	9,477 (22.65)	17,838 (32.00)
33	의료,정밀,광학기 기 및 시계	236 (0.89)	222 (0.78)	261 (0.68)	307 (0.63)	237 (0.84)	223 (0.72)	262 (0.63)	309 (0.55)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94 (5.64)	1,614 (5.63)	2,593 (6.78)	3,265 (6.67)	1,545 (5.49)	1,702 (5.49)	2,852 (6.82)	3,581 (6.42)
35	기타 운송장비	1,007 (3.80)	992 (3.46)	606 (1.58)	567 (1.16)	1,540 (5.47)	1,494 (4.82)	800 (1.91)	676 (1.21)
36	가구 및 기타	679 (2.56)	726 (2.53)	1,117 (2.92)	1,105 (2.26)	685 (2.43)	738 (2.38)	1,123 (2.68)	1,114 (2.00)
합계		26,485 (100.0)	28,666 (100.0)	38,242 (100.0)	48,936 (100.0)	28,152 (100.0)	31,020 (100.0)	41,842 (100.0)	55,742 (100.0)
GNP대비 (%)		1.11	1.08	1.26	1.40	1.18	1.17	1.38	1.60

주: 일부 산업에서 (-)표시는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을 뜻함.

<표 19> 지대추구론에 입각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결과(모형 4)

(단위: 억원, %)

CODE	제조업구분	[(I+A)H/2+A+I']				[(I+A)H(1+I)/2+A+I']			
		1992	1993	1994	1995	1992	1993	1994	1995
15	음식료품	6,117 (13.98)	7,694 (14.58)	8,915 (10.07)	7,165 (5.31)	6,165 (13.57)	7,756 (14.07)	8,985 (9.76)	7,220 (5.10)
17	섬유	2,644 (6.04)	1,572 (2.98)	4,212 (4.76)	550 (0.41)	2,665 (5.87)	1,585 (2.88)	4,241 (4.60)	561 (0.40)
18	의복 및 모피	1,801 (4.12)	1,818 (3.45)	2,437 (2.75)	3,380 (2.51)	1,796 (3.95)	1,812 (3.29)	2,427 (2.64)	3,365 (2.38)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	-	1,114 (1.26)	1,625 (1.21)	-	-	1,128 (1.22)	1,645 (1.16)
20	목재 및 나무제품	-	411 (0.78)	38 (0.04)	-	-	421 (0.76)	41 (0.04)	-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947 (2.16)	201 (0.38)	1,105 (1.25)	2,614 (1.94)	952 (2.10)	204 (0.37)	1,114 (1.21)	2,631 (1.86)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774 (1.47)	2,273 (2.57)	1,023 (0.76)	-	790 (1.43)	2,316 (2.51)	1,047 (0.74)
23	코크스, 석유 정제 품 및 핵연료	1,153 (2.63)	2,063 (3.91)	2,967 (3.35)	5,072 (3.76)	1,236 (2.72)	2,204 (4.00)	3,165 (3.44)	5,367 (3.79)
24	화합물 및 화학 제품	5,818 (13.30)	6,039 (11.44)	12,428 (14.04)	18,231 (13.52)	5,856 (12.89)	6,080 (11.03)	12,503 (13.57)	18,331 (12.94)
25	고무 및 플라스틱	884 (2.02)	1,145 (2.17)	508 (0.57)	871 (0.65)	901 (1.98)	1,169 (2.12)	521 (0.57)	889 (0.63)
26	비금속광물제품	2,519 (5.76)	2,149 (4.07)	2,632 (2.97)	2,468 (1.83)	2,561 (5.64)	2,190 (3.97)	2,676 (2.91)	2,507 (1.77)
27	제1차금속산업	2,717 (6.21)	5,889 (11.16)	6,946 (7.85)	12,431 (9.22)	3,010 (6.63)	6,514 (11.82)	7,629 (8.28)	13,473 (9.51)
28	조립금속제품	503 (1.15)	550 (1.04)	1,511 (1.71)	1,365 (1.01)	511 (1.13)	561 (1.02)	1,534 (1.67)	1,387 (0.98)
29	기타기계 및 장비	1,696 (3.88)	658 (1.25)	4,581 (5.18)	5,640 (4.18)	1,747 (3.85)	676 (1.23)	4,709 (5.11)	5,940 (4.19)
30	사무,계산,회계용 기계	291 (0.67)	741 (1.40)	1,264 (1.43)	1,833 (1.36)	305 (0.67)	772 (1.40)	1,321 (1.43)	1,922 (1.36)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857 (6.53)	4,130 (7.83)	1,578 (1.78)	2,118 (1.57)	2,965 (6.53)	4,321 (7.84)	1,624 (1.76)	2,194 (1.55)
32	영상,음향 및 통 신장비	6,466 (14.78)	8,798 (16.67)	26,883 (30.37)	59,907 (44.42)	6,821 (15.02)	9,327 (16.92)	28,599 (31.05)	64,189 (45.31)
33	의료,정밀,광학기 기 및 시계	253 (0.58)	194 (0.37)	311 (0.35)	413 (0.31)	254 (0.56)	195 (0.35)	312 (0.34)	415 (0.29)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719 (1.64)	1,250 (2.37)	4,743 (5.36)	6,344 (4.70)	770 (1.69)	1,338 (2.43)	5,002 (5.43)	6,660 (4.70)
35	기타 운송장비	5,760 (13.16)	5,618 (10.65)	1,442 (1.63)	867 (0.64)	6,293 (13.85)	6,120 (11.10)	1,636 (1.78)	976 (0.69)
36	가구 및 기타	611 (1.40)	1,071 (2.03)	618 (0.70)	934 (0.69)	617 (1.36)	1,083 (1.97)	624 (0.68)	943 (0.67)
합계		43,756 (100.0)	52,766 (100.0)	88,505 (100.0)	134,852 (100.0)	45,424 (100.0)	55,117 (100.0)	92,105 (100.0)	141,658 (100.0)
GNP대비 (%)		1.83	1.99	2.91	3.86	1.90	2.08	3.03	4.06

주: 일부 산업에서 (-)표시는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을 뜻함.

X-비효율론의 요지를 다시 설명하면 기본모형 ①은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내부비효율을 감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사회적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X-비효율로 보아야 하는가는 문제가 따른다. 이에 대해 코올링-뮤엘러의 연구에서는 광고비를 X-비효율의 대리변수로 간주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고비 뿐만 아니라 접대비까지 그러한 성격의 비용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들 항목의 비용 전부를 사회적 낭비로 볼 수 있는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시 논의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절충적인 해결방법으로 광고비와 접대비만큼 관찰되는 평균생산비용이 고평가되고, 그 결과 초과이윤이 저평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광고비와 접대비 그 자체를 사회적 낭비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을 편의상 <그림 6>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비용은 삼각형 ABC가 아니라 그보다 확장된 삼각형 AGH로 측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정하에 산업별 후생손실규모를 추정한 결과가 <표 17>이다.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한 만큼 기본모형 ①의 결과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전체의 후생손실액 합계는 쿠르노 경쟁을 가정하면 GNP 대비 0.23%(약 8천억원), 지배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시장행태를 감안하면 GNP 대비 0.43%(약 1조5천억원)로서 여전히 0.5% 미만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결과는 강명헌이 추정한 후생손실 삼각형의 면적(GNP의 0.5%~1.0%)보다 낮다. 여기서 추정된 사회적 비용의 규모는 셔러(Scherer, 1970)의 비유를 원용하여 표현하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약 3만3천원에 해당하는 비교적 적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1992년 이후 후생손실비용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거나 또 대부분의 비용이 일부 산업에 편중되어 발생한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유사하다. 즉 <표 17>에서 1992년~1995년 기간 중 사회적 비용은 지배적 기업의 행태에 따라 GNP 대비 0.09%~0.16%에서 0.23%~0.43%로 증가했고, 또 전체 제조업에서 3개산업(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 제1차 금속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이 약 80%를 점하고 있다. 기본모형 ①과 비교할 때, 광고비와 접대비가 적지않은 자동차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후생손실액이 큰 산업은 대부분 수출주력업종이라는 점에도 변함이 없다.

<X-비효율 모형③: X-비효율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추정>

수정모형 ②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광고비와 접대비 지출을 모두 사회적 낭비로

보자. 이처럼 광고비와 접대비가 전혀 사회적 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X-비효율론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산업별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는 <표 18>에 정리되어 있다.

<표 18>에서 보는 것처럼 1995년도의 경우 제조업 부문의 광고비와 접대비 합계는 GNP의 1.17%(약 4조8백억원)이므로 제조업 전체로는 이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즉 제조업 전체의 사회적 비용은 쿠르노 경쟁일 경우 GNP 대비 1.4%(약 4조9천억원), 경쟁제한적 시장행태를 감안할 경우에는 GNP 대비 1.6%(약 5조6천억원)로 증가한다.

한편 산업별로 보면 광고비와 접대비는 산업별로 적지않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산업별 사회적 비용의 크기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표 18>에서 사회적 비용이 전체규모의 5%이상을 점하는 산업은 영상·음향·통신 장비제조업(32%), 음식료품제조업(14.9%),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14.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6.4%) 등 4개산업이다. 앞의 두 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할 때 소재산업인 제1차 금속산업과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제조업은 제외된 반면, 소비재 산업인 음식료품제조업과 화학제품제조업이 위 4개산업에 포함되어 있다. 소재나 중간재는 주로 기업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적고 따라서 광고비 지출이 낮은 경향이 있다. 반면에 소비재 산업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광고)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결과 사회적 비용의 산업별 편중도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제조업 전부문 중 위의 4개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63.4%~67.2%로서 여전히 높다.

X-비효율론에 따라 광고비와 접대비를 모두 사회적 순손실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비용이 GNP 대비 1.4%~1.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 결과는 역시 X-비효율을 감안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결과도 불완전 경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평가하고 있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광고비와 접대비가 사회적으로 전혀 순기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가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광고비나 접대비가 사회후생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광고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광고비는 결국 제품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제품의 특성과 가격의 분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벤함(Benham, 1972)이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후자의 효과가 강할 경

우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제품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광고를 넘는 부분만큼을 X-비효율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광고비 전체를 사회적 낭비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X-비효율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접대비는 뇌물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거래비용이라는 점에서 접대비 전부를 사회적 낭비로 보는 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특히 접대비나 뇌물은 대부분 시장경쟁에서 생취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수단을 이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전체로 부정부패를 확산시키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X-비효율론이 시사하는 의미 이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접대비가 없다면 지금보다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 까닭은 접대비와 뇌물이 성행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들 항목의 비용지출이 높은 이유는 두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정부가 공식적,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시장경제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원리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 分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경쟁의 게임룰 자체가 영성하고 정부의 재량적 시장개입이 빈번한 사회, 시장경쟁을 우회하여 보상을 얻으려는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 그리고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도 상응하는 제재가 따르지 않는 사회일수록 뇌물과 접대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기업외적인 환경이 온존된 상태에서 접대와 뇌물을 차단한다고 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발상일 수 있다. 사회환경에 따라서는 접대나 뇌물의 최소한 일부분은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다. 두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정부가 어떤 계기에서든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규제나 정책을 입안, 시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관료나 정치가들에게 제공되는 접대나 뇌물은 전체를 사회적 낭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안될 일을 청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될 일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대나 뇌물은 부분적으로 사회적 순기능이 있는 셈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사적 계약을 체결하고도 정해진 품질의 제품을 정해진 시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하고 계약 불이행에 대해 법적인 구제장치가 미흡한 사회에서의 접대는 계약이행에 수반되는 감시비용을 절감하는 순기능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요약하면, 접대나 뇌물은 거래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X-비효율에 속하

고, 더 나아가 비효율적인 경제주체가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나쁜 영향을 사회에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환경에 따라서는 접대나 뇌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거래비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 비용 전부를 X-비효율로 보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광고비와 접대비를 X-비효율비용으로 보고 사회적 비용이 GNP 대비 1.4%~1.6%에 이른다고 추정된 결과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비용을 고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대추구모형④: 지대추구론에 따른 후생손실비용의 추정>

지대추구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포스너(Posner)의 두가지 가설에 입각하여 광고비나 접대비 뿐만 아니라 세후이윤까지도 모두 사회적 비용으로 본다. 이러한 지대추구론을 수용하여 코올링-뮤엘러(Cowling & Mueller)는 미국에서 독점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GDP의 약 10%에 이르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지대추구론을 반영하여 불완전경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정된 결과는 <표 19>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대추구론을 따르는 경우 제조업 전체의 사회적 비용은 1995년도의 경우 GNP 대비 약 3.9%~4.1%이며 금액으로는 약 13조 5천억원~14조 2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결코 적지않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코올링-뮤엘러가 추정된 결과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표 19>의 추정결과는 코올링-뮤엘러의 연구와 비교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까닭은 모든 이윤을 사회적 낭비로 보는 지대추구론을 불완전 경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추정에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좀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대추구론을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과점적 경쟁구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대추구론은 주로 정부에 의해 독점면허가 주어지고 수많은 기업이 이 독점권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모든 이윤이 사회적 낭비라는 가설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둘째, 모든 이윤을 사회적 낭비로 보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기업이윤은 정부가 개입하여 보호하지 않는 한 성공적인 기업활동에서 오는 단기적인 보상이다. 기업이 공정혁신으로 제조원가를 절감하여 경쟁업체보다 높은 이윤을 얻는다면 이

초과이윤은 성공적인 혁신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초과이윤도 시간이 흐르면서 경쟁업체들의 도전에 따라 소멸하게 된다. 또 어느 기업이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다면 이 경우에는 지식의 영역을 확장시킨 새로운 발견이라는 입장에서 독점이윤과 소비자 잉여 모두를 사회적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초과이윤은 정부의 개입이 없는 한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며, 또 이 단기적인 초과이윤은 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영역으로 흐르도록 하는 중요한 動因이다. 이 초과이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살아 움직이고 기업가적 혁신, 기업가적 발견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윤 전체를 사회적 낭비로 보고 정부개입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인 기업가의 이윤추구 동기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대추구론을 가감없이 수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할 <표 19>는 코올링-뮈엘러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기서의 추정값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비용의 상한(upper limit)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3) 추정결과와 시사점

사회적 비용의 추정결과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표 20>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고, 추계결과 또한 추정모형별로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주의를

<표 20> 사회적 비용의 추정결과 요약

추정모형		추정결과(GNP 대비 %)					
		1992	1993	1994	1995	92~95평균	
① 기본모형	$\frac{1}{2} \Pi H(1+\lambda)$	$\lambda=0$	0.07	0.09	0.11	0.19	0.12
		$\lambda>0$	0.12	0.16	0.21	0.36	0.23
② 수정모형	$\frac{1}{2}(\Pi+A)H(1+\lambda)$	$\lambda=0$	0.09	0.11	0.15	0.23	0.15
		$\lambda>0$	0.16	0.20	0.27	0.43	0.28
③ X-비효율모형	$\frac{1}{2}(\Pi+A)H(1+\lambda)+A$	$\lambda=0$	1.11	1.08	1.26	1.40	1.23
		$\lambda>0$	1.18	1.17	1.38	1.60	1.36
④ 지대추구모형	$\frac{1}{2}(\Pi+A)H(1+\lambda)+A+\Pi$	$\lambda=0$	1.83	1.99	2.91	3.86	2.76
		$\lambda>0$	1.90	2.08	3.03	4.06	2.89

요한다. 예를 들면, 여러 추계치 중에 어느 것이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대표하는지, 그리고 그 추계치가 갖는 의미나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좀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먼저 추정결과에 대한 해석시 다음 세가지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떤 모형으로 추정하는가와 관계없이 사회적 비용의 연도별 추정결과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를 추세적 변동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분석기간이 1992년~1995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업의 초과이윤으로서 회계상 이윤인 당기순이익을 이용하고 있는 본 연구의 한계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경제적 이윤과 달리 당기순이익은 경기변동과 같은 단기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분석기간은 한국경제가 경기정점을 향하고 호황국면에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의 추계액도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단기변동요인을 상쇄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는 연도별 추계액을 연평균하는 것이다. 이 경우 <표 20>의 우측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조업 부문 21개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추정모형에 따라 연평균 GNP의 0.12%~2.89%에 이른다.

둘째, 네가지 추정모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현실적합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각 모형은 저마다 이론적인 배경과 장단점이 있고 어느 모형이 더 나은가에 대한 논쟁은 통계적 검증을 통해 규명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연구에서도 여러 형태의 추정모형이 공존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모형①은 사회적 비용을 너무 좁게 보기 때문에 下向偏差(downward bias)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반면에 지대추구모형④는 코올링-뮤엘러(Cowling & Mueller, 1978)의 연구에 대한 리틀차일드(Littlechild, 1981)의 비판 등에서 보듯이 초과이윤을 사회적 낭비로 보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가정으로 인해 上向偏差(upward bias)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추정결과를 재해석하면, 한국 제조업 부문 21개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대체로 GNP의 0.15%(수정모형②)~1.36%(X-비효율모형③) 사이에 분포하고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GNP의 2.89%(지대추구모형④)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여기에서 추계된 사회적 비용은 국내제품 뿐만 아니라 수입품의 시장지배력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연간 GNP의 0.15%~1.36%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책임을 전적으로 국내기업

의 시장지배력 행사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내수와 수출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의 총생산과 전체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보면 국내기업이 수출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익은 해외 소비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니 만큼 우리나라 사회적 비용을 추계할 때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 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에서 수출물량이 확대되면 단위생산비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도 이득을 보게 되지만 이러한 점도 이 연구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³⁶⁾ 이들을 감안할 경우 국내기업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기인한 사회적 비용은 여기서의 추정액보다 낮을 것이다.³⁷⁾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에서의 추정결과가 국내시장의 불완전 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출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수입이 있기 마련이다. 외국기업이나 수입업체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획득한 초과이익은 국내의 사회적 비용 계상에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핵심 원부자재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고 이들 수입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쉬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외국제품의 시장지배력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적지않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열린 경제 아래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 경제의 개방성을 고려하지 않는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사회적 비용의 추정치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어떻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후생손실규모를 고평가, 또는 저평가하고 있는지 단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비용이 연간 GNP의 0.15%~1.36%, 또 많을 경우 GNP의 2.89%라는 여기서의 추정결과는 정책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갖는가? 이 비율은 1995년도 가격으로 환산하면 각각 5천200억원~4조7천5백억원, 그리고 10조900억원에 이른다. 이 비용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조업 부문의 경쟁부족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비용이다. 따라서 이 비용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이득이기 때문에 정부는 경쟁촉진정책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시장개입은 적지않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

36) 이와 대조적인 사례는 덤핑수출이다. 덤핑수출에 따른 적자를 국내소비자에 대한 높은 가격부과로 보전하는 경우 수출은 국내소비자의 이익을 더욱 침해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37) 사회적 비용이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고 이들 산업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산업이라는 사실에서 기업이윤의 원천을 수출, 내수로 이원화하여 국내기업이 내수시장에서 행사한 시장지배력에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별도로 추계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후속연구과제일 것이다.

고 자칫 기대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得보다는 失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인 기업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병행해야 하지만 시장왜곡효과를 감안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특히 제Ⅱ장에서 본 것처럼 진입규제나 가격규제와 같이 정부에 의해 부과된 경쟁제한적 요소가 많고 또 이들 규제의 완화는 시장왜곡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규제완화와는 별도로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경우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두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사회적 비용이 일부 산업에서 편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기업의 경쟁제한적인 행태에 초점을 맞추는 경쟁정책으로는 사회적 비용의 효과적인 해소가 어렵다는 점이다. 수입품의 시장지배력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도 관심을 기울여 외국기업의 경쟁제한적인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시장집중과 사회적비용의 관계

산업별 집중도와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집중도를 시장지배력의 신뢰할 만한 척도로 보는 구조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집중도와 사회적 비용 간에는 거의 1:1에 가까운 역(逆) 상관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경쟁정책에서 독과점도의 판단이나 자원배분의 효율성 판단에 집중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집중도에 대한 이러한 신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중도를 적절한 경쟁척도로 보는 견해에 대한 비판도 적지않다. 예컨대 경쟁의 강도는 실제적 경쟁(actual competition)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받는다라는 경합시장이론에 의하면 집중도와 사회적 비용은 그리 높은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 두 지표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 이처럼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두 지표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는 실증분석으로 규명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그동안 시장구조와 시장성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집중도와 사

회적 비용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분야의 기존연구는 대부분 집중도와 이윤율의 관계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도와 사회적 비용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 분석은 소홀했다.³⁸⁾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먼저 21개산업에서 산업별로 추정된 사회적 비용을 해당산업의 부가가치로 나누어 표준화(normalization)했다.³⁹⁾ 이처럼 표준화한 비율을 이하에서는 시장비효율도로 정의한다. 연도별·산업별 시장비효율도는 부록에 별첨되어 있다. 연도별로 분석결과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1995년도에 국한하여 본다. 1995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집중도와 시장비효율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표 21>을 보면 집중도와 시장비효율도 사이에는 세가지 특징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학계의 연구나 경쟁정책에서 활용빈도가 높은 허핀달 집중지수와 상위 3대기업집중도(CR₃)는 후생손실 삼각형에 기초한 시장비효율도(모형 1과 모형 2)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특히 쿠르노 경쟁을 가정하는가, 추정된 시장행태변수를 이용하는가와 관계없이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상관계수의 크기는 시장비효율도와 허핀달 지수는 53.3%~60.4%, CR₃는 54.1%~59.2%에 이르고 있으며 대체로 CR₃보다는 허핀달 지수와 더 높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⁰⁾

38) 이에 대한 예외는 강명헌(1991)의 연구이다. 그러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전 산업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한 추정된 산업별 사회적 비용이 저마다 다른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감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9) 표준화 과정없이 사회적 비용과 시장집중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면 <표 15>에 제시된 계수보다 약간 낮아진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40) CR₃, CR₄, CR₈, CR₁₂ 중에서 CR₃와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서는 CR₃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표 21> 시장집중도와 시장비효율도의 상관관계(1995년)

구 분	쿠르노 경쟁시($\lambda=0$)				추정 λ 이용시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허핀달집중 지수(HHI)	0.5830*** (0.0055)	0.6035*** (0.0038)	-0.1476 (0.5231)	0.1999 (0.3850)	0.5327** (0.0129)	0.5486*** (0.0100)	-0.0451 (0.8461)	0.2209 (0.3359)
상위3대기업 집중도(CR ₃)	0.5668*** (0.0074)	0.5919*** (0.0047)	-0.1579 (0.4942)	0.1995 (0.3858)	0.5184** (0.0161)	0.5406** (0.0114)	-0.0554 (0.8115)	0.2203 (0.3373)
5대재별 집중도	0.6734*** (0.0011)	0.7027*** (0.0006)	0.0979 (0.6813)	0.4415* (0.0513)	0.6298*** (0.0029)	0.6552*** (0.0017)	0.2031 (0.3905)	0.4552** (0.0437)
10대재별 집중도	0.6569*** (0.0017)	0.6889*** (0.0008)	0.1311 (0.5818)	0.4255* (0.0614)	0.5908*** (0.0061)	0.6167*** (0.0038)	0.2212 (0.3487)	0.4357* (0.0548)
20대재별 집중도	0.6213*** (0.0035)	0.6487*** (0.0020)	0.0703 (0.7683)	0.3687 (0.1097)	0.5616*** (0.0100)	0.5826*** (0.0070)	0.1598 (0.5009)	0.3805* (0.0979)
30대재별 집중도	0.6306*** (0.0029)	0.6547*** (0.0017)	0.0907 (0.7038)	0.4044* (0.0770)	0.5714*** (0.0085)	0.5890*** (0.0063)	0.1799 (0.4478)	0.4145* (0.0692)

주: 1. 괄호안의 숫자는 p-값을 표시

2. ***는 1%, **는 5%, *는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나타냄.

둘째, 허핀달 지수와 CR₃는 X-비효율론에 근거한 시장비효율도(모형 3)나 지대추구론에 근거한 시장비효율도(모형 4)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광고비와 접대비를 사회적 비용으로 포함하는 모형 3과는 일반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광고비와 접대비가 시장집중도와 비교적 무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광고비나 접대비의 크기는 거래하는 상품이 최종소비재인가 아니면 중간재인가,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산업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을 반영하는 시장비효율도와 시장집중도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셋째, 산업별 재별집중도는 CR₃나 허핀달 지수에 비해 시장비효율도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 5대재별 집중도는 후생손실 삼각형에 근거한 시장비효율도와 63.0%~70.3%의 상관계수를 보임으로써 CR₃나 허핀달 지수의 동 계수 53.3%~60.4%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지대추구론에 기초한 시장비효율도(모형4)와도 약 45%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X-비효율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시장비효율도와는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없다. 그러나 이도 허핀달 지수와 CR₃가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 제조업 부문에서 집중도가 증가하면 후생 삼각형으로 정의되는 사회적 비용도 대체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의 관계는 구조론자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즉 구조론자는 구조-성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강한 확신을 견지하고 이에 따라 각국의 경쟁정책에서도 CR_k 나 허핀달 지수가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이들 집중지표와 시장비효율도는 53.3%~60.4%의 비교적 낮은 상관계수를 보인다. 이 정도의 상관계수를 가지고는 집중도를 절대적인 시장효율지표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들 집중도와 X-비효율론에 근거한 사회적 비용은 거의 무관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심을 더 강화시킨다.

한편 산업별 재벌집중도가 CR_k 나 허핀달 지수에 비해 시장비효율도와 더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론적인 면에서는 시장비효율도는 허핀달 지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실증분석에서는 5대재벌 집중도와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재벌이라는 한국 기업조직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 이 결과는 경쟁효율과 관련하여 5대재벌의 시장지배력이 적지않은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개별 기업의 규모에 바탕을 두고 측정되는 CR_k 나 허핀달 지수보다는 재벌집중도의 증가가 시장비효율도의 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Ⅳ장 시장집중과 동태적 경쟁

Kirzner(1991): 현실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의 속성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 주류경제학의 시각과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전자는 시장경제를 “닫힌 체제”로 보는 반면에 후자는 “열린 체제”로 본다는 것이다 (104쪽).

Perhaps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disagreement concerning the nature and role of real world competition is that the Austrian view of competition portrays the market economy as “open-ended” (in a sense very shortly to be explained), while the mainstream view sees it as “closed-ended.”

1. 구조-성과 논쟁

지금까지는 주류경제학의 분석체계 안에서 시장집중도와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또 이 둘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살펴보았다. 구조-성과관계를 중시하는 주류경제학에서는 소수기업에의 매출집중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거의 1:1 대응관계에 있다고 믿는다. 이로부터 시장집중도를 경쟁(비)효율의 대리변수로 활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왔다. 제Ⅲ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믿음과 관행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집중도와 시장비효율도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계수는 일반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주류경제학의 분석체계 안에서도 시장집중도에만 의거하여 시장지배력의 크기를 평결하고 반독점법을 집행(antitrust enforcement)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이 아니라도) 집중도가 경쟁척도로서 신뢰할 만한 지표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다. 집중도와 산업이윤 사이에는 약하지만 정(+)의 관계에 있다는 실증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하바드 학파와 시카고 학파가 대립하고 있는 논쟁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자는

집중도가 높은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쉽게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고집중-고이윤의 비례적 관계가 관찰된다고 한다. 독점력 가설(monopoly power hypothesis)로도 불리우는 이 주장은 고집중-고이윤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는 다름 아닌 시장지배력으로 본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시카고 학파에서는 효율성 가설(efficiency hypothesis)로 논박한다. 효율성 가설은 고집중-고이윤의 관계를 매개하는 숨은 변수는 시장지배력이 아니라 대기업의 효율성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윤은 가격과 단위생산비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대기업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누리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단위 생산비용이 낮다. 따라서 집중도의 정의상 대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 산업에서 높은 이윤이 관찰되는 것은 대기업의 생산효율성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집중-고이윤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독점력 가설에서 주장하듯이 시장지배력의 행사를 통한 가격인상효과 때문일 수도 있고, 반대로 효율성 가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기업의 상대적 효율성 때문일 수 있다. 각각의 가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원인의 한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 가설이 더 경제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는 실증분석없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집중도가 결코 신뢰할 만한 경쟁척도일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 가설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한편, 시장집중도는 실제적 경쟁(actual competition)만을 반영할 뿐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집중도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모만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시장외곽에서 진입을 노리는 기업이 존재하는가의 유무, 즉 잠재적 경쟁은 전혀 감안하지 못한다. 잠재적 경쟁이 시장지배력의 행사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않다. 잠재적 경쟁은 정부의 진입규제, 초기설비투자의 규모, 매몰비용(sunk cost)이라고도 불리우는 설비투자의 잔존가치 등에 의해 결정된다. 진입규제가 없고 매몰비용이 매우 낮아 새로운 기업의 진·출입이 자유로운 산업에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높은 가격을 부과하여 과도한 초과이윤을 얻으면 곧바로 새로운 기업들이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입하여 시장을 탈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잠재적 경쟁이 높은 산업에서는 관찰되는 시장구조가 독점인가, 과점인가와 관계없이 마치 경쟁적인 시장처럼 움직이고 주류경제학이 강조하는 구조-성과관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⁴¹⁾

41) Baumol, Panzar, Willig(1982)의 경합시장이론(contestable market theory)은 잠재적 경쟁을

그러나 구조-성과, 또는 집중도-경쟁비효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접근방법은 위의 비판보다도 더 근본적인 데에 있다. 주류경제학의 구조-성과분석은 시장경쟁을 과정(process)이 아니라 상태(state of affairs)로 보고 있다. 앞에 인용된 커즈너(Kirzner, 1991)도 지적하고 있듯이 시장경제를 ‘열린 체제’가 아니라 ‘닫힌 체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집중도가 잠재적 경쟁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쟁을 상태보다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왜 더 적절한가. 경쟁을 과정으로 본다면 경쟁의 강도는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또 이렇게 측정된 경쟁지표는 기존의 구조지표(집중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구조지표에 의거하여 경쟁정책을 운용하는 정책관행의 한계는 무엇인가. 여기 제Ⅳ장에서는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2. 시장과정으로서의 경쟁

주류경제학에서는 경쟁을 일종의 정태적 상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하이에크, 커즈너를 비롯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경쟁을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 경쟁의 본질 뿐만 아니라 경쟁의 사회적 기능에 이르기 까지 오스트리아 학파는 주류경제학과 경쟁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시장경쟁을 분석할 때 완전경쟁모형을 논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물론 완전경쟁이 현실경제와 동떨어진 일종의 가상적 상태임을 부정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 그래도 많은 학자들은 완전경쟁모형이 시장의 가격신호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어가는 시장원리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믿는 한편, 은연중에 완전경쟁모형을 시장경제체제가 지향해야 할 유토피아Utopia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경제현실에서 이 유토피아적 모형의 완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 하며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것은 이런 경향의 한 단면이다. 제Ⅲ장의 논의도 현실경제가 완전경쟁하에 도달가능한 자원배분상태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기준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도와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류경제학의 범주에 속한다. 시장집중도 역시 측정이 어려운 자원배분의 비효율도의 대리변수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장과정론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표현할 경

반영할 때 기존의 구조-성과 논의가 재평가되어야 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 완전경쟁모형은 시장원리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모형에 기준을 두고 현실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한다. 완전경쟁모형을 논리적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주류경제학과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장과정론의 차이점을 몇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과정론은 시장경제를 ‘폐쇄체제’로 보는 완전경쟁모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서부터 출발한다.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경제성장, 자원배분에 필요한 모든 여건, 또는 데이타(선호체계, 부존자원, 기술적 가능성 등)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이 여건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의 개선, 장기적으로는 성장가능성이 결정된다. 시장과정은 이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있지만 데이타에 의해 이미 경계가 확정된 성장가능성, 또는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을 초월하는 것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다. 여기에 데이타는 이미 사전에 알려진 지식이거나 또는 최소한 그 지식의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알려져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새로운 이윤기회가 존재할 수 없도록 모형의 폐쇄성을 가중시키고 있다.⁴²⁾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는 추상적인 이론모형이 상정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sheer negligence)의 영역이 폭넓게 존재하고 또 이 무지는 극복가능(vincible)하다고 본다. 주류경제학에서도 정보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극복가능성은 감안되지 않고 있다. 커즈너에 따르면 바로 이 극복가능한 무지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제를 개방체제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또 이 개방성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원동력임을 강조한다. 즉, 무지의 영역에는 새로운 이윤획득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윤추구동기로 무장한 기업가들이 이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시장기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게 되고 경쟁은 이러한 기업가적 발견을 촉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에는 신상품의 발견,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새로운 자원의 발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새로운 욕망/욕구의 발견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기업가적 발견으로 인해 주류경제학이 성장한계라고 보는 생산가능곡선을 초월하는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주류경제학은 경쟁의 기능이 배분적 효율성의 증진에 있다고 보는

42) 이 가정과 더불어 각 경제주체는 다른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충분통계량인 시장의 가격신호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라는 점에서 완전경쟁모형 내에 사실상의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또 이 때문에 Demsetz(1993)는 완전경쟁모형은 차라리 완전분권화모형(model of perfect decentralization)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평하고 있다(160쪽).

반면, 시장과정론은 지식의 창출을 강조한다. 즉 완전경쟁모형하에서는 서로 대체적 용도를 가진 희소한 자원을 그 사회의 최적 용도에 배분토록 하는 것이 경쟁의 사회적 기능으로 설명되고 있다. 반면에 경제시스템을 개방체제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는 앞의 논의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듯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장과정론에 따르면 경쟁은 지식과 무지의 경계선을 재위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즉, 이미 알려진 지식과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경쟁의 기능이라고 보는 주류경제학의 접근방법과 달리 시장과정론은 기업가적 발견을 통해 지금까지 생각도 못하던 지식을 창출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경쟁의 본질이라고 본다. 개방체제에 산재해 있는 불확실성(또는 무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기업가적 발견과 혁신성향을 감안하여 시장경쟁의 기능을 재평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오스트리아 학파는 완전경쟁을 시장경제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이상은 물론 현실경제의 유용한 설명수단이라는 점도 부인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완전경쟁모형에 매료되는 까닭은 그러한 경쟁형태를 현실경제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다양한 경쟁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템세츠(1969)가 지적하고 있듯이 완전경쟁하에 도달가능한 자원배분상태를 기준점으로 삼아 그 기준점에 미달할 경우 시장실패라 하고 정부개입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템세츠는 현재의 불완전한 제도를 이상적 규범에 맞도록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도 부족할 뿐더러 엄청난 전환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현재의 제도가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커즈너는 한발 더 나아가 템세츠의 주장은 아직도 완전경쟁모형을 유토피아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불완전 경쟁이야말로 시장이 본연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촉진하는 動因임을 강조하고 있다. 동태적 시장경쟁은 완전경쟁균형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역설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설명하면 정보의 불완전성, 상품의 불가분성, 완전경쟁보다는 과점적 경쟁구조에 가까운 기업규모의 분포 등이 기업가적 발견행위를 고취시키는 주요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 이동지표의 측정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장과정론으로 보면 구조지표는 시장경쟁의 올바른 척도가 될 수 없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구조지표는 현실경제가 완전경쟁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대리변수인 반면, 시장과정론은 규범적 이상으로나 현실적 유용성으로나 완전경쟁모형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볼드윈-고렉키(Baldwin & Gorecki, 1994)에 따르면 이동지표(mobility statistics)는 시장과정론을 반영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⁴³⁾ 시장에서는 행운, 우연, 합목적인 의사결정 등 그 원인이 무엇든지간에 끊임없이 진입과 퇴출이 일어나고 또 성장과 쇠퇴가 반복하여 발생하게 되며 이동지표는 이 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집중도는 일정 시점에서 시장내 기업의 규모를 바탕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여러 시점에 걸쳐 일어나는 개별기업의 흥망성쇠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구조지표를 경쟁의 척도로 보기에는 불완전하다는 점은 일찍부터 지적된 바 있다.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연구나 경쟁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구조지표가 더 광범위하게 쓰이고 이동지표는 합당한 주목을 받지 못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한 산업내 기업순위는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초기의 연구결과 때문이다. 여기에 기초하여 셔러(Scherer, 1980)는 이동지표가 구조지표에 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⁴⁵⁾

둘째, 집중도는 비교적 측정이 쉬운 반면 이동지표는 시장내 모든 기업의 역사를 추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중도가 높은 산업은 진입장벽과 함께 내부이동장벽이 높기 때문에 집중도와 이동지표는 상호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집중도와 이동지표는 서로 대체적 관계에 있는 만큼 측정과 해석이 용이한 집중도만을 이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이동지표의 연구와 정책활용을 지연시킨 원인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중도에 대한 기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볼드윈-고렉키(Baldwin & Gorecki, 1994)는 캐나다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집중도와 이동지표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즉, 집중도만을 보면 독과점도가 높은 산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이동지표로는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 도이취-실버(Deutsch & Silber, 1995)는 미국 500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을 구조지표로 측정하면 1980년대에 경제력집중이 심화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의 진입과 퇴출, 내부이동성을 반영하는 이동지표로는 미국 거대기업들 사이의 경쟁강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43) Baldwin & Gorecki(1994), 93쪽.

44) 이에 대한 간단한 서베이는 Deutsch & Silber(1995)나 필자의 줄고(1997), 110-112쪽 참조.

45) Scherer(1980) 74쪽 참조.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볼드윈-고렉키(1995)의 방법을 원용하여 1991년~1995년 기간 중 21개 한국 제조업부문을 대상으로 이동지표를 측정한다. 특히 시장경쟁과정은 기업의 순위변동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종류의 이동지표를 측정한다. 즉 하나는 경쟁의 패자로부터 승자에게로 시장점유율이 얼마나 이전되었는가를 보는 지표이며, 다른 하나는 이 점유율이 이전되는 패턴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전자는 다시 진입과 퇴출에 의한 시장점유율 변동과 잔류기업 사이의 점유율 변동으로 측정될 수 있다. 후자는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희생시키면서 성장하는지, 각 기업이 산업평균규모로 수렴 또는 확산하는지, 그리고 점유율 이전과정에 일정한 규칙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들 이동지표를 추정하기 위해서 각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① 진입기업 : 한국기업총람자료를 기준으로 1991년에는 A산업에 없었으나 1995년에는 A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을 진입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들 진입기업이 1995년 해당산업의 총매출액에서 점하는 비중을 진입율(EN)로 정의한다. 이 중 단순히 기업의 소유권이나 회사이름만 바뀐 경우, 그리고 1991년에 A산업에 속했지만 주력상품의 비중이 바뀌므로 해서 1995년에는 B산업에 속한 경우는 진입율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B산업의 진입기업에서 제외하였다.

② 퇴출기업 : 1991년에 A산업에 속해 있었으나 1995년에 A산업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기업은 퇴출기업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들 퇴출기업이 해당산업의 총매출액에서 점하는 비중을 퇴출율(EX)로 정의한다. 또 여기에서도 퇴출율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①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유권이 단순하게 이전된 경우, 회사이름이 바뀐 경우는 퇴출기업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1991년에는 A산업에 속해 있었으나 1995년 자료에는 B산업에 속해 있을 경우에도 주력상품의 비중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아 A산업의 퇴출기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③ 잔류기업 : 1991년과 1995년 모두 같은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은 잔류기업으로 구분한다. 잔류기업은 다시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성장기업과 점유율이 감소하는 쇠퇴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변동분의 절대치의 합계가 해당산업의 매출액 총계에서 점하는 비중은 잔류기업의 점유율 불안정도(TURNC)로 정의한다.

이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 시장에서의 점유율 총변동량(TURN)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text{TURN} = \text{TURNE} + \text{TURNC};$$

$$\text{TURNE} = (\text{EN} + \text{EX})/2$$

위 지표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수치가 클수록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유율 총변동율(TURN)은 그 원인이 진입/퇴출에 의한 것이든지 또는 잔류기업간 순위변동에 의한 것이든지 시장점유율의 상대적 불안정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기업총람 자료를 이용하여 위의 이동지표를 추정한 결과는 <표 22>에 요약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TURN의 값은 평균 11.3%에 이르고 있고 이중 진입/퇴출(TURNE)에 의한 변동이 6.0%로서 잔류기업에 의한 변동(TURNC)의 5.3%보다 더 높다. 또 TURN은 산업별로 최소 2.7%에서 최대 28.0%에 이르기까지 산업별로 적지않은 편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집중도가 과연 시장경쟁의 강도를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인가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집중도가 시장지배력의 적절한 대리변수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시장을 구성하는 기업에 변화가 없고 시장내 기업순위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데 비해 <표 22>의 결과는 그 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지표의 또 다른 형태로서 잔류기업 사이에 시장점유율이 이전되는 패턴을 보기 위해 다음 두가지 지표를 추정한다.

CORSH = 한 기업의 1991년 시장점유율과 1995년 점유율간의 상관계수

REGSH = 1995년 시장점유율을 1991년 점유율로 OLS 추정된 계수값

위에서 CORSH는 상관계수이므로 0과 1사이의 값을 갖고 계수의 값이 클수록 잔류기업의 두 시점간 시장내 상대적 위치가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REGSH는 잔류기업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축소, 불변 또는 확대되었는가를 나타낸다. 즉 REGSH의 값이 1에 가까우면 잔류기업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 이 값이 1보다 크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더 빨리 증가함을 의미하고, 1보다 적으면 대기업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산업 전체적으로는 평균규모로 수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2> 산업별 이동지표의 측정

CODE	제조업	구조지표 (1991년)		이동지표							
		HHI	CR4	점유율 불안정지수(%)					점유율 변화패턴지수		
				EN	EX	TURNE	TURNC	TURN	CORSH	REGSH	STAB
15	음식료품	0.0183	0.1738	12.68	9.70	11.19	7.78	9.48	0.9859	0.9504	0.0496
17	섬유	0.0220	0.2060	11.29	9.95	10.62	10.34	10.48	0.9756	1.0086	0.0086
18	의복 및 모피	0.0145	0.1393	41.88	32.79	37.34	12.58	24.96	0.7911	0.9622	0.0378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0.0218	0.1944	11.77	42.50	27.14	15.40	21.27	0.9478	1.3557	0.3557
20	목재 및 나무제품	0.0667	0.4251	-	-	-	14.84	7.42	0.9371	1.4374	0.4374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0264	0.2324	25.31	23.23	24.27	9.05	16.66	0.9436	0.9460	0.0540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0.0360	0.2908	17.02	15.20	16.11	12.11	14.11	0.9172	1.0016	0.0016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0.2633	0.9036	0.70	-	0.35	5.04	2.69	0.9946	0.9661	0.0339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0.0273	0.2419	16.10	12.73	14.42	14.48	14.45	0.9467	0.8944	0.1056
25	고무 및 플라스틱	0.0649	0.3967	12.62	14.76	13.69	7.43	10.56	0.9964	1.0841	0.0841
26	비금속광물제품	0.0322	0.2797	13.85	16.57	15.21	10.33	12.77	0.9720	0.9962	0.0038
27	제1차금속산업	0.1377	0.4891	8.45	6.64	7.55	7.35	7.45	0.9975	0.8950	0.1050
28	조립금속제품	0.0421	0.2738	21.71	18.15	19.93	14.11	17.02	0.9135	1.4214	0.4214
29	기타기계 및 장비	0.0555	0.3863	18.65	17.16	17.91	12.98	15.44	0.9644	1.8664	0.8664
30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0.0826	0.4693	23.19	16.49	19.84	16.77	18.31	0.9604	0.6692	0.3308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688	0.4508	14.10	20.31	17.21	9.52	13.36	0.9676	1.1988	0.1988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1174	0.5724	7.14	7.83	7.49	15.47	11.48	0.9635	1.0766	0.0766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0466	0.3388	29.98	26.31	28.15	27.87	28.01	0.7342	0.9041	0.0959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0.1665	0.6770	6.73	3.91	5.32	8.53	6.93	0.9973	0.8406	0.1594
35	기타운송장비	0.2456	0.7849	2.98	33.42	18.20	6.39	12.30	0.9907	0.9746	0.0254
36	가구 및 기타	0.0376	0.3224	22.36	28.26	25.31	7.47	16.39	0.9809	1.0448	0.0448
가중평균지수		0.0889	0.4284	11.45	12.46	11.95	10.66	11.31	0.9689	1.0465	0.0465

주: STAB = (REGSH - 1)의 절대값으로 1991년~1995년 기간 중 점유율이 1991년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나타낸다.

CORSH와 REGSH의 산업별 추정값은 <표 22>에 함께 정리되어 있다. 볼드윈-고렉키는 CORSH의 값이 [0.90, 1.00], REGSH의 값이 [0.90, 1.10]의 범주에 속하면 점유율 안정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기준을 원용하면 CORSH는 두 개 산업(의복 및 모피제조업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을 제외하고는 0.90이상으로 잔류기업의 두 시점간 점유율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REGSH를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산업은 12개산업이고 나머지 9개 산업에서는 이 범위 밖에 있다. 얼핏보아 CORSH와 REGSH는 거의 같은 현상을 측정하는 지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표 22>는 두 지표가 사실상 무관함을 보여준다. 즉 볼드윈-고렉키의 기준에 따라 CORSH와 REGSH가 모두 안

정적일 조건을 만족시키는 산업은 9개이며 그 밖의 12개 산업에서는 두 기준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

4. 구조지표와 이동지표의 관계

(1) 구조지표와의 관계

구조지표와 이동지표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진입장벽과 기업간 내부이동장벽 또한 높기 때문에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안정성을 유지하는가? 구조지표는 경쟁을 하나의 상태로 보고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수와 규모의 분포를 측정하는 것인 반면에 이동지표는 경쟁을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진입과 퇴출, 잔류기업의 내부순위변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한 시장의 경쟁강도는 이동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정책은 구조지표를 기준으로 운용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또 정책운용에 있어서의 이러한 관행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조지표와 이동지표는 상호 밀접한 대체관계를 갖기 때문에 측정이 손쉬운 구조지표로 시장의 경쟁강도를 가늠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실증적으로 어느 만큼 타당성을 갖는가?

구조지표와 이동지표는 같은 현상의 서로 다른 표현에 불과한지, 두 지표는 정책활용에 있어서 선택적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보는 한 방법은 두 지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두 지표가 서로 대체적인 관계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가설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려면 구조지표와 시장점유율의 상대적 불안정도를 반영하는 이동지표(TURNE, TURNC)와는 음(-)의 높은 상관계수를 가져야 한다. 반면에 개별기업 점유율의 상대적 안정성을 반영하는 이동지표(CORSH, REGSH)와 구조지표는 정(+)의 높은 상관계수를 가져야 한다.

<표 23> 이동지표와 구조지표의 상관관계

구분	CR4	허핀달지수	5대재벌집중도	10대재벌집중도	20대재벌집중도	30대재벌집중도
TURNE	-0.5203** (0.0156)	-0.4884** (0.0247)	-0.3172 (0.1729)	-0.4150* (0.0688)	-0.4965** (0.0260)	-0.4868** (0.0295)
TURNC	-0.2939 (0.1960)	-0.3419 (0.1293)	-0.1879 (0.4277)	-0.2613 (0.2658)	-0.3386 (0.1442)	-0.3795* (0.0989)
CORSH	0.3623 (0.1065)	0.3652 (0.1036)	0.2289 (0.3318)	0.2805 (0.2310)	0.3551 (0.1245)	0.3927* (0.0868)
REGSH	-0.0685 (0.7681)	-0.0713 (0.7589)	-0.1511 (0.5250)	-0.2034 (0.3897)	-0.1992 (0.3997)	-0.2167 (0.3588)

주) ① 괄호안의 수치는 p-값을 표시

② *는 10%,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표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동지표와 구조지표의 상관관계분석을 행한 결과는 <표 23>에 요약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이동지표와 구조지표의 모든 상관계수는 사전에 예측한 바와 같은 부호를 갖는다.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k-기업집중도(CR_k)와 허핀달 지수는 이동지표 중에 진입/퇴출지수(TURNE)와만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진입과 퇴출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관계수가 절대치로 5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진입/퇴출지수와 구조지표가 일반적인 기대만큼 높은 대체적 관계에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CR_k와 허핀달 지수가 잔류기업들 사이의 순위변동을 나타내는 다른 이동지표(TURNC, CORSH, REGSH)와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상관계수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 제Ⅲ장 제4절에서 시장비효율도는 CR_k나 허핀달 지수보다도 재벌집중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았다. 이는 모든 구조지표가 불완전한 경쟁척도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재벌집중도가 CR_k나 허핀달 지수보다도 정태적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이 이동지표와의 관계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벌계층별 집중도와 이동지표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23>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면 재벌 집중도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여러 이동지표와 낮은 상관성을 보인다. 상관성이 가장 높은 30대 재벌집중도와 진입/퇴출지수의 경우에도 약 50% 미만의 상관계수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CR_k나 허핀달 지수에 비교하면 30대 재벌집중도는 TURNE와는 비슷한 크기의 상관계수를 갖고, TURNC와 CORSH와도 상관계수는 적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다는 점

은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사실은 30대재벌이 각 산업내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퇴출율이 낮고 또 기업간 시장점유율 순위에도 큰 변화가 없음을 반영한다.

이처럼 CR_k 와 허핀달 지수, 그리고 재벌집중도 등 여러 구조지표와 이동지표의 상관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거나 또 통계적 유의성이 있어도 그 계수가 낮다는 점은 두 지표가 상징하는 경쟁강도에 대한 해석이 불일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구조지표만을 보면 집중도가 높아 경쟁부족현상이 심각한 산업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이동지표로 보면 진입과 퇴출, 기업순위의 변동이 활발하여 산업내에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조지표와 이동지표는 서로 대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조지표에 의거하여 경쟁강도를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는 가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집중지표가 상징하는 경쟁의 강도와 이동지표가 상징하는 경쟁의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좀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그림 8>을 이용하여 30대 재벌집중도와 진입/퇴출지수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자.⁴⁶⁾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집중도는 엇비슷하지만 진입/퇴출지수는 다른 산업(산업코드 22, 28, 19; 27, 15, 36)이 적지않다. 이들 산업은 집중도가 같다는 점에서 구조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이들 산업의 경쟁도가 비슷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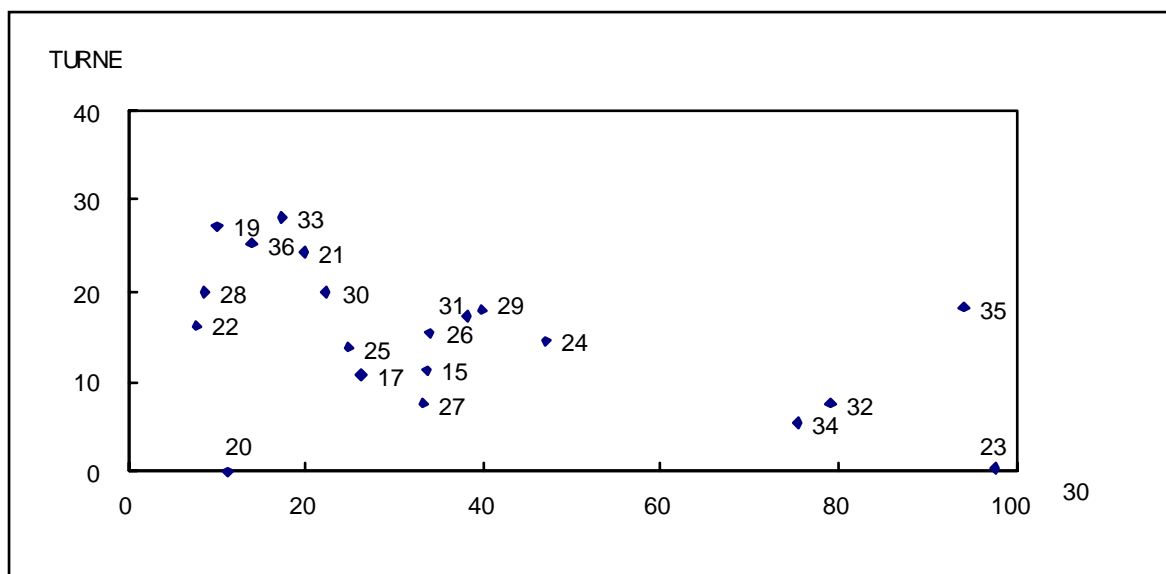
그러나 이동지표로 보면 이들 산업은 집중도는 같아도 전혀 다른 경쟁양상을 보인다. 예로써 제1차금속산업(산업코드 27)의 경우를 보자. 동 산업의 집중도(8.6%)는 산업평균(51.3%)보다 낮기 때문에 비교적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동지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산업의 진입/퇴출율(TURNE: 9.2%)은 산업평균(12.0%)보다 낮고 잔류기업 순위변동율(TURNC: 7.4%)도 산업평균(10.7%)도 낮다. 또 1991년~1995년 기간중 점유율 안정성(CORSH)도 비교적 높다. 따라서 집중도에 바탕을 둔 평가와 달리 이동지표로 본 제1차금속산업은 경쟁도가 비교적 낮은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⁷⁾

주) 그림상의 숫자는 중분류 산업코드를 나타냄.

46) 다른 형태의 구조지표와 이동지표의 산업별 분포는 별첨부록을 참조.

47) 제1차금속산업의 반대 사례는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산업코드 35)이다. 동 산업은 <그림 8>에서 집중도와 진입/퇴출율이 모두 높다.

<그림 13> 진입/퇴출지수와 30대재벌 집중도의 산업별 분포도



이처럼 시장경쟁도에 대한 평가에서 구조지표와 이동지표가 불일치함을 보이는 위 사례는 이 두 지표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장경쟁도는 이동지표에 더 잘 반영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표 23>이나 <그림 8>의 상관분석 결과는 지금처럼 구조지표를 바탕으로 경쟁정책을 운용하는 관행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구조지표는 측정이 쉽고 단순명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경쟁도를 왜곡 전달하는 오염된 척도(quick and dirty measures)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경쟁도를 측정하고 경쟁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구조지표와 더불어 이동지표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의 실증분석 결과가 보이고 있는 것처럼 구조지표와 이동지표는 결코 선택적 대체관계에 있지 않고 시장경쟁과정의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시장비효율도와의 관계

이동지표와 제Ⅲ장에서 추정한 사회적 비용, 또는 시장비효율도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 비용은 경쟁을 상태로 보는 한편, 현실의 경제가 완전경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동지표는 시장을 과정으로 보는 한편, 완전경쟁을 현실 경제의 비교기준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장과정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비용과 이동지표는 전혀 다른 경쟁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4>는 이동지표와 사회적 비용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⁴⁸⁾ 여기에서 보듯이 진입/퇴출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안정적일수록 사회적 비용도 대체로 낮아지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진입/퇴출율(TURNE)과 후생손실삼각형에 기초한 사회적 비용(모형 1과 2)을 제외하고는 상관관계수가 매우 적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다. 따라서 TURNC, CORSH, REGSH 등 잔류기업의 점유율 불안정성과 사회적 비용은 거의 무관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진입/퇴출율과 사회적 비용 사이의 관계는 여러 면에서 CR_k 나

<표 24> 이동지표와 시장비효율도의 상관관계

구 분	$\lambda=0$				추정 λ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TURNE	-0.4393** (0.0463)	-0.4302* (0.0516)	0.0627 (0.7872)	-0.1613 (0.4848)	-0.4267* (0.0537)	-0.4183* (0.0592)	-0.0179 (0.9388)	-0.1793 (0.4368)
TURNC	-0.0886 (0.7025)	-0.0839 (0.7176)	0.1063 (0.6467)	0.0902 (0.6974)	-0.0608 (0.7935)	-0.0495 (0.8313)	0.0963 (0.6779)	0.0840 (0.7175)
CORSH	0.2443 (0.2859)	0.2546 (0.2653)	0.0417 (0.8575)	0.1299 (0.5747)	0.2511 (0.2723)	0.2636 (0.2483)	0.0903 (0.6972)	0.1407 (0.5429)
REGSH	-0.1339 (0.5629)	-0.1722 (0.4555)	-0.3645 (0.1043)	-0.2535 (0.2676)	-0.1255 (0.5877)	-0.1599 (0.4887)	-0.3649 (0.1038)	-0.2480 (0.2784)

주) ① 괄호안의 수치는 p-값을 표시

②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표시

③ 사회적 비용의 추정모형에 대해서는 제III장 <표 10> 참조.

허핀달 지수, 재벌집중도 등의 구조지표와 사회적 비용이 맺고 있는 관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을 끈다. 특히 후생손실삼각형으로 평가한 사회적 비용과 진입/퇴출율은 예상보다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진입/퇴출율과 집중도의 상관관계수(-0.49~-0.52), 그리고 집중도와 사회적 비용의 상관관계수(0.52~0.60)에 비추어 볼 때 <표 24>에서 진입/퇴출율과 사회적 비용의 상관관계수(-0.44)는 예상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진입/퇴출율이 구조지표가 반영하지 못하는 다른 경로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미

48) 여기서 사회적 비용은 각 산업의 후생손실액을 그 산업의 부가가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본 경쟁비효율도라고 할 수 있다.

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중 한가지 예를 들면, 산업의 초과이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경쟁, 진입장벽을 구조지표는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에 진입/퇴출율은 이들을 반영하고 있다.

요약하면 <표 24>의 실증분석 결과는 구조지표와 이동지표는 서로 대체적인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는 기존의 믿음이 오류일 수 있다는 <표 23>에서의 결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사실은 향후 학계의 연구나 경쟁정책의 운용과정에서 구조지표와 더불어 이동지표를 중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CR_k , 허핀달 지수, 재벌집중도 등 그 어떤 구조지표이든지 이동지표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쟁의 강도와 그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

제 V 장 요약 및 결론

Shepsle(1989): 나의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량적 정책운용은 최적화의 적이며 일관성은 최적화의 동지”라는 것이다(3쪽).

If this paper could be reduced to a bumper sticker, it would be “Discretion is the enemy of optimality, commitment its ally.”

Demsetz(1969): 대다수의 공공정책 경제학자들은 은연중에 “불완전한” 현실과 이상을 비교하고 양자를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해탈적 접근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들을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비교제도론적 접근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1쪽).

The view that now pervades much public policy economics implicitly presents the relevant choice as between an ideal norm and an existing “imperfect” institutional arrangement. This *nirvana* approach differs considerably from a *comparative institution* approach in which the relevant choice is between alternative real institutional arrangements(1쪽).

1. 결과 요약

아담 스미스 이래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한 사회에 주어진 자원을 최적의 용도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메카니즘으로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부존자원에 의해 설정된 성장한계도 기업가적 발견(entrepreneurial discovery)을 통해 극복될 수 있으며, 또 이 기업가적 발견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는 바로 경쟁임을 강조한다. 비록 경쟁의 본질, 경쟁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지언정 자본주의 체제의 건전성은 경쟁활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학자는 없다.

경쟁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각국에서는 반독점법, 공정거래법 등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각국의 경쟁정책은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시장구조와 경쟁효율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믿음하에 운용되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한 시장에서 소수 대기업의 비중을 의미하는 집중도가 높을수록 시장의 자원배분효율이 감소한다는 믿음하에 집중도를 경쟁효율의 척도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시장의 독과점도 판단이나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집중지표의 하나인 상위 k기업집중도(CR_k)를 활용하고 있다.

시장집중 및 경쟁효율의 관계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중요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첫째, 경쟁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뒷받침할 만큼 높은 수준인가?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독점이론으로 접근하는 기존연구와 달리 불완전경쟁이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둘째, CR_k , 허핀달 집중지수, 산업별 재벌집중도 등은 사회적 비용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집중도는 신뢰할만한 경쟁척도’라는 가설이 타당한지 검증하고 있다. 셋째, 진입/퇴출지수, 시장점유율 불안정지수 등 이동지표는 집중도 및 사회적 비용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즉 집중지표와 이동지표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표를 보는가는 단지 선택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일반적 믿음을 실증분석으로 검증하고 있다.

위 세가지 쟁점에 대해 1991년~1995년 기간 중 한국의 제조업 부문 21개 중분류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쟁부족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비용, 다시 말하면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연간 GNP 대비 최소 0.12%에서 최대 2.89%까지 분포한다. 사회적 비용을 전통적인 후생손실 삼각형의 면적으로 국한할 경우 이 비용은 GNP 대비 0.12%~0.23%이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의 내부비효율을 감안하여 후생손실 삼각형을 재정의하면 사회적 비용은 GNP 대비 0.15%~0.28%에 이른다. 그리고 X-비효율론에 따라 광고비와 접대비를 사회적 손실로 추가할 경우 이 비용은 GNP 대비 1.23%~1.36%, 또한 모든 이윤이 낭비된다는 지대추구론의 극단적인 가정을 채택할 경우 이 비용은 GNP 대비 2.76%~2.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사회적 비용은 일부 산업에서 편중적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후생손실 삼각형에 기초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할 경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제1차금속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등 3개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전체 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X-비효율모형이나

지대추구모형에 의거할 경우에도 문제되는 산업의 구성에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비용의 산업별 편중현상은 여전하다.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 본 연구 결과에 대해 GNP의 0.12%로 매우 적다거나 또는 GNP의 2.89%로 적지않다는 등 서로 상반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비해 전체규모와 관계없이 사회적 비용이 일부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셋째, 학계의 연구나 경쟁정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R_k 나 허핀달 집중지수는 시장지배력의 불완전한 척도이다. 이들 집중지표는 후생손실 삼각형으로 정의되는 사회적 비용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에 있고 그 밖에 X-비효율모형과 지대추구모형을 기초로 추정한 사회적 비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관계의 밀접성을 보여주는 상관계수의 최대치는 약 0.60에 불과하다. 따라서 집중도가 증가하면 시장지배력과 사회적 비용도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관계수의 크기로 볼 때 집중도를 시장지배력의 절대적 척도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특히 '집중도는 신뢰할만한 경쟁척도'라는 가설이 집중도와 사회적 비용이 거의 1:1의 역(逆)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믿음을 전제한 것이라면 본 연구는 이러한 믿음이 실증분석으로 뒷받침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넷째, 산업별 재벌집중도는 최소한 CR_k 나 허핀달 집중지수와 비슷한 설명력을 갖는다. 재벌집중도는 사회적 비용과 최대 0.70의 상관계수를 보여 CR_k 나 허핀달 지수의 0.60보다도 높은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이들 지표와 달리 재벌집중도는 지대추구모형에 기초한 사회적 비용과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보인다. 더 나아가 이동지표와의 관계에서도 재벌집중도는 CR_k 나 허핀달 집중지수에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재벌집중도와 진입/퇴출지수의 상관계수는 -0.49로서 CR_k (-0.52)나 허핀달 지수(-0.48)와 비슷한 수준이고 시장점유율 불안정지수 등 일부 이동지표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이들 지표에서 보기도 높다. 이러한 결과는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CR_k 나 허핀달 집중지수와 달리 재벌집중도는 한국기업조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집중지표라는 점에서 다소 흥미로운 사실이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동지표와 집중지표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표를 보던 큰 차이가 없다는 가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CR_k 나 허핀달 지수는 여러 가지 이동지표 중에 진입/퇴출지수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 집중지표와 진입/퇴출지수 사이의 상관계수도 -0.5 내외의 비

교적 적은 크기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고집중 산업에서도 진입/퇴출이 활발하고 기업간 순위변동이 적지않아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CR_k , 허핀달 지수, 재벌집중도 등 그 어느 집중지표이든지 이동지표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시장경쟁도와 그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진입/퇴출지수와 집중지표의 상관계수(-0.49~-0.52), 집중도와 사회적 비용의 상관계수(0.52~0.60)에 비추어 볼 때 진입/퇴출지수와 사회적 비용의 상관계수가 -0.44라는 점은 두 지표가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요인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정책적 시사점

경제력집중은 일반집중, 복합집중, 시장집중, 그리고 소유집중 등 네가지 형태가 있다. 이중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시장집중을 가장 문제삼고 선진공업국의 경쟁정책도 시장집중의 완화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시장집중보다는 30대재벌에의 경제력집중을 문제삼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일반집중의 문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시장집중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독과점 사업자 및 품목의 지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 경쟁제한적인 시장행태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위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만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운용기준이나 운용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력집중에 대한 관심이 일반집중에서 시장집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 제도학과의 경제학이나 정치학, 그리고 산업사회학의 일각에서 일반집중을 계속 문제삼아야 한다는 시각이 없지도 않지만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집중을 특별히 우려할 이유는 없다. 일반집중의 증가가 반드시 시장의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필자가 다른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일반집중을 문제삼아야 할 만큼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수준에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일반집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이 일반집중을 한국 특유의 현상으로 인식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시정될 필요가 있다.

경제력 일반집중의 억제에 주안점을 두어왔던 그간의 정책이 향후에 시장경쟁의 촉진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경제의 개방화 추세이

다. WTO의 출범과 OECD의 가입, 그리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변수로서 국경이 갖는 의미는 전과 다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에 본거지를 둔 기업의 규모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운용하는 것은 외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모순을 초래할 뿐이다.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기업 국적에 관계없이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감시·제재할 수 있는 경쟁규범을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일 것이다.

시장집중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도 시장의 자원배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경쟁부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추정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991년~1995년 평균규모로 보면 GNP의 0.12%~2.89%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금액으로는 약 4천억원에서 약 10조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어느 모형이 경제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X-비효율모형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GNP의 1.36%(약 4조7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경쟁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비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이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쟁을 촉진시키는 시장환경의 조성이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CR_k 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경쟁정책 운용기준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형식적이라 할 수 있지만 시장 독과점도의 판단이나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에서 CR_k 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허핀달 지수를 기준으로 강력한 기업결합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CR_k , 허핀달 지수, 또는 산업별 재별집중도 그 어떤 집중지표를 이용하는가와 관계없이 집중지표는 시장지배력의 행사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 또는 시장경쟁의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집중지표는 계측과 해석이 단순하지만 오염된 경쟁척도(quick and dirty measure)일 뿐이다. 반면에 앞의 요약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이동지표는 집중지표와 서로 다른 경쟁과정을 반영하며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집중지표와 비슷한 크기의 설명력을 갖는다. 따라서 시장독과점도의 판단이나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와 같은 경쟁정책의 운용과정에서 집중지표 외에 진입/퇴출지수, 기업순위변동지수 등 이동지표를 함께 감안해야 할 것이다.

3. 분석의 한계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 중분류 산업구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분류를 사용한 까닭은 산업별 진입/퇴출율, 기업순위변동율 등 이동지표와 허핀달 집중지수를 계측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기업자료가 이 분류하에서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부문이 23개 산업으로 구분되는 이 산업분류하에서는 산업별 특성이 애매할 수 있다. 한 산업에 서로 이질적일 수 있는 상품들이 한데 섞여 있어 하나의 독자적인 시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할 때 이용하는 KSIC 8단위는 시장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있는 결과 밀접한 대체적 관계에 있는 상품을 서로 다른 시장에 배속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중간 어디쯤에서 타협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경우 자료접근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초자료는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정위나 통계청과 같은 정부기관이 집계, 작성하여 공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시장지배적사업자제도와 같이 정책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 제도를 고집하기보다는 공공재적 성격의 기초통계를 제공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이러한 자료들이 연구자들에게 이용가능할 때 비로소 시장경쟁과정과 경쟁저해요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또 정부개입의 필요성 유무와 경쟁정책의 수단별 효과 등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와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헌, 경제력집중과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사, 1991.
- 곽만순·박승록, 한국제조업부문의 가격설정행위 추정, 한국경제연구원, 1997
- 김재홍, 한국의 진입규제, 한국경제연구원, 1994
- 윤창호·이규억, 산업조직론, 법문사, 1997
- 이승철·홍성중, 한국의 가격규제, 한국경제연구원, 1994
- 정갑영, 산업조직론, 법문사, 1991
- 주순식, “독과점산업 경쟁력, 경쟁축진으로 높인다,” 나라경제, 1997년 7월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 업종별 주요장벽 실태, 1997.5
-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총람, 각년호
- 황인학, 경제력집중 한국적인식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1997
- Adams, W.A., 1986, *The Structure of American Industry*, 7th ed. New York: Macmillan.
- Backman, M., "Economics of Corruption," *Asian Wall Street Journal*, 1996. 9.

3.

Bain, J., "Relation of Profit Rate to Industry Concentration: American Manufacturing 1936-194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5(1951): 293-324.

Baldwin, J.R. and Gorecki, P.K., "Concentration and Mobility Statistics in Canada's Manufacturing Sector,"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1994: 93-103.

Baumol, W.J., Panzar, J.C., and Willig, R.D., *Contestable Markets and the Theory of Industry Structure*, San Diego: Harcourt Brace Javanovich, 1982.

Benham, Lee, "The Effect of Advertising on the Price of Eyeglasse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5(1972): 37-52.

Bresnahan, T., "Empirical Studies of Industries with Market Power", in: Schmalensee, R. and Willig, R.D. eds, *Handbook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II, Elsevier, 1989.

Brock, W. A., "Contestable Markets and the Theory of Industry Structure: A Review Articl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1(1983): 1055-1066.

Buchanan, J.M., "Rent Seeking and Profit Seeking," in Buchanan, Tollison, and Tullock eds.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Colledge Station: Texas A&M Press, 1980.

Carlton, C. and Perloff, P., *Modern Industrial Organization*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9.

Clarke, R., Davies, S., and Waterson, M., 1984, "The Profitability-Concentration Relation: Market Power Or Efficienc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2:435- 450.

Cowling,K. and Mueller,D.C., 1978, "The Social Cost of Monopoly Power,"
Economic Journal 88:725-748

Cowling,K. and Waterson,M., 1976, "Market Structure and Price Cost
Margins," *Economica* 43:267-274

Dansby,R.E. and Willing,R.D., 1979, "Industry Performance Gradient Indexe
s," *American Economic Review* 69:249-260

Demsetz, H., "Information and Efficiency: Another Viewpoin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2(1969): 1-22.

Demsetz, H., "Industry Structure, Market Rivalry,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6(1973): 1-9

Demstz, H., "The Theory of the Firm Revisited," in Oliver Williamson and
Sidney Winter(ed.) *The Nature if the Firm: Origins, Evolution, and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Deutsch, J. and Silber, J., "Static versus Dynamic Measures of Aggregate
Competition: The Case of Fortune's 500,"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62(1995): 192-209.

Donsimoni,M.P., Geroski,P., and Jacquemin, A., 1984, " Concentration Indices
and Market Power:Two View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2:419-434

Gisser, M., "Price Leadership and Welfare Loss in U.S. Manufacturing,"
American Economic Review, 76(1986): 756-67.

Harberger,A.C., 1954, "Monopoly and Resource Alloc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44:77-87.

Hay, D.A. and Morris, D.J. *Industrial Economics and Organization: Theory and Evidence*,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Hicks, J.R., "Annual Survey of Economic Theory: The Theory of Monopoly," *Econometrica* 3(1935): 1-20.

Hilman, A.L. and Katz, E., "Risk-Averse Rent Seekers and the Social Cost of Monopoly Power," *Economic Journal*, 94(1984): 104-10.

Hwang, I.H., *Capacity Investment, Entry and Efficiency*, PhD Dissertation, Washington University, 1994.

Jadlow, M.J. and Jadlow, J.W., "Risk, Rent Seeking and the Social Cost of Monopoly Power,"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9(1988)59-63.

Jenny, F., and Weber, A., 1983, "Aggregate Welfare Loss Due to Monopoly Power in the French Economy: Some Tentative Estimate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2:113-130

Kamerschen, D.R., 1966, "An Estimation of 'Welfare Losses' From Monopoly in the American Economy," *Western Economic Journal* 4:221-236

Kemani, R.S., Shapiro, D.M., and Stanbury, W.T., *Mergers, Corporate Concentration and powers in Canada*,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1988.

Kirzner, I.M., "The Ethics of Competition," in Sibert, H, ed. *The Ethical Foundations of the Market Economy*, Institut für Weltwirtschaft an der Universität Kiel, Tübingen, 1994. umlaut첨가

Leibenstein, H., "Allocative Efficiency versus X-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56(1966): 392-415.

Littlechild, S.C., "Misleading Calculations of the Social Cost of Monopoly Power," *Economic Journal*, 91(1981): 348-363.

Lucile S. Keyes, "The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of 1992,"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10(1995): 143-159.

Lyons, B.R., "The Welfare Loss Due to Strategic Investment in Excess Capa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4(1986):109-119.

Mills, D.E., "Untimely Entr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9(1991), 659-70.

Mueller, D.C., *Public Choice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Olson, D., and Bumpass, D., "An Intertemporal Analysis of the Welfare Cost of Monopoly Power: U.S. Manufacturing 1967-1981,"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1(1980): 308-322.

Ottosen, G.K., *Monopoly Power: How It Is measured and How It Has Changed*, Crossroad Research Institute, 1991.

Posner, R.A., "The Social Cost of Monopoly and Reg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1975): 807-27.

Rogerson, W.P., "The Social Cost of Monopoly and regulation: A Game Theoretical Analysis," *Bell Journal of Economics*, 13(1982): 391-401.

Rutherford, M., *Institutions in Economics: The Old and New Institution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Salop, S.C. and Scheffman, D.T., "Cost-Raising Strategie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6(1987): 19-34.

Scherer, F.M., Industrial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2nd ed., 1980

Schwartzman, D., "The Burden of Monopol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8(1960): 627-30.

Shepherd, William G., "Causes of Increased Competition in the U.S. Economy, 1939-1980,"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4(1982): 613-626

Shepsle, K.A., "Institutions, Discretion, and the Problem of Government Commitment," mimeo., 1989.

Siegfried, J.J., "Could a Score of Industrial Organization Economists Agree on Competition?"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3(1988):139-148

Siegfried & Tiemann, "The Welfare Cost of Monopoly : An Inter-Industry Analysis" Economic Inquiry, June 1974, :190-202

Steinberg,D., "Gift Giving and Politics in South Korea," Asian Wall Street Journal, 1996. 9. 12.

Tullock, G., "The Welfare Costs of Tariffs, Monopolies and Theft," Western Economic Journal 5(1967): 224-32

Wahlroos,B., 1984, "Monopoly Welfare Losses Under Uncertainty," Southern Economic Journal, 429-442

Worcester, D.A., "New Estimates of the Welfare Loss to Monopoly: United States 1956-1969," Southern Economic Journal 40(1973): 234-45.

<부표 1-1> HHI지수와 CR₄의 범위 조건표

HHI	CR ₄ 극소값			CR ₄ 극대값		
	CR ₄	산 정 근 거		CR ₄	산 정 근 거	
		상위 1대기업 시장점유율	여타 기업수		동등규모기업의 평균점유율	여타 기업수
0.0300	0.18	0.15	85	0.30	0.08	70
0.0600	0.26	0.23	77	0.47	0.12	53
0.0900	0.32	0.29	71	0.59	0.15	41
0.1200	0.37	0.34	66	0.68	0.17	32
0.1500	0.41	0.38	62	0.77	0.19	23
0.1800	0.45	0.42	58	0.84	0.21	16
0.2100	0.48	0.45	55	0.91	0.23	9
0.2400	0.51	0.48	52	0.98	0.24	2
0.2700	0.54	0.51	49	0.91	0.30	10
0.3000	0.57	0.54	46	0.96	0.32	5
0.3300	0.60	0.57	43	1.00	0.33	0
0.3600	0.63	0.60	40	0.87	0.42	15
0.3900	0.65	0.62	38	0.90	0.44	12
0.4200	0.68	0.65	35	0.94	0.46	8
0.4500	0.70	0.67	33	0.97	0.47	5
0.4800	0.72	0.69	31	1.00	0.49	0
0.5100	0.74	0.71	29	0.74	0.71	29

자료 : Weinstock(1984), 716쪽에서 전재

<부표 2-1> 제조업부문 산업별 집중도의 변화추이(1991~1995년)

CODE	제 조 업	CR ₈					CR ₁₂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15	음식료품	0.2795	0.2715	0.2790	0.2705	0.2564	0.3579	0.3497	0.3575	0.3470	0.3342
17	섬유	0.3538	0.3433	0.3372	0.3409	0.3757	0.4491	0.4438	0.4312	0.4368	0.4661
18	의복 및 모피	0.2306	0.2620	0.2806	0.3021	0.3314	0.3006	0.3389	0.3628	0.3886	0.4098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0.3061	0.3591	0.3880	0.4117	0.4099	0.3941	0.4690	0.5073	0.5219	0.5261
20	목재 및 나무제품	0.6630	0.6602	0.7270	0.8136	0.8096	0.7558	0.7471	0.8111	0.8925	0.8935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0.3523	0.3651	0.3882	0.3975	0.3837	0.4355	0.4449	0.4680	0.4775	0.4679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0.4692	0.4402	0.4560	0.4914	0.4500	0.5604	0.5302	0.5522	0.5775	0.5278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9872	0.9830	0.9889	0.9844	0.9863	0.9982	0.9947	0.9979	0.9952	0.9948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0.3236	0.3010	0.3058	0.3168	0.3213	0.3928	0.3671	0.3691	0.3842	0.3932
25	고무 및 플라스틱	0.4836	0.5005	0.5454	0.5049	0.5177	0.5544	0.5692	0.6119	0.5706	0.5787
26	비금속광물제품	0.4112	0.3960	0.4126	0.4077	0.4074	0.4947	0.4848	0.5128	0.4990	0.5084
27	제1차금속산업	0.6233	0.6046	0.6191	0.6050	0.5842	0.7063	0.6867	0.7037	0.6891	0.6599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0.3447	0.1859	0.1991	0.2099	0.2061	0.4066	0.2531	0.2762	0.2758	0.2751
29	기타기계 및 장비	0.4747	0.4480	0.3757	0.4403	0.4991	0.5357	0.5122	0.4509	0.4987	0.5518
30	사무,계산,회계용기계	0.6785	0.6553	0.6490	0.6587	0.6756	0.7892	0.7598	0.7701	0.7764	0.7736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 치	0.5928	0.5940	0.6197	0.4906	0.5345	0.6521	0.6407	0.6647	0.5469	0.5835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0.6743	0.6596	0.6755	0.6952	0.7505	0.7265	0.7193	0.7407	0.7627	0.7977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0.5272	0.4730	0.4941	0.4640	0.4604	0.6435	0.5741	0.5999	0.5812	0.5762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668	0.7237	0.7230	0.7146	0.7094	0.8054	0.7693	0.7711	0.7594	0.7544
35	기타 운송장비	0.9412	0.9337	0.9595	0.9374	0.9500	0.9731	0.9685	0.9775	0.9655	0.9736
36	가구 및 기타	0.4378	0.4404	0.4832	0.4146	0.4382	0.5186	0.5147	0.5585	0.4951	0.5174
가중평균집중률		0.5397	0.5287	0.5493	0.5466	0.5657	0.6048	0.5953	0.6163	0.6135	0.6273

주 : CR₄와 허핀달지수는 본문을 참조.

자료 : 「한국기업총람」 각년도.

<부표 2-2> 제조업부문 산업별 상위8개사와 시장점유율(1995년)

CODE	제 조 업	1	2	3	4	5	6	7	8
15	음식료품	제일제당 (0.0730)	롯데제과 (0.0314)	농심 (0.0282)	롯데칠성 음료 (0.0279)	미원 (0.0274)	해태제과 (0.0269)	동원산업 (0.0215)	OB맥주 (0.0201)
16	담배	-	-	-	-	-	-	-	-
17	섬유	삼양사 (0.0563)	태광산업 (0.0527)	동양나이 론 (0.0495)	코오롱 (0.0469)	고합 (0.0460)	제일모직 (0.0455)	선경인더 스트리 (0.0432)	제일합섬 (0.0356)
18	의복 및 모피	신원 (0.1036)	나산 (0.0552)	대현 (0.0431)	캠브리지 (0.0323)	남영비비 안 (0.0281)	신영와코 루 (0.0235)	진도패션 (0.0230)	성도어패 럴 (0.0226)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국제상사 (0.1000)	에스콰이 아 (0.0542)	화승 (0.0531)	금강제화 (0.0486)	대양 (0.0411)	삼양통상 (0.0403)	엘칸토 (0.0375)	세원 (0.0351)
20	목재 및 나무제품	성창기업 (0.1798)	이건산업 (0.1729)	동화기업 (0.1588)	대성목재 공업 (0.1119)	선창산업 (0.1071)	훼미리 (0.0290)	동영물산 (0.0265)	청담물산 (0.0237)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한솔제지 (0.1329)	유한김별 리 (0.0481)	쌍용제지 (0.0399)	세풍 (0.0377)	동해펄프 (0.0345)	대한펄프 (0.0335)	한국제지 (0.0310)	홍원제지 (0.0260)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조선일보 사 (0.0909)	대교 (0.0805)	동아일보 사 (0.0743)	한국일보 사 (0.0597)	웅진출판 사 (0.0436)	서울신문 사 (0.0373)	두산동아 (0.0335)	재능교육 (0.0302)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유공 (0.3660)	LG칼텍 스정유 (0.2473)	쌍용정유 (0.1928)	한화에너 지 (0.1060)	현대정유 (0.0637)	한국원전 연료 (0.0042)	미창석유 공업 (0.0034)	한국셀석 유 (0.0029)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LG화학 (0.1156)	한화종합 화학 (0.0518)	한화 (0.0440)	삼성종합 화학 (0.0236)	에스케이 씨 (0.0218)	삼성석유 화학 (0.0217)	현대석유 화학 (0.0215)	태평양 (0.0213)
25	고무 및 플라스틱	금호타이 어 (0.2017)	한국타이 어제조 (0.1638)	서통 (0.0440)	화승화학 (0.0271)	울촌화학 (0.0254)	동아타이 어공업 (0.0197)	동일고무 벨트 (0.0194)	삼영화학 공업 (0.0165)
26	비금속광물제품	쌍용양회 공업 (0.1187)	동양시멘 트 (0.0585)	삼성코닝 (0.0559)	금강 (0.0467)	한국유리 공업 (0.0328)	한일시멘 트공업 (0.0325)	한라시멘 트 (0.0313)	성신양회 공업 (0.0308)

CODE	제 조 업	1	2	3	4	5	6	7	8
27	제1차금속산업	포항종합 제철 (0.3109)	인천제철 (0.0540)	LG금속 (0.0524)	동국제강 (0.0383)	삼미종합 특수강 (0.0379)	동부제강 (0.0358)	풍산 (0.0289)	강원산업 (0.0261)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포항강재 공업 (0.0365)	한일제관 (0.0314)	금강공업 (0.0295)	포항도금 강판 (0.0249)	홍화공업 (0.0226)	대한중석 (0.0218)	대림통상 (0.0205)	삼화제관 (0.0188)
29	기타기계 및 장비	대우중공 업 (0.2517)	한국중공 업 (0.1395)	한화기계 (0.0244)	쌍용중공 업 (0.0205)	대동공업 (0.0197)	대우캐리 어 (0.0149)	동양물산 기업 (0.0144)	현대엘리 베이터 (0.0140)
30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대우통신 (0.1886)	삼보컴퓨 터 (0.1530)	한국휴렛 팩커드 (0.1162)	태일정밀 (0.0621)	신도리코 (0.0510)	코리아제 록스 (0.0433)	한국컴퓨 터 (0.0315)	삼성호 컴퓨터 (0.0300)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 치	LG전선 (0.1472)	LG산전 (0.1266)	대한전선 (0.1231)	효성중공 업 (0.0627)	회성전선 (0.0280)	셋방전지 (0.0177)	텍사스인 스트루먼 트코리아 (0.0159)	대성전기 (0.0132)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삼성전자 (0.3322)	LG전자 (0.1353)	현대전자 산업 (0.0801)	대우전자 (0.0642)	LG반도체 (0.0517)	삼성전관 (0.0397)	삼성전기 (0.0276)	아남산업 (0.0199)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LG하니 웰 (0.0869)	아남정공 (0.0770)	한국카시 오 (0.0676)	오리엔트 시계공업 (0.0583)	메디슨 (0.0478)	한국형하 전기 (0.0461)	삼성시계 (0.0455)	신흥 (0.0312)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현대자동 차 (0.2835)	기아자동 차 (0.1560)	대우자동 차 (0.0951)	현대정공 (0.0544)	아시아자 동차공업 (0.0441)	만도기계 (0.0315)	쌍용자동 차 (0.0271)	진도 (0.0177)
35	기타 운송장비	현대중공 업 (0.4000)	삼성중공 업 (0.2987)	삼성항공 산업 (0.1184)	한라중공 업 (0.0672)	현대미포 조선 (0.0264)	대림자동 차공업 (0.0225)	대동조선 (0.0096)	코리아타 코마조선 공업 (0.0072)
36	가구 및 기타	현대종합 목재산업 (0.1375)	삼익약기 (0.0716)	영창약기 제조 (0.0645)	한샘 (0.0448)	마르크가 구 (0.0359)	에넥스 (0.0335)	퍼시스 (0.0284)	에이스칩 대 (0.0219)
37	재생재료가공처리업	기전산업 (0.4667)	한국슈레 다산업 (0.4042)	동화산업 (0.1291)	-	-	-	-	-

주 : ()안의 수치는 산업내 각사 매출액 점유율임.

자료 : 「한국기업총람」 1996년.

<부표 2-3> 제조업부문 산업별 재벌집중도(1991년)

CODE	제 조 업	5대재벌점유율		10대재벌점유율		20대재벌점유율		30대재벌점유율	
		1-5대비중 (%)	기업수 (재벌수)	1-10대비중 (%)	기업수 (재벌수)	1-20대비중 (%)	기업수 (재벌수)	1-30대비중 (%)	기업수 (재벌수)
15	음식료품	7.53	2(1)	19.09	8(3)	26.34	17(5)	36.67	27(8)
17	섬유	7.77	2(1)	11.16	3(2)	21.63	8(4)	32.03	13(6)
18	의복 및 모피	0.58	1(1)	0.58	1(1)	0.58	1(1)	0.58	1(1)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0.00	0	0.01	1(1)	8.60	2(2)	8.60	2(2)
20	목재 및 나무제품	0.00	0	0.00	0	5.07	1(10)	5.07	1(1)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13.94	2(2)	14.92	3(3)	14.92	3(3)	14.92	3(3)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8.02	2(2)	10.23	4(4)	15.86	5(5)	15.86	5(5)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43.90	2(2)	90.36	4(4)	90.36	4(4)	90.36	4(4)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16.30	10(3)	29.52	19(6)	31.24	24(8)	36.81	35(13)
25	고무 및 플라스틱	1.03	1(1)	1.40	3(2)	2.08	4(3)	23.62	8(6)
26	비금속광물제품	20.68	5(4)	21.90	7(5)	24.14	10(8)	25.17	11(9)
27	제1차금속산업	11.38	6(2)	12.41	7(3)	26.03	14(6)	32.67	16(8)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8.99	2(1)	18.99	2(1)	23.58	5(4)	25.38	7(6)
29	기타기계 및 장비	44.23	12(5)	47.01	15(6)	51.83	19(10)	53.22	21(12)
30	사무,계산,회계용기계	0.00	0	6.09	1(1)	7.02	2(2)	7.02	2(2)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6.57	7(3)	26.57	7(3)	32.60	8(4)	33.45	9(5)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72.10	19(5)	72.91	21(7)	73.34	22(8)	73.93	24(10)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19.34	4(2)	19.34	4(2)	19.34	4(2)	19.34	4(2)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48.88	6(4)	48.94	7(5)	74.89	12(6)	79.05	14(7)
35	기타 운송장비	78.15	6(3)	86.83	8(5)	86.84	9(6)	91.46	10(7)
36	가구 및 기타	14.11	2(2)	14.11	2(2)	14.11	2(2)	14.11	2(2)
	가중평균집중률	29.00	91(5)	35.35	127(10)	42.29	176(20)	46.62	219(30)

자료 : 「한국기업총람」 1992년.

<부표 2-4> 제조업부문 산업별 재벌집중도(1992년)

(단위: %, 개)

CODE	제조업	1~5대재벌 점유율		6~10대재벌 점유율		11~20대재벌 점유율		21~30대재벌 점유율		30대재벌 점유율 합계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15	음식료품	7.85	2(1)	10.97	7(3)	7.42	8(1)	13.24	14(4)	39.48	31(9)
17	섬유	0.00	0	0.00	0	10.54	5(2)	0.00	0	10.54	5(2)
18	의복 및 모피	0.58	1(1)	0.00	0	0.00	0	0.16	1(1)	0.74	2(2)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0.11	2(2)	0.00	0	8.15	1(1)	0.00	0	8.26	3(3)
20	목재 및 나무제품	0.00	0	0.00	0	8.29	2(1)	0.50	1(1)	8.79	3(2)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11.32	1(1)	5.31	2(2)	0.00	0	0.00	0	16.63	3(3)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 제업	8.51	2(2)	3.01	2(2)	4.69	1(1)	0.00	0	16.21	5(5)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 연료 제조업	70.08	3(3)	27.14	2(2)	0.00	0	0.00	0	97.22	5(5)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22.41	13(4)	8.61	4(2)	3.19	8(3)	3.68	8(4)	37.89	33(13)
25	고무 및 플라스틱	0.94	1(1)	0.31	2(1)	21.98	4(2)	0.57	2(2)	23.80	9(6)
26	비금속광물제품	5.84	3(2)	11.82	1(1)	5.51	7(4)	9.48	6(4)	32.65	17(11)
27	제1차금속산업	11.29	5(2)	1.69	3(3)	12.42	5(2)	4.08	1(1)	29.48	14(8)
28	조립금속제품	0.80	1(1)	0.00	0	5.84	4(4)	0.33	1(1)	6.97	6(6)
29	기타기계 및 장비	39.51	9(4)	5.40	5(2)	3.41	3(3)	3.31	4(3)	51.63	21(12)
30	사무,계산,회계용기계	0.00	0	4.40	1(1)	0.00	0	0.00	0	4.40	1(1)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 환장치	25.98	6(3)	0.00	0	5.87	1(1)	1.43	2(2)	33.28	9(6)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 조업	71.76	18(4)	0.76	2(2)	0.42	1(1)	0.68	2(2)	73.62	23(9)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 계	18.93	5(3)	0.00	0	0.00	0	0.00	0	18.93	5(3)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47.35	6(2)	25.39	7(3)	4.11	2(1)	0.00	0	76.85	15(6)
35	기타 운송장비	78.43	4(3)	6.75	2(1)	7.28	3(3)	0.00	0	92.46	9(7)
36	가구 및 기타	12.73	1(1)	0.00	0	0.00	0	0.00	0	12.73	1(1)
37	재생재료가공처리업	-	-	-	-	-	-	-	-	-	-
가중평균 집중도		29.82	83(5)	7.98	40(5)	5.40	55(9)	2.70	42(10)	45.91	220(29)

주 : 기업수 열의 괄호안 숫자는 재벌그룹의 수를 표기.

자료 : 「한국기업총람」 1993년.

<부표 2-5> 제조업부문 산업별 재벌집중도(1993년)

(단위 : %, 개)

CODE	제조업	1~5대재벌 점유율		6~10대재벌 점유율		11~20대재벌 점유율		21~30대재벌 점유율		30대재벌 점유율 합계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15	음식료품	7.85	2(1)	11.07	6(2)	8.89	8(2)	10.78	12(3)	38.59	28(8)
17	섬유	11.41	3(2)	0.00	0	10.14	5(2)	10.07	5(2)	31.62	13(6)
18	의복 및 모피	0.81	1(1)	0.00	0	0.00	0	0.22	1(1)	1.03	2(2)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0.00	0	0.00	0	8.63	1(1)	0.00	0	8.63	1(1)
20	목재 및 나무제품	0.00	0	0.00	0	0.00	0	0.56	1(1)	0.56	1(1)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0.00	0	5.63	2(2)	0.00	0	0.00	0	5.63	2(2)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 제업	8.53	3(2)	3.30	2(2)	4.31	1(1)	0.00	0	16.14	6(5)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 연료 제조업	70.98	3(3)	26.94	2(2)	0.00	0	0.00	0	97.92	5(5)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23.09	15(4)	8.67	3(2)	3.51	9(4)	4.33	10(5)	39.60	37(15)
25	고무 및 플라스틱	1.29	1(1)	0.23	1(1)	23.04	3(1)	0.68	2(2)	25.24	7(5)
26	비금속광물제품	9.28	4(3)	11.71	1(1)	5.42	6(4)	2.82	4(3)	29.23	15(11)
27	제1차금속산업	11.67	4(2)	1.62	3(3)	13.24	6(2)	6.12	2(2)	32.65	15(9)
28	조립금속제품	0.00	0	0.00	0	5.53	4(4)	0.25	1(1)	5.78	5(5)
29	기타기계 및 장비	24.88	6(4)	8.09	5(3)	4.48	3(3)	2.86	2(2)	40.31	16(12)
30	사무,계산,회계용기계	0.00	0	5.25	1(1)	0.51	1(1)	0.00	0	5.76	2(2)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 환장치	25.22	7(3)	0.00	0	5.63	1(1)	1.63	2(2)	32.48	10(6)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 조업	74.86	19(4)	0.58	3(3)	0.39	1(1)	0.64	2(2)	76.47	25(10)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 계	16.79	3(2)	0.00	0	0.00	0	0.00	0	16.79	3(2)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47.23	6(2)	25.60	7(3)	4.45	3(2)	0.00	0	77.28	16(7)
35	기타 운송장비	84.28	4(3)	5.78	1(1)	3.73	2(2)	0.00	0	93.79	7(6)
36	가구 및 기타	15.82	1(1)	0.00	0	0.00	0	0.00	0	15.82	1(1)
37	재생재료가공처리업	-	-	-	-	-	-	-	-	-	-
	가중평균 집중도	32.49	82(5)	8.34	37(5)	5.39	54(9)	3.14	44(10)	49.36	217(29)

주 : 기업수 열의 괄호안 숫자는 재벌그룹의 수를 표기.

자료 : 「한국기업총람」 1994년.

<부표 2-6> 제조업부문 산업별 재벌집중도(1994년)

(단위 : %, 개)

CODE	제조업	1~5대재벌 점유율		6~10대재벌 점유율		11~20대재벌 점유율		21~30대재벌 점유율		30대재벌 점유율 합계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15	음식료품	7.52	2(1)	10.94	5(2)	9.15	9(2)	11.09	11(3)	38.70	27(8)
17	섬유	11.12	3(2)	0.03	1(1)	9.67	5(2)	9.99	6(3)	30.81	15(8)
18	의복 및 모피	0.87	1(1)	0.00	0	0.00	0	0.00	0	0.87	1(1)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0.01	1(1)	0.00	0	10.08	1(1)	0.00	0	10.09	2(2)
20	목재 및 나무제품	0.00	0	0.00	0	0.00	0	0.87	1(1)	0.87	1(1)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0.00	0	4.49	1(1)	0.00	0	0.00	0	4.49	1(1)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 제업	9.86	2(2)	2.91	2(2)	3.72	1(1)	0.00	0	16.49	5(5)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 연료 제조업	63.67	3(3)	27.00	2(2)	0.00	0	0.00	0	90.67	5(5)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25.26	15(4)	9.75	4(2)	3.67	9(5)	4.06	7(4)	42.74	35(15)
25	고무 및 플라스틱	1.34	2(2)	0.26	1(1)	19.48	4(2)	0.90	2(2)	21.98	9(7)
26	비금속광물제품	5.36	2(2)	11.82	1(1)	12.48	7(4)	2.96	5(4)	32.62	15(11)
27	제1차금속산업	12.15	4(2)	1.98	3(3)	12.24	6(2)	7.36	2(2)	33.73	15(9)
28	조립금속제품	0.00	0	0.00	0	4.47	4(3)	0.16	1(1)	4.63	5(4)
29	기타기계 및 장비	23.34	6(4)	6.41	5(3)	4.05	5(4)	2.90	2(2)	36.70	18(13)
30	사무,계산,회계용기계	0.00	0	.3.95	1(1)	0.69	1(1)	0.00	0	4.64	2(2)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 환장치	30.80	8(4)	0.00	0	7.08	1(1)	1.88	2(2)	39.76	11(7)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 조업	75.82	18(4)	0.50	3(3)	0.40	1(1)	1.24	5(3)	77.96	27(11)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 계	14.45	2(2)	0.00	0	0.00	0	0.00	0	14.45	2(2)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41.09	6(2)	24.96	8(3)	4.95	4(2)	0.19	1(1)	71.19	19(8)
35	기타 운송장비	75.83	3(2)	6.42	1(1)	8.66	2(2)	0.05	1(1)	90.96	7(6)
36	가구 및 기타	12.75	1(1)	0.00	0	0.00	0	0.00	0	12.75	1(1)
37	재생재료가공처리업	-	-	-	-	-	-	-	-	-	-
	가중평균 집중도	31.60	79(5)	8.28	38(5)	5.61	60(9)	3.34	46(10)	49.59	223(29)

주 : 기업수 열의 괄호안 숫자는 재벌그룹의 수를 표기.

자료 : 「한국기업총람」 1995년.

<부표 2-7> 제조업부문 산업별 재벌집중도(1995년)

CODE	제 조 업	5대재벌점유율		10대재벌점유율		20대재벌점유율		30대재벌점유율	
		1-5대비중 (%)	기업수 (재벌수)	1-10대비중 (%)	기업수 (재벌수)	1-20대비중 (%)	기업수 (재벌수)	1-30대비중 (%)	기업수 (재벌수)
15	음식료품	7.46	2(1)	17.64	7(3)	26.55	16(5)	33.62	22(7)
17	섬유	8.87	2(2)	8.91	3(3)	19.08	9(5)	26.20	11(7)
18	의복 및 모피	-	-	-	-	-	-	-	-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0.00	0	0.00	0	0.00	0	10.00	1(1)
20	목재 및 나무제품	0.00	0	0.00	0	11.19	1(1)	11.19	1(1)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0.00	0	4.21	2(1)	4.21	3(2)	19.75	6(3)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1.27	1(1)	4.33	3(3)	7.69	4(4)	7.69	4(4)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67.71	3(3)	97.59	5(5)	97.59	5(5)	97.59	5(5)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24.20	13(4)	36.03	17(6)	43.11	28(11)	47.05	37(15)
25	고무 및 플라스틱	1.58	2(2)	1.58	2(2)	24.09	7(5)	24.76	8(6)
26	비금속광물제품	7.13	3(2)	19.00	4(3)	26.08	11(8)	33.93	15(11)
27	제1차금속산업	12.57	4(2)	14.82	7(5)	25.84	13(7)	33.21	15(9)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3.65	1(1)	3.65	1(1)	7.62	5(4)	8.64	7(6)
29	기타기계 및 장비	27.68	4(3)	33.72	9(6)	37.33	13(10)	39.83	16(12)
30	사무,계산,회계용기계	18.86	1(1)	21.84	2(2)	22.15	3(3)	22.15	3(3)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9.48	5(3)	29.48	5(3)	38.03	8(6)	38.03	8(6)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77.07	16(4)	77.58	20(7)	78.04	22(9)	79.10	29(12)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17.25	4(3)	17.25	4(3)	17.25	4(3)	17.25	4(3)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45.66	6(2)	70.33	13(5)	75.00	17(7)	75.28	18(8)
35	기타 운송장비	84.35	4(2)	85.07	5(3)	94.04	7(5)	94.07	8(6)
36	가구 및 기타	13.75	1(1)	13.75	1(1)	13.75	1(1)	13.75	1(1)
37	재생재료가공처리업	0.00	0	0.00	0	12.91	1(1)	12.91	1(1)
	가중평균집중률	34.24	72(5)	42.52	110(10)	47.95	178(19)	51.26	220(27)

자료 : 「한국기업총람」 1996년

<부표 3-1> 사회적 비용 추정 자료(1992년)

(단위:억원)

CODE	제 조 업	HHI	세전당기순이익	세후당기순이익	광고선전비	접대비
15	음식료품	0.0178	1,777	601	4,914	538
16	담배	-	-63	-63	0	1
17	섬유	0.0208	3,017	1,489	792	320
18	의복 및 모피	0.0158	1,325	801	892	90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0.0261	-679	-958	619	96
20	목재 및 나무제품	0.0713	-99	-167	59	29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0.0288	908	533	264	131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0.0317	-655	-1,037	540	95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0.2518	1,135	520	366	69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0.0239	2,519	-3	4,900	823
25	고무 및 플라스틱	0.0714	798	297	397	142
26	비금속광물제품	0.0310	3,386	1,907	299	252
27	제1차금속산업	0.1336	3,054	2,051	154	279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0.0095	498,	109	193	197
29	기타기계 및 장비	0.0498	1,457	864	421	355
30	사무,계산,회계용기계	0.0726	194	75	144	58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745	2,821	2,353	193	192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0.1082	4,410	3,185	2,513	373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0.0380	129	17	179	50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0.1336	-331	-775	1,169	252
35	기타 운송장비	0.2514	5,803	4,753	150	97
36	가구 및 기타	0.0375	170	-68	595	68
37	재생재료가공처리업	-	9	6	0	0
	총 합	0.0854*	31,583	16,490	19,753	4,507

주 : *는 허핀달지수의 가중평균집중률

<부표 3-2> 사회적 비용 추정 자료(1993년)

(단위:억원)

CODE	제 조 업	HHI	세전당기순이익	세후당기순이익	광고선전비	접대비
15	음식료품	0.0183	3,217	1,740	5,327	544
16	담배	-	-24	-24	0	0
17	섬유	0.0202	1,798	511	728	304
18	의복 및 모피	0.0191	1,344	713	992	90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0.0305	-363	-716	618	83
20	목재 및 나무제품	0.0871	455	292	68	27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0.0316	138	-263	325	130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0.0340	515	-52	706	98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0.2584	1,968	1,108	547	74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0.0247	2,867	9	5,070	851
25	고무 및 플라스틱	0.0844	1,004	522	428	129
26	비금속광물제품	0.0330	3,095	1,491	344	253
27	제1차금속산업	0.1400	6,571	4870	215	307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0.0111	675	230	143	172
29	기타기계 및 장비	0.0305	608	4	382	253
30	사무,계산,회계용기계	0.0725	686	476	171	61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868	4,445	3,478	261	179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0.1178	6,871	5,099	2,728	383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0.0427	82	-28	174	42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0.1357	355	-364	1,232	257
35	기타 운송장비	0.2465	5,537	4,626	184	91
36	가구 및 기타	0.0489	587	345	627	68
37	재생재료가공처리업	-	6	3	0	1
	총 합	0.0924*	42,437	24,070	21,270	4,397

주 : *는 허핀달지수의 가중평균집중률

<부표 3-3> 사회적 비용 추정 자료(1994년)

(단위:억원)

CODE	제 조 업	HHI	세전당기순이익	세후당기순이익	광고선전비	접대비
15	음식료품	0.0175	3,431	1,406	6,744	670
16	담배	-	0	0	-	-
17	섬유	0.0203	4,640	2,960	813	380
18	의복 및 모피	0.0223	1,881	1,110	1,176	116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0.0322	640	302	709	80
20	목재 및 나무제품	0.1136	50	-45	49	27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0.0334	1,255	595	327	154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0.0394	2,033	1,082	1,010	119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0.2579	2,772	1,623	790	84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0.0262	8,366	5,554	5,681	996
25	고무 및 플라스틱	0.0702	514	-70	382	159
26	비금속광물제품	0.0318	3,521	2,006	268	293
27	제1차금속산업	0.1256	8,008	5,784	259	361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0.0110	1,778	1,125	168	206
29	기타기계 및 장비	0.0458	4,899	3,327	767	349
30	사무,계산,회계용기계	0.0785	1,157	792	308	102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502	1,553	1,053	263	211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0.1292	23,661	19,122	4,110	1,744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0.0376	190	50	200	53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0.1286	3,529	2,150	1,865	358
35	기타 운송장비	0.2882	1,594	836	217	112
36	가구 및 기타	0.0354	-108	-499	1,004	95
37	재생재료가공처리업	-	-35	-39	0	2
	총 합	0.0911*	75,329	50,224	27,110	6,671

주 : *는 허핀달지수의 가중평균집중률

<부표 3-4> 사회적 비용 추정 자료(1995년)

(단위:억원)

CODE	제 조 업	HHI	세전당기순이익	세후당기순이익	광고선전비	접대비
15	음식료품	0.0170	639	-1,068	7,360	798
16	담배	-	0	0	-	-
17	섬유	0.0228	540	-800	916	413
18	의복 및 모피	0.0253	2,541	1,608	1,562	156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0.0329	1,012	583	915	94
20	목재 및 나무제품	0.1166	-54	-152	45	29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0.0328	2,662	1,963	416	182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0.0347	681	-308	1,131	166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0.2477	4,888	3,580	716	73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0.0246	13,796	10,466	6,321	1,182
25	고무 및 플라스틱	0.0751	797	269	376	175
26	비금속광물제품	0.0321	2,910	1,747	319	345
27	제1차금속산업	0.1109	14,098	10,791	399	414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0.0111	1,635	977	137	240
29	기타기계 및 장비	0.0872	6,194	4,126	786	406
30	사무,계산,회계용기계	0.0874	1,380	929	691	117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609	2,171	1,464	299	272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0.1457	56,502	46,351	8,217	582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0.0376	257	106	234	63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0.1218	4,606	3,079	2,381	432
35	기타 운송장비	0.2693	748	300	265	146
36	가구 및 기타	0.0395	125	-171	983	98
37	재생재료가공처리업	-	-19	-20	0	2
	총 합	0.0949*	118,109	85,820	34,469	6,385

주 : *는 허핀달지수의 가중평균집중률

<부표 3-5> 제조업부문 산업별 사회적 비용과 시장비효율도 (기본모형)

(단위:억원, %)

CODE	제조업구분	H/2				H(1+H)/2			
		1992	1993	1994	1995	1992	1993	1994	1995
15	음식료품	16 (0.02)	29 (0.03)	30 (0.03)	5 (0.00)	28 (0.03)	51 (0.06)	52 (0.05)	9 (0.01)
17	섬유	31 (0.04)	18 (0.02)	47 (0.06)	6 (0.01)	46 (0.06)	27 (0.03)	70 (0.08)	9 (0.01)
18	의복 및 모피	10 (0.04)	13 (0.03)	21 (0.05)	32 (0.06)	8 (0.03)	9 (0.02)	15 (0.04)	23 (0.04)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	-	10 (0.04)	17 (0.08)	-	-	16 (0.07)	26 (0.12)
20	목재 및 나무제품	-	20 (0.19)	3 (0.02)	-	-	28 (0.27)	4 (0.03)	-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13 (0.06)	2 (0.01)	21 (0.07)	44 (0.12)	17 (0.07)	3 (0.01)	27 (0.09)	57 (0.15)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9 (0.03)	40 (0.11)	12 (0.03)	-	15 (0.05)	67 (0.19)	20 (0.05)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43 (0.44)	254 (0.77)	357 (0.89)	605 (1.12)	203 (0.63)	361 (1.10)	508 (1.26)	860 (1.60)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30 (0.03)	35 (0.03)	110 (0.09)	170 (0.11)	42 (0.04)	49 (0.05)	151 (0.12)	234 (0.16)
25	고무 및 플라스틱	28 (0.08)	42 (0.10)	18 (0.04)	30 (0.05)	39 (0.11)	58 (0.14)	25 (0.05)	41 (0.06)
26	비금속광물제품	52 (0.10)	51 (0.08)	56 (0.09)	47 (0.06)	88 (0.16)	86 (0.14)	94 (0.15)	78 (0.10)
27	제1차금속산업	204 (0.29)	460 (0.62)	503 (0.57)	782 (0.72)	461 (0.65)	1,040 (1.40)	1,137 (1.29)	1,767 (1.62)
28	조립금속제품	2 (0.01)	4 (0.01)	10 (0.01)	9 (0.01)	7 (0.02)	11 (0.02)	29 (0.04)	27 (0.04)
29	기타기계 및 장비	36 (0.05)	9 (0.01)	112 (0.11)	270 (0.21)	70 (0.09)	18 (0.02)	217 (0.21)	521 (0.40)
30	사무,계산,회계용기계	7 (0.12)	25 (0.25)	45 (0.36)	60 (0.37)	14 (0.23)	48 (0.48)	88 (0.69)	116 (0.71)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05 (0.33)	193 (0.56)	39 (0.10)	66 (0.13)	200 (0.63)	367 (1.07)	74 (0.18)	126 (0.25)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39 (0.27)	405 (0.35)	1,529 (0.95)	4,116 (1.65)	453 (0.51)	769 (0.67)	2,904 (1.81)	7,821 (3.13)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2 (0.02)	2 (0.01)	4 (0.02)	5 (0.03)	3 (0.03)	2 (0.02)	4 (0.03)	5 (0.03)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	24 (0.03)	227 (0.23)	281 (0.21)	-	41 (0.05)	386 (0.38)	477 (0.36)
35	기타 운송장비	729 (2.09)	683 (2.15)	230 (0.48)	101 (0.20)	1,240 (3.55)	1,161 (3.65)	390 (0.82)	171 (0.35)
36	가구 및 기타	3 (0.01)	14 (0.05)	-	2 (0.01)	4 (0.02)	20 (0.07)	-	3 (0.01)
산업별로 본		1,653	2,293	3,411	6,660	2,922	4,162	6,258	12,392
부가가치액의 가중평균		(0.18)	(0.22)	(0.27)	(0.42)	(0.31)	(0.39)	(0.49)	(0.79)

주 : 시장비효율도=사회적 비용/각 산업 부가가치

자료 : 부가가치-「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기업총람」

<부표 3-6> 제조업부문 산업별 사회적 비용과 시장비효율도 (수정모형)

(단위:억원, %)

CODE	제조업구분	[(+A)H]/2				[(+A)H(1+ $\frac{1}{n}$)]/2			
		1992	1993	1994	1995	1992	1993	1994	1995
15	음식료품	64 (0.08)	83 (0.10)	95 (0.10)	75 (0.07)	112 (0.14)	145 (0.17)	165 (0.17)	130 (0.12)
17	섬유	43 (0.06)	29 (0.04)	59 (0.07)	21 (0.02)	64 (0.09)	42 (0.05)	88 (0.11)	32 (0.04)
18	의복 및 모피	18 (0.06)	23 (0.06)	35 (0.08)	54 (0.10)	13 (0.04)	17 (0.04)	25 (0.06)	39 (0.07)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	5 (0.02)	23 (0.10)	33 (0.15)	1 (0.00)	8 (0.04)	37 (0.16)	53 (0.24)
20	목재 및 나무제품	-	24 (0.22)	7 (0.06)	1 (0.01)	-	34 (0.32)	10 (0.09)	2 (0.01)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19 (0.08)	9 (0.04)	29 (0.09)	53 (0.15)	24 (0.10)	12 (0.05)	38 (0.12)	70 (0.19)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22 (0.07)	62 (0.18)	34 (0.08)	-	38 (0.12)	105 (0.30)	58 (0.14)
23	코르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98 (0.61)	334 (1.02)	470 (1.17)	703 (1.31)	281 (0.87)	475 (1.45)	668 (1.66)	998 (1.85)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98 (0.11)	109 (0.10)	197 (0.16)	262 (0.18)	136 (0.15)	150 (0.14)	272 (0.21)	362 (0.24)
25	고무 및 플라스틱	48 (0.13)	66 (0.16)	37 (0.08)	51 (0.08)	65 (0.18)	90 (0.21)	50 (0.10)	69 (0.11)
26	비금속광물제품	61 (0.11)	61 (0.10)	65 (0.10)	57 (0.07)	103 (0.19)	102 (0.17)	109 (0.17)	96 (0.13)
27	제1차금속산업	233 (0.33)	497 (0.67)	542 (0.62)	827 (0.76)	526 (0.75)	1,122 (1.51)	1,225 (1.39)	1,869 (1.71)
28	조립금속제품	4 (0.01)	5 (0.01)	12 (0.02)	11 (0.01)	12 (0.03)	16 (0.03)	35 (0.05)	33 (0.04)
29	기타기계 및 장비	56 (0.07)	19 (0.02)	138 (0.13)	322 (0.25)	107 (0.14)	37 (0.04)	266 (0.26)	622 (0.48)
30	사무,계산,회계용기계	14 (0.24)	33 (0.33)	62 (0.48)	96 (0.58)	28 (0.47)	64 (0.65)	119 (0.93)	185 (1.13)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19 (0.38)	212 (0.62)	51 (0.13)	83 (0.16)	227 (0.72)	403 (1.18)	97 (0.24)	159 (0.31)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395 (0.45)	588 (0.51)	1,907 (1.19)	4,757 (1.90)	750 (0.85)	1,117 (0.98)	3,623 (2.26)	9,039 (3.62)
33	의료,정밀,광학기계 및 시계	7 (0.07)	6 (0.05)	8 (0.06)	10 (0.06)	8 (0.08)	7 (0.06)	9 (0.07)	12 (0.07)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73 (0.10)	125 (0.15)	370 (0.37)	452 (0.35)	124 (0.17)	213 (0.25)	629 (0.63)	768 (0.59)
35	기타 운송장비	760 (2.18)	717 (2.26)	277 (0.58)	156 (0.32)	1,293 (3.70)	1,219 (3.84)	471 (0.99)	265 (0.54)
36	가구 및 기타	16 (0.06)	31 (0.11)	18 (0.05)	24 (0.07)	22 (0.08)	43 (0.15)	24 (0.07)	33 (0.09)
산업별로 본 부가가치액의 가중평균		2226 (0.24)	3,000 (0.28)	4,463 (0.35)	8,084 (0.52)	3,895 (0.41)	5,354 (0.50)	8,063 (0.63)	14,890 (0.95)

주 : 시장비효율도=사회적 비용/각 산업 부가가치

자료 : 부가가치-「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기업총람」

<부표 3-7> 제조업부문 산업별 사회적 비용과 시장비효율도 (X-비효율모형)

(단위: 억원, %)

CODE	제조업구분	[(+A)H]/2+A				[(+A)H(1+ α)]/2+A			
		1992	1993	1994	1995	1992	1993	1994	1995
15	음식료품	5,516 (6.89)	5,954 (6.81)	7,509 (7.55)	8,233 (7.56)	5,564 (6.95)	6,016 (6.88)	7,579 (7.62)	8,288 (7.61)
17	섬유	1,155 (1.60)	1,061 (1.37)	1,252 (1.52)	1,350 (1.53)	1,176 (1.63)	1,074 (1.39)	1,281 (1.56)	1,361 (1.54)
18	의복 및 모피	1,000 (3.40)	1,105 (2.87)	1,327 (3.09)	1,772 (3.37)	995 (3.38)	1,099 (2.85)	1,317 (3.07)	1,757 (3.35)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715 (2.74)	706 (3.08)	812 (3.47)	1,042 (4.82)	716 (2.74)	709 (3.09)	826 (3.53)	1,062 (4.91)
20	목재 및 나무제품	88 (1.02)	119 (1.12)	83 (0.71)	75 (0.58)	87 (1.02)	129 (1.21)	86 (0.73)	76 (0.58)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414 (1.77)	464 (1.84)	510 (1.64)	651 (1.78)	419 (1.79)	467 (1.85)	519 (1.67)	668 (1.82)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635 (2.73)	826 (2.65)	1,191 (3.39)	1,331 (3.20)	634 (2.73)	842 (2.70)	1,234 (3.52)	1,355 (3.26)
23	코르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633 (1.96)	955 (2.91)	1,344 (3.34)	1,492 (2.77)	716 (2.21)	1,096 (3.34)	1,542 (3.83)	1,787 (3.32)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5,821 (6.30)	6,030 (5.62)	6,874 (5.43)	7,765 (5.23)	5,859 (6.34)	6,071 (5.66)	6,949 (5.49)	7,865 (5.29)
25	고무 및 플라스틱	587 (1.59)	623 (1.47)	578 (1.18)	602 (0.96)	604 (1.64)	647 (1.52)	591 (1.21)	620 (0.99)
26	비금속광물제품	612 (1.12)	658 (1.09)	626 (0.97)	721 (0.94)	654 (1.20)	699 (1.16)	670 (1.04)	760 (0.99)
27	제1차금속산업	666 (0.94)	1,019 (1.37)	1,162 (1.32)	1,640 (1.50)	959 (1.36)	1,644 (2.21)	1,845 (2.10)	2,682 (2.46)
28	조립금속제품	394 (0.94)	320 (0.62)	386 (0.58)	388 (0.52)	402 (0.96)	331 (0.64)	409 (0.61)	410 (0.55)
29	기타기계 및 장비	832 (1.10)	654 (0.76)	1,254 (1.21)	1,514 (1.17)	883 (1.17)	672 (0.78)	1,382 (1.33)	1,814 (1.41)
30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216 (3.65)	265 (2.67)	472 (3.70)	904 (5.53)	230 (3.87)	296 (2.98)	529 (4.15)	993 (6.07)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504 (1.60)	652 (1.90)	525 (1.31)	654 (1.29)	612 (1.94)	843 (2.46)	571 (1.42)	730 (1.44)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281 (3.71)	3,699 (3.24)	7,761 (4.84)	13,556 (5.42)	3,636 (4.11)	4,228 (3.70)	9,477 (5.91)	17,838 (7.14)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36 (2.40)	222 (1.89)	261 (1.82)	307 (1.76)	237 (2.41)	223 (1.90)	262 (1.83)	309 (1.77)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94 (2.03)	1,614 (1.92)	2,593 (2.58)	3,265 (2.50)	1,545 (2.10)	1,702 (2.02)	2,852 (2.84)	3,581 (2.74)
35	기타 운송장비	1,007 (2.88)	992 (3.12)	606 (1.28)	567 (1.15)	1,540 (4.41)	1,494 (4.70)	800 (1.69)	676 (1.37)
36	가구 및 기타	679 (2.53)	726 (2.52)	1,117 (3.39)	1,105 (3.08)	685 (2.55)	738 (2.56)	1,123 (3.41)	1,114 (3.11)
산업별로 본		26,485	28,666	38,242	48,936	28,152	31,020	41,842	55,742
부가가치액의 가중평균		(2.82)	(2.70)	(3.00)	(3.12)	(3.00)	(2.92)	(3.29)	(3.55)

주 : 시장비효율도=사회적 비용/각 산업 부가가치

자료 : 부가가치-「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기업총람」

<부표 3-8> 제조업부문 산업별 사회적 비용과 시장비효율도 (지대추구모형)

(단위: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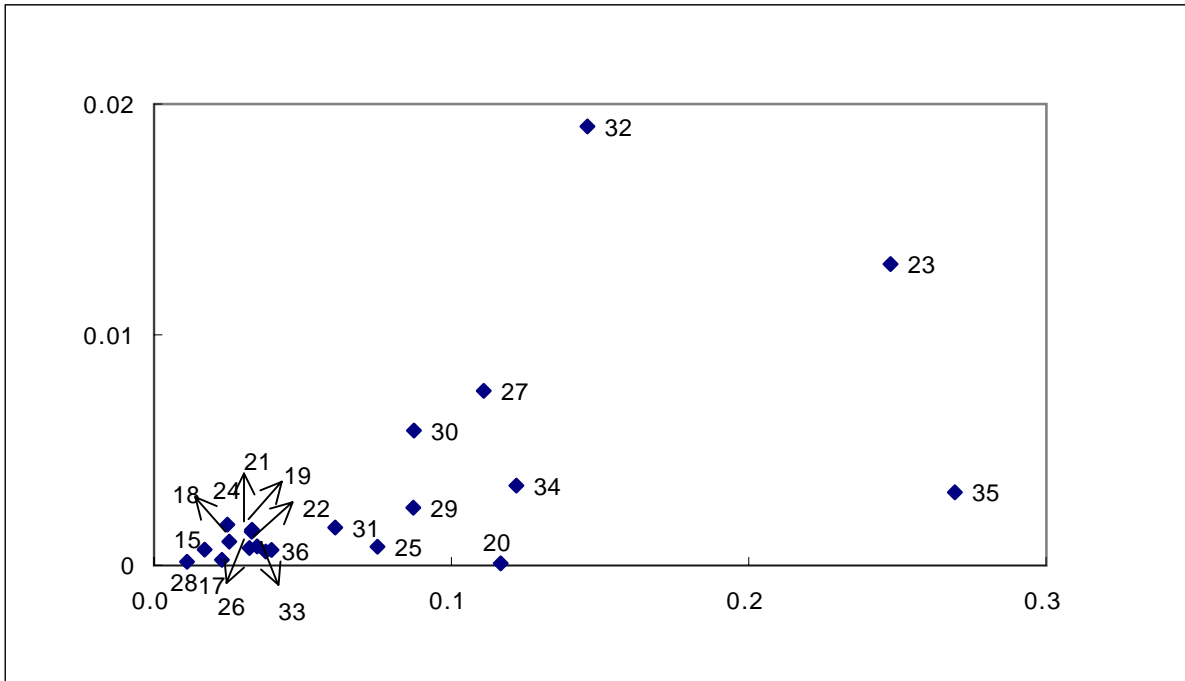
CODE	제조업	[(+A)H/2+A+Π']				[(+A)H(1+β)/2+A+Π']			
		1992	1993	1994	1995	1992	1993	1994	1995
15	음식료품	6,117 (7.64)	7,694 (8.80)	8,915 (8.96)	7,165 (6.58)	6,165 (7.70)	7,756 (8.87)	8,985 (9.03)	7,220 (6.63)
17	섬유	2,644 (3.66)	1,572 (2.03)	4,212 (5.13)	550 (0.62)	2,665 (3.69)	1,585 (2.05)	4,241 (5.16)	561 (0.64)
18	의복 및 모피	1,801 (6.12)	1,818 (4.72)	2,437 (5.67)	3,380 (6.44)	1,796 (6.10)	1,812 (4.70)	2,427 (5.65)	3,365 (6.41)
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	-	1,114 (4.76)	1,625 (7.52)	-	-	1,128 (4.82)	1,645 (7.61)
20	목재 및 나무제품	-	411 (3.86)	38 (0.32)	-	-	421 (3.95)	41 (0.35)	-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947 (4.05)	201 (0.80)	1,105 (3.56)	2,614 (7.13)	952 (4.07)	204 (0.81)	1,114 (3.58)	2,631 (7.17)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774 (2.48)	2,273 (6.48)	1,023 (2.46)	-	790 (2.53)	2,316 (6.60)	1,047 (2.51)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153 (3.57)	2,063 (6.28)	2,967 (7.36)	5,072 (9.42)	1,236 (3.82)	2,204 (6.71)	3,165 (7.85)	5,367 (9.97)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5,818 (6.30)	6,039 (5.63)	12,428 (9.82)	18,231 (12.27)	5,856 (6.34)	6,080 (5.67)	12,503 (9.88)	18,331 (12.34)
25	고무 및 플라스틱	884 (2.40)	1,145 (2.70)	508 (1.04)	871 (1.39)	901 (2.44)	1,169 (2.76)	521 (1.06)	889 (1.41)
26	비금속광물제품	2,519 (4.63)	2,149 (3.57)	2,632 (4.07)	2,468 (3.20)	2,561 (4.70)	2,190 (3.63)	2,676 (4.14)	2,507 (3.25)
27	제1차금속산업	2,717 (3.85)	5,889 (7.92)	6,946 (7.89)	12,431 (11.38)	3,010 (4.26)	6,514 (8.76)	7,629 (8.67)	13,473 (12.34)
28	조립금속제품	503 (1.20)	550 (1.07)	1,511 (2.26)	1,365 (1.83)	511 (1.22)	561 (1.09)	1,534 (2.29)	1,387 (1.86)
29	기타기계 및 장비	1,696 (2.24)	658 (0.76)	4,581 (4.42)	5,640 (4.38)	1,747 (2.31)	676 (0.78)	4,709 (4.55)	5,940 (4.61)
30	사무,계산,회계용기계	291 (4.91)	741 (7.45)	1,264 (9.92)	1,833 (11.21)	305 (5.14)	772 (7.76)	1,321 (10.37)	1,922 (11.75)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857 (9.06)	4,130 (12.05)	1,578 (3.94)	2,118 (4.17)	2,965 (9.41)	4,321 (12.61)	1,624 (4.05)	2,194 (4.32)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6,466 (7.31)	8,798 (7.70)	26,883 (16.77)	59,907 (23.97)	6,821 (7.71)	9,327 (8.16)	28,599 (17.84)	64,189 (25.68)
33	의료,정밀,광학기계 및 시계	253 (2.57)	194 (1.65)	311 (2.17)	413 (2.36)	254 (2.58)	195 (1.66)	312 (2.18)	415 (2.37)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719 (0.98)	1,250 (1.49)	4,743 (4.72)	6,344 (4.85)	770 (1.05)	1,338 (1.59)	5,002 (4.97)	6,660 (5.09)
35	기타 운송장비	5,760 (16.48)	5,618 (17.68)	1,442 (3.04)	867 (1.76)	6,293 (18.01)	6,120 (19.26)	1,636 (3.45)	976 (1.98)
36	가구 및 기타	611 (2.27)	1,071 (3.71)	618 (1.88)	934 (2.61)	617 (2.30)	1,083 (3.76)	624 (1.90)	943 (2.63)
산업별로 본 부가가치액의 가중평균		43,756 (4.66)	52,766 (4.96)	88,505 (6.95)	134,852 (8.60)	45,424 (4.84)	55,117 (5.19)	92,105 (7.23)	141,658 (9.03)

주 : 시장비효율도=사회적 비용/각 산업 부가가치

자료 : 부가가치-「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기업총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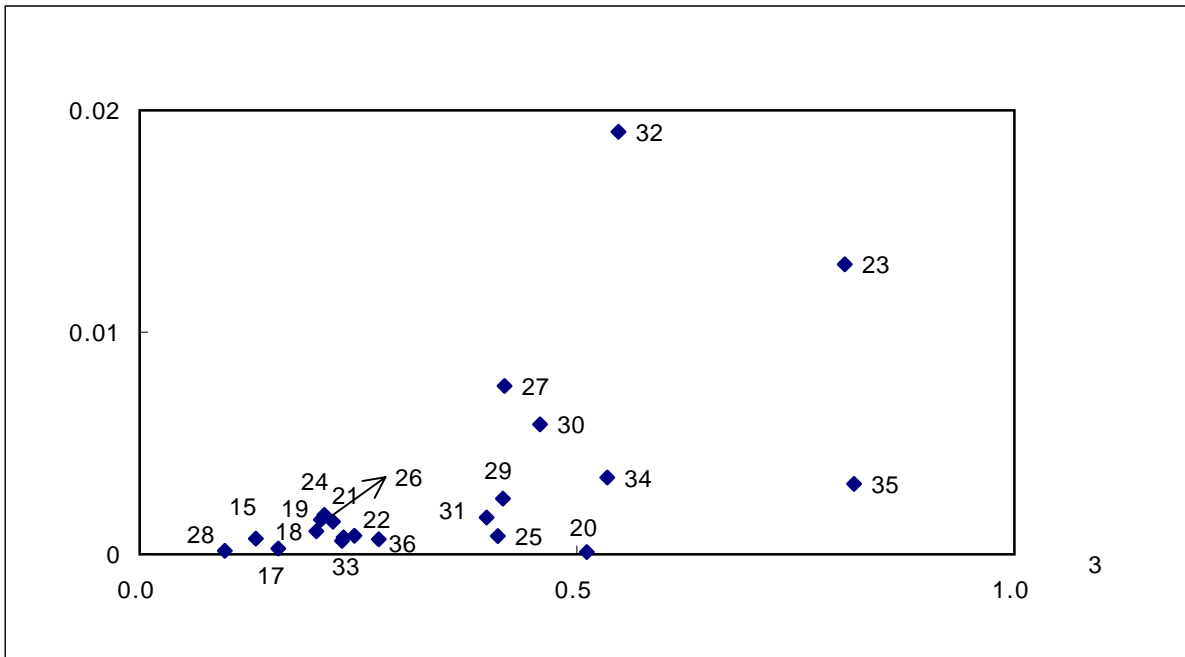
< 3 - 9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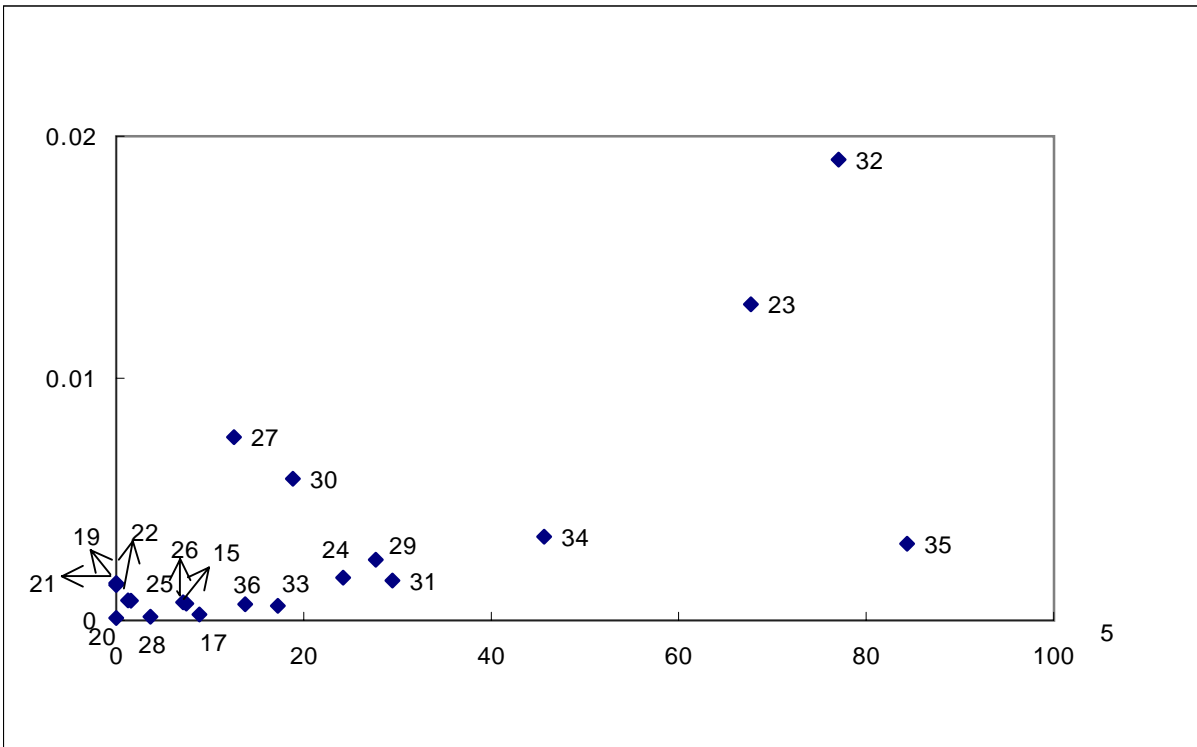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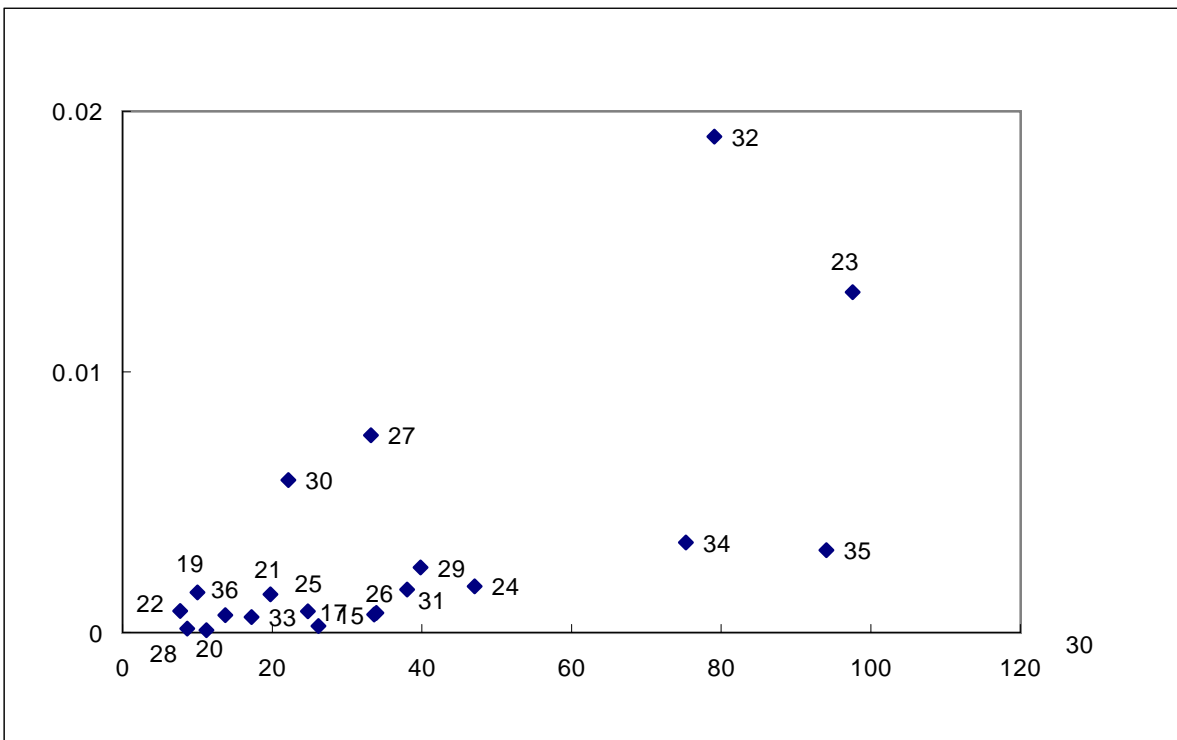
3



C. 5



D.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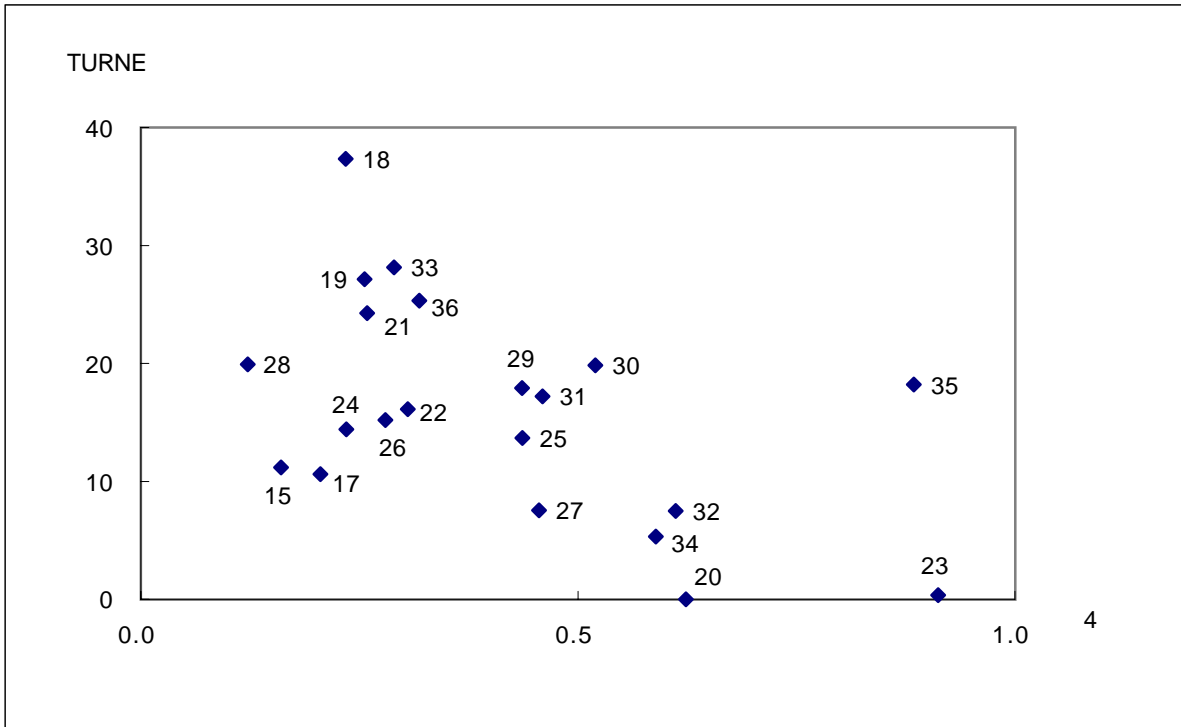
<부표 4-1> 산업별 이동지표

CODE	제조업	진입·탈락기업수		업체변경수		점유율 불안정지수(%)				점유율 변화패턴지수	
		탈락	진입	탈락	진입	EN	EX	TURNE	TURNC	CORSH	REGSH
15	음식료품	67/251	78/260	2	-	12.68	9.70	11.19	7.78	0.9859	0.9504
17	섬유	106/338	131/362	5	4	11.29	9.95	10.62	10.34	0.9756	1.0086
18	의복 및 모피	58/124	59/123	4	2	41.88	32.79	37.34	12.58	0.7911	0.9622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65/130	15/78	4	2	11.77	42.50	27.14	15.40	0.9478	1.3557
20	목재 및 나무제품	-	-	-	-	-	-	-	14.84	0.9371	1.4374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5/124	48/137	2	2	25.31	23.23	24.27	9.05	0.9436	0.9460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86	39/104	3	3	17.02	15.20	16.11	12.11	0.9172	1.0016
23	코르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	5/18	-	1	0.70	-	0.35	5.04	0.9946	0.9661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86/370	144/435	8	15	16.10	12.73	14.42	14.48	0.9467	0.8944
25	고무 및 플라스틱	51/146	42/126	18	7	12.62	14.76	13.69	7.43	0.9964	1.0841
26	비금속광물제품	89/238	115/262	5	3	13.85	16.57	15.21	10.33	0.9720	0.9962
27	제1차금속산업	50/182	71/213	10	20	8.45	6.64	7.55	7.35	0.9975	0.8950
28	조립금속제품	65/229	63/205	36	14	21.71	18.15	19.93	14.11	0.9135	1.4214
29	기타기계 및 장비	88/265	125/296	20	14	18.65	17.16	17.91	12.98	0.9644	1.8664
30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13/35	21/47	1	5	23.19	16.49	19.84	16.77	0.9604	0.6692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51/148	58/157	12	14	14.10	20.31	17.21	9.52	0.9676	1.1988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82/223	105/241	14	9	7.14	7.83	7.49	15.47	0.9635	1.0766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8/51	19/53	3	4	29.98	26.31	28.15	27.87	0.7342	0.9041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41/176	87/248	3	29	6.73	3.91	5.32	8.53	0.9973	0.8406
35	기타운송장비	13/27	11/27	1	3	2.98	33.42	18.20	6.39	0.9907	0.9746
36	가구 및 기타	45/98	41/94	5	5	22.36	28.26	25.31	7.47	0.9809	1.0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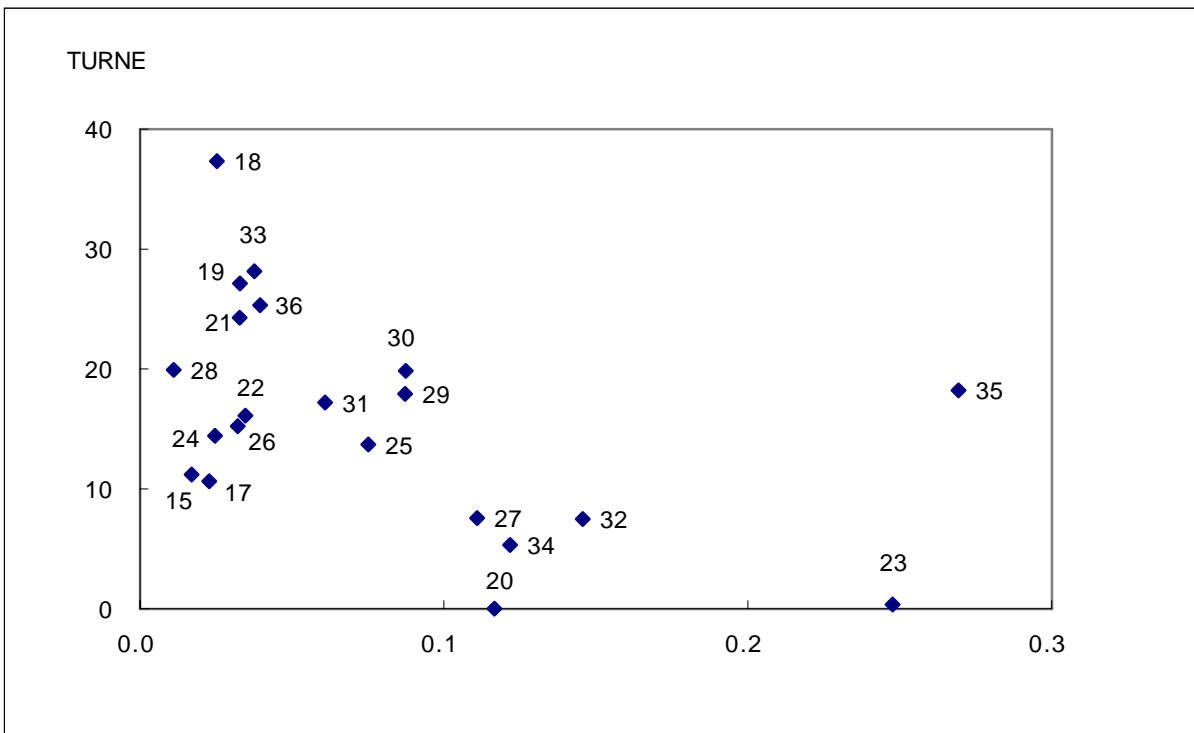
자료 : 「한국기업총람」 각년도.

< 4 - 2 > / (TUR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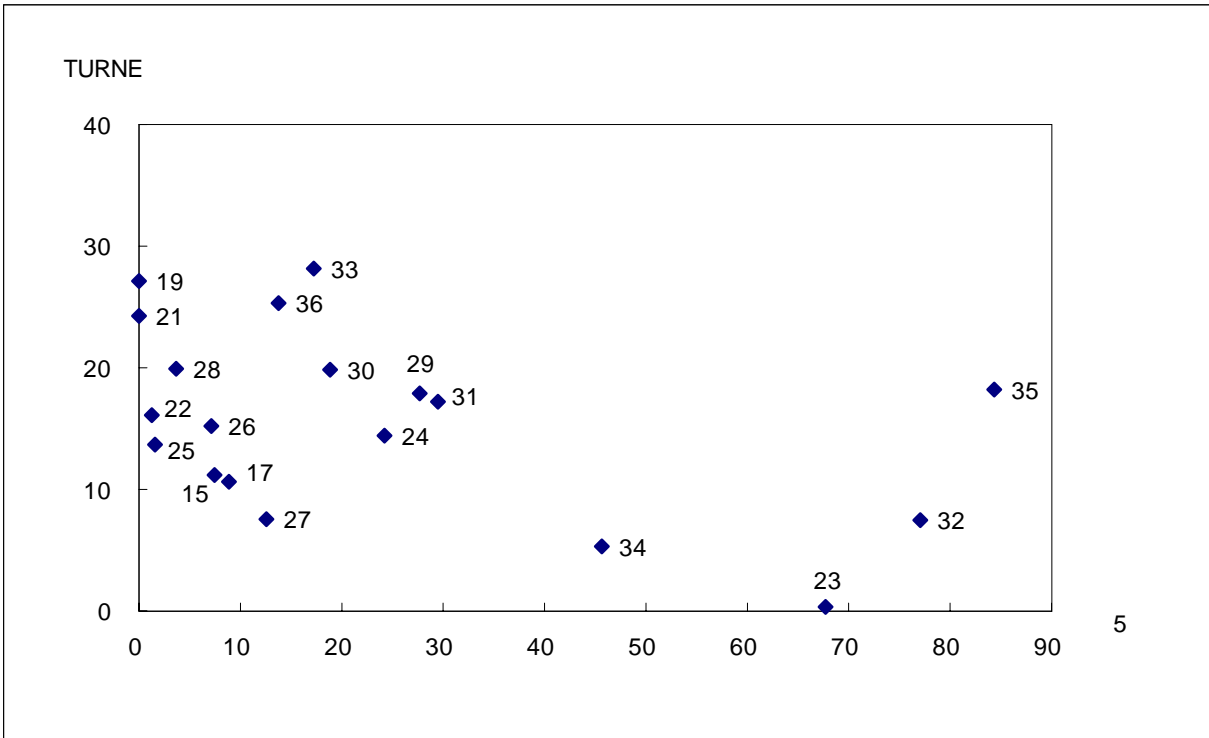
A. TURN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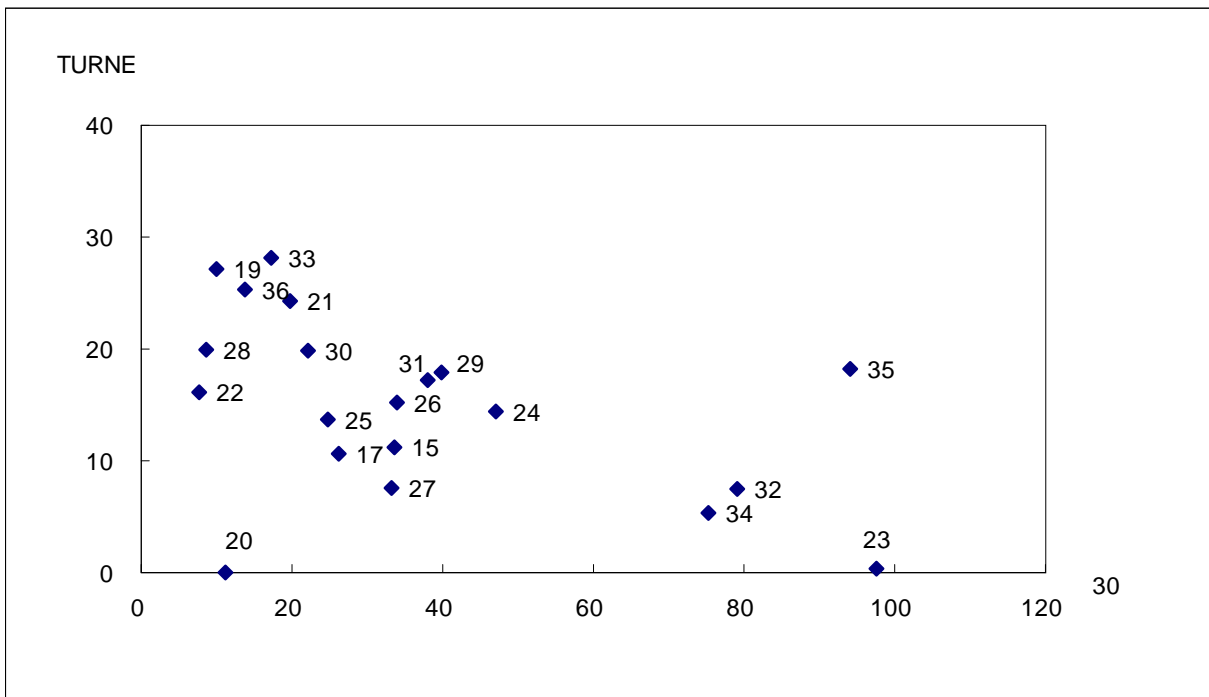
B. TURNE



C. TURN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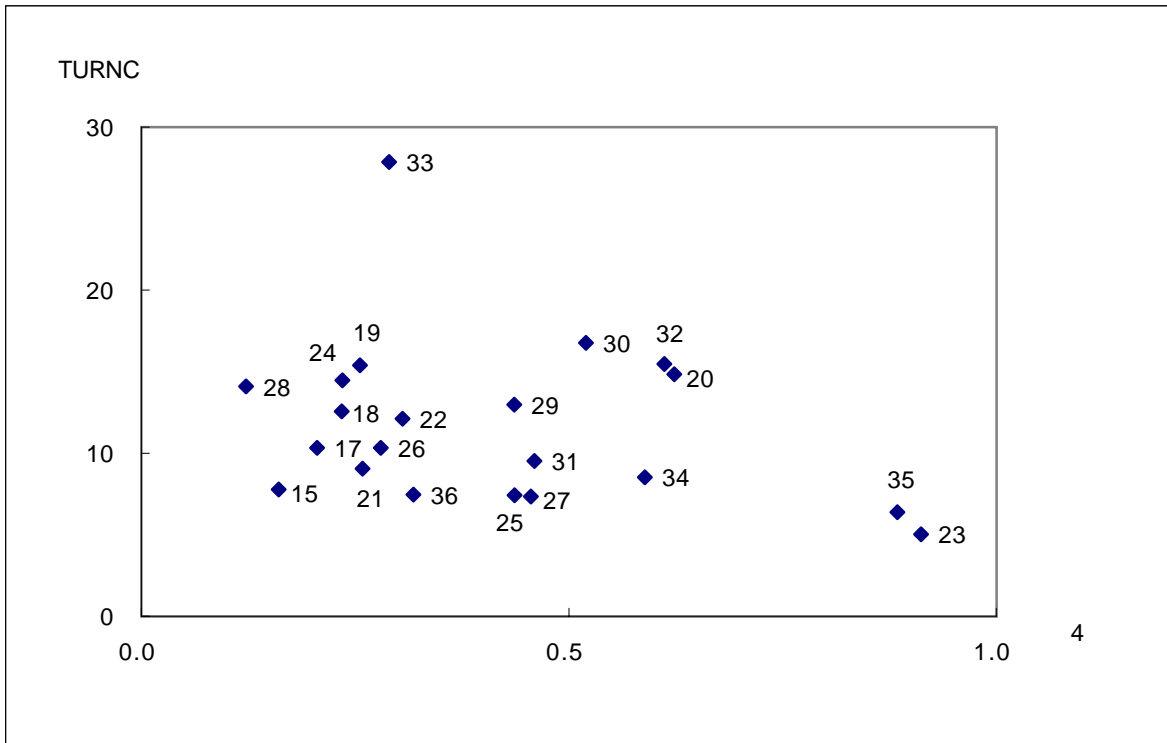
D. TURNE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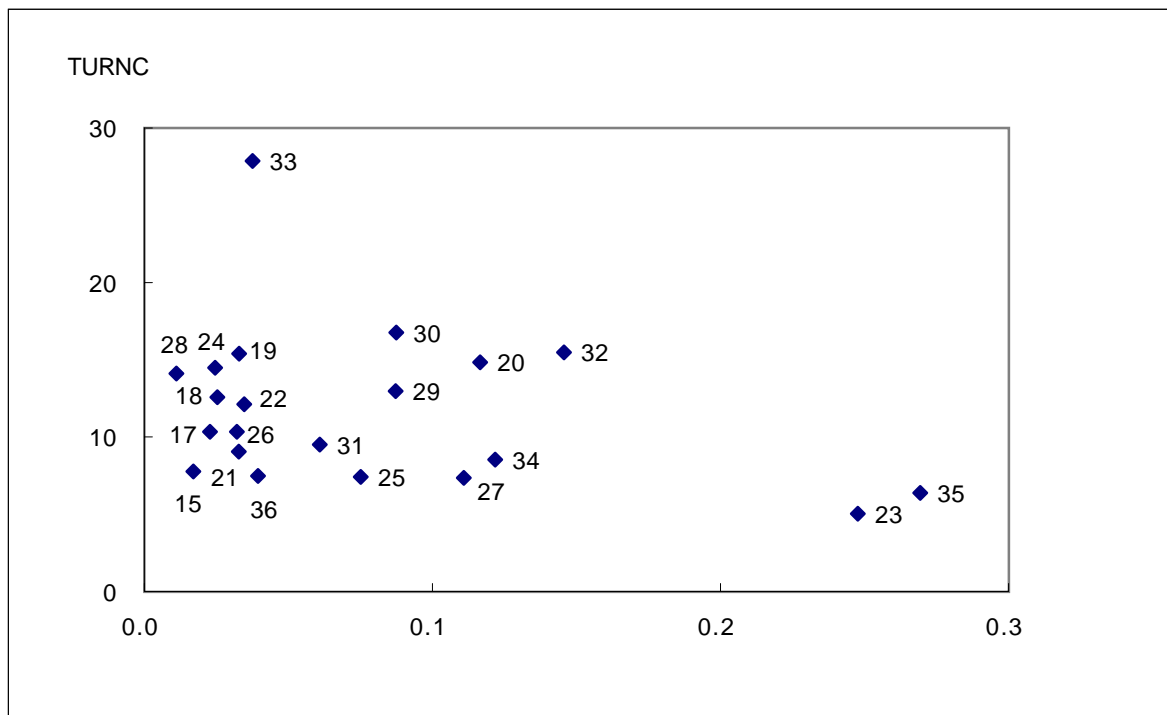
< 4 - 3 >

(TUR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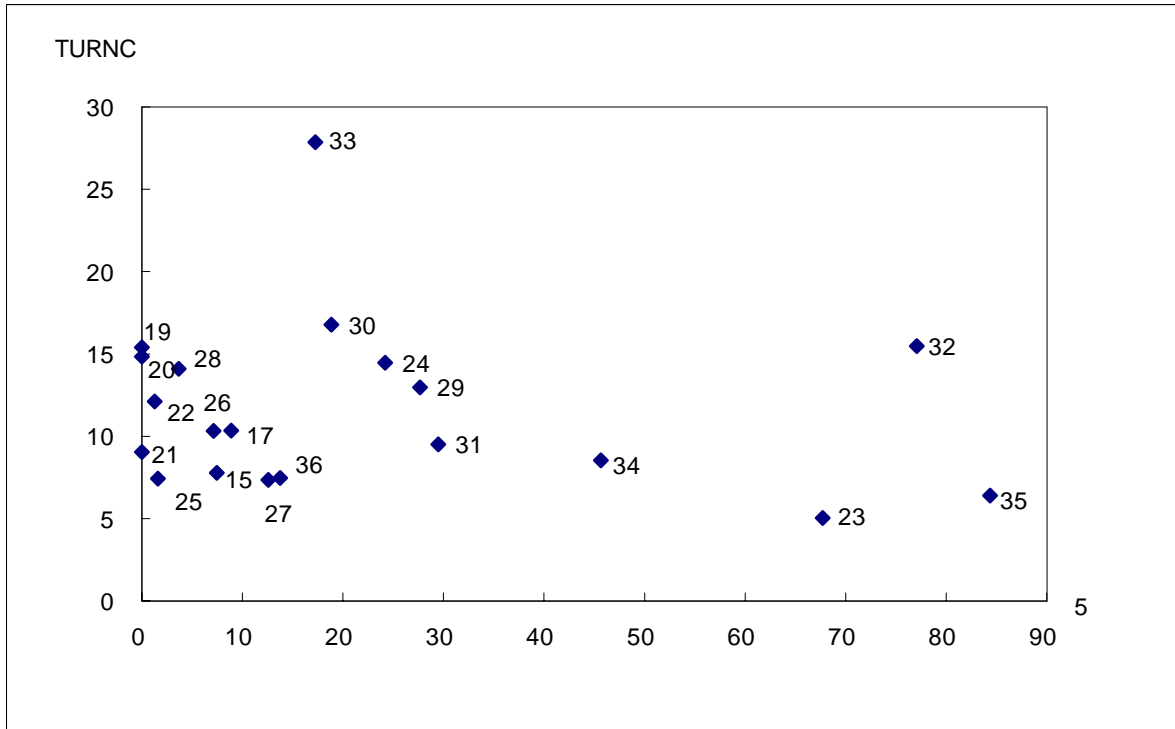
A. TURNC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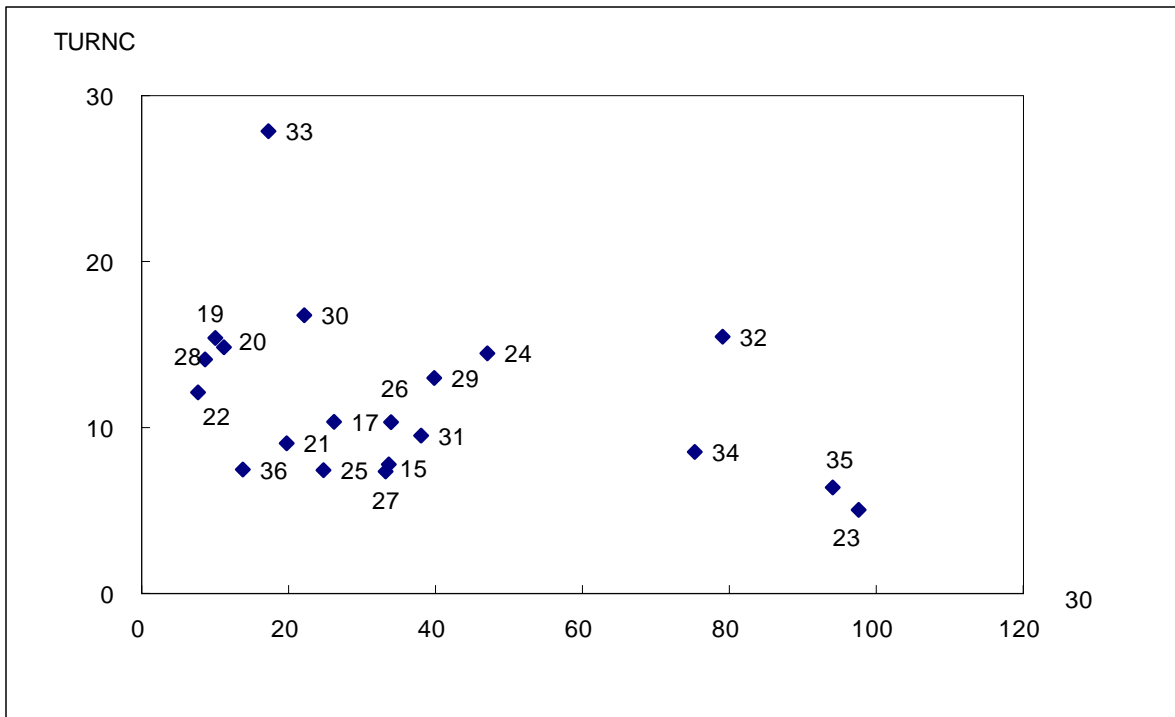
B. TURNC



C. TURNC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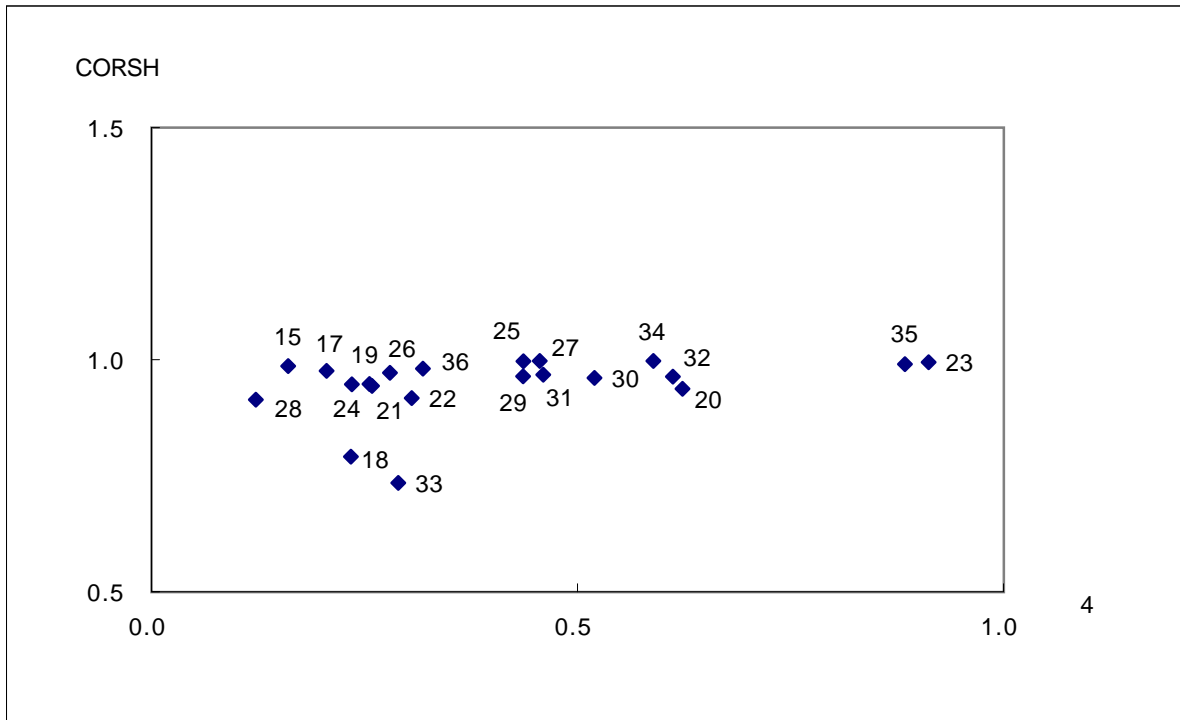
D. TURNC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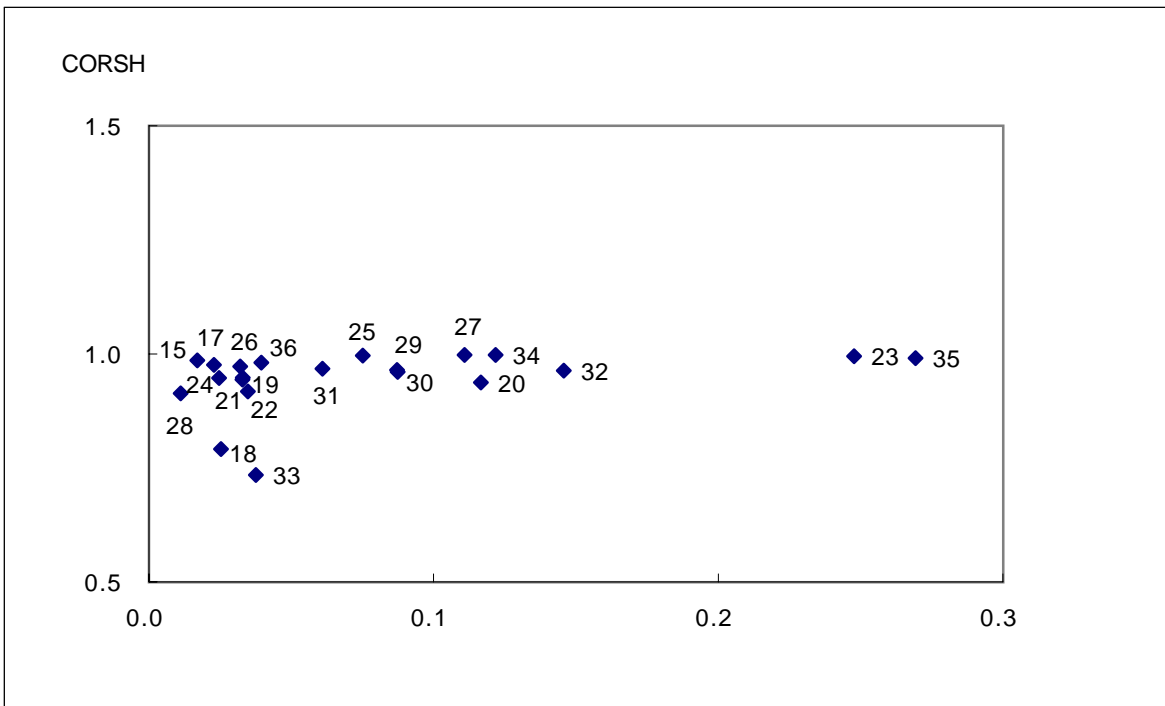
< 4 - 4 >

(COR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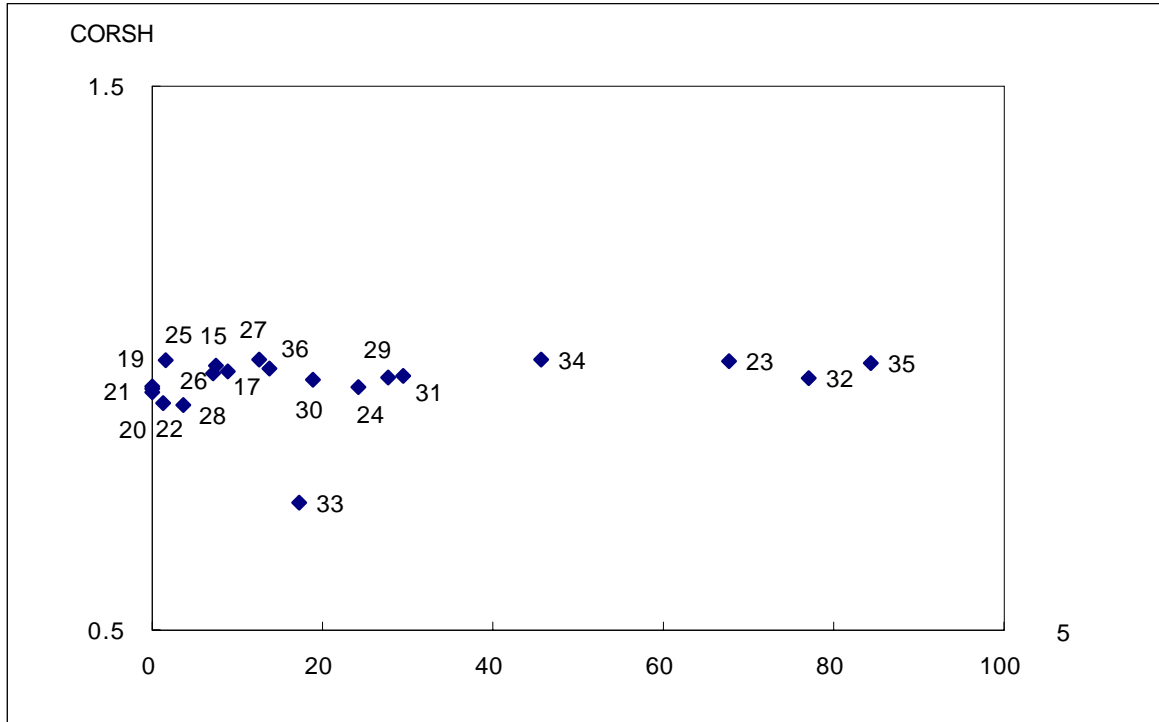
A. CORSH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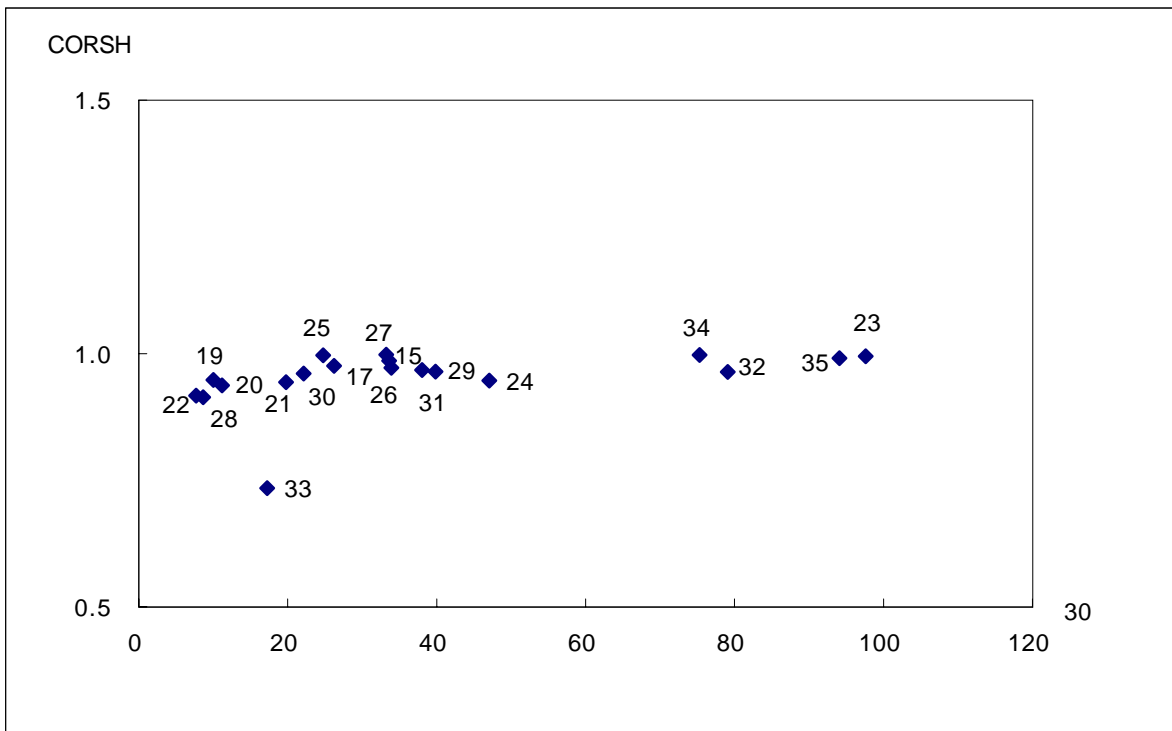
B. CORSH



C. CORSH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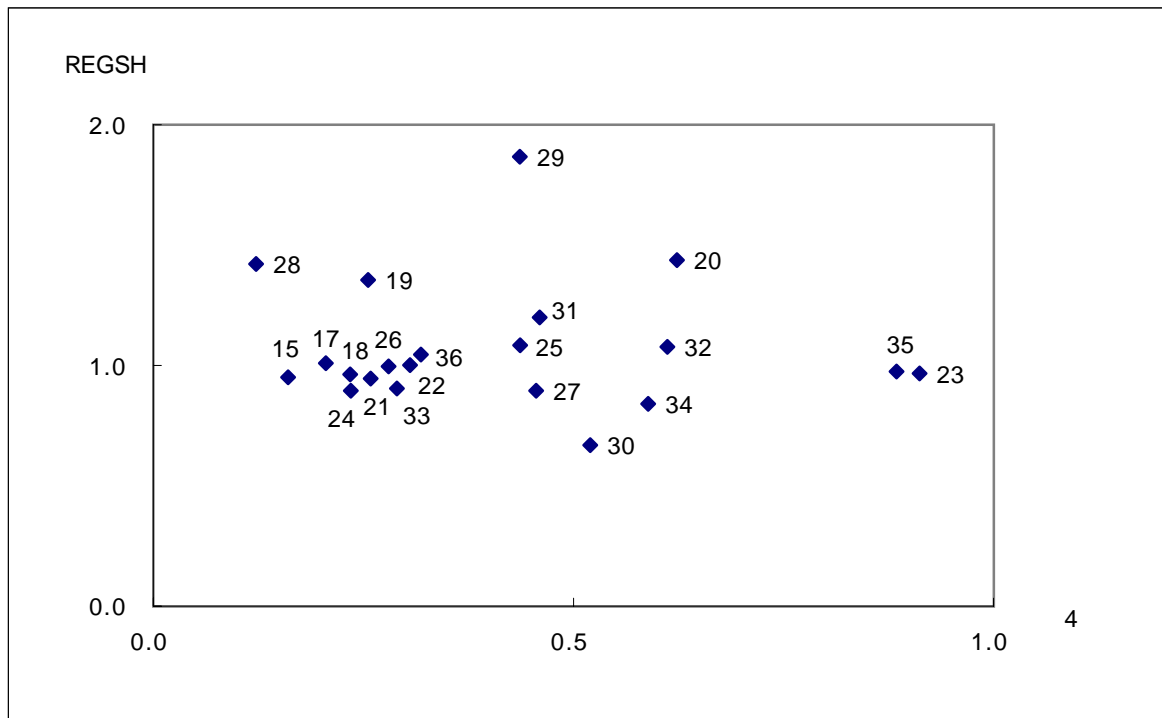
D. CORSH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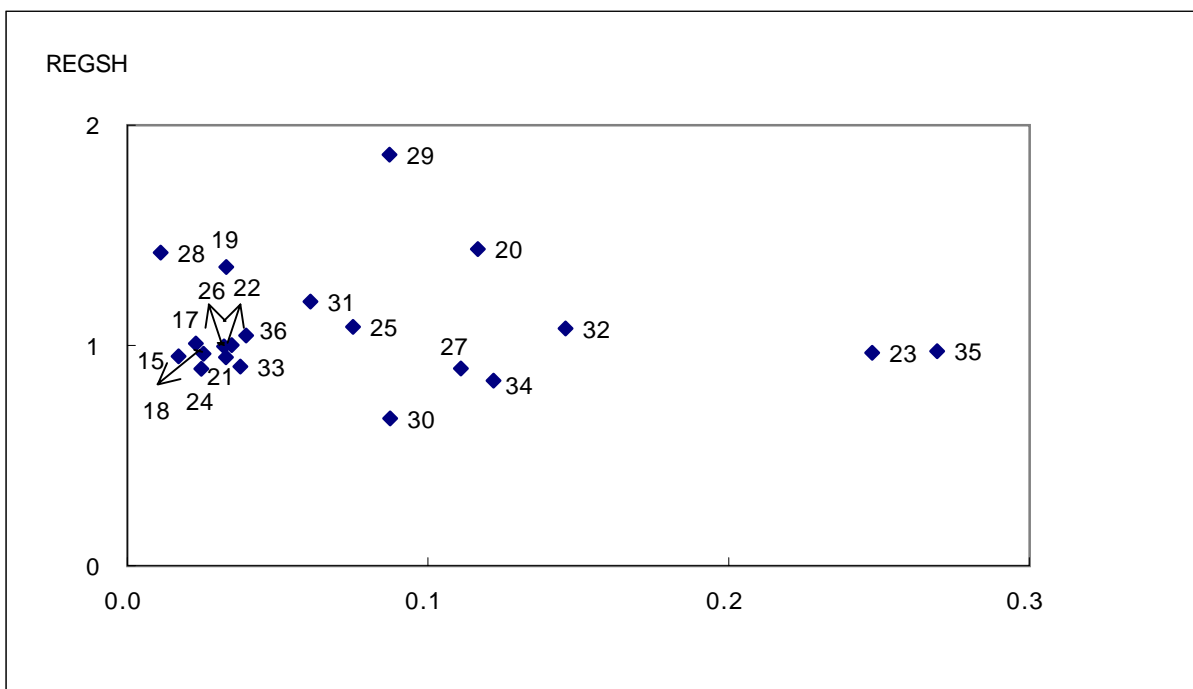
< 4 - 5 >

(REG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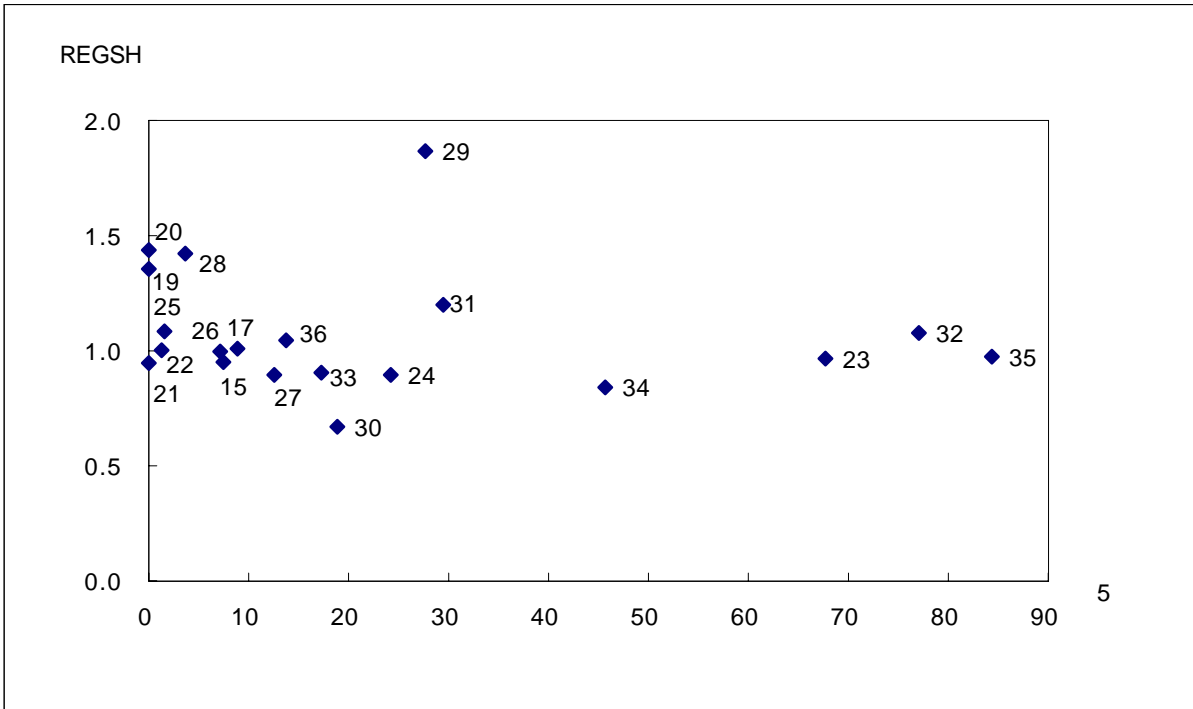
A. REGSH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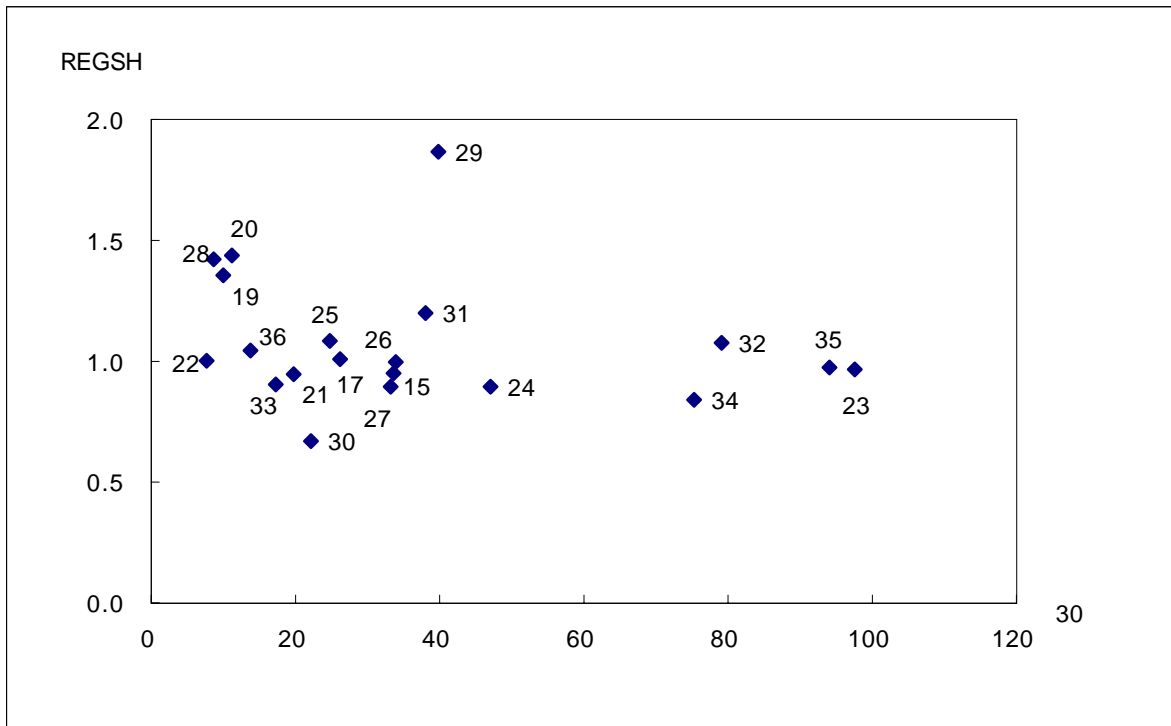
B. REGSH



C. REGSH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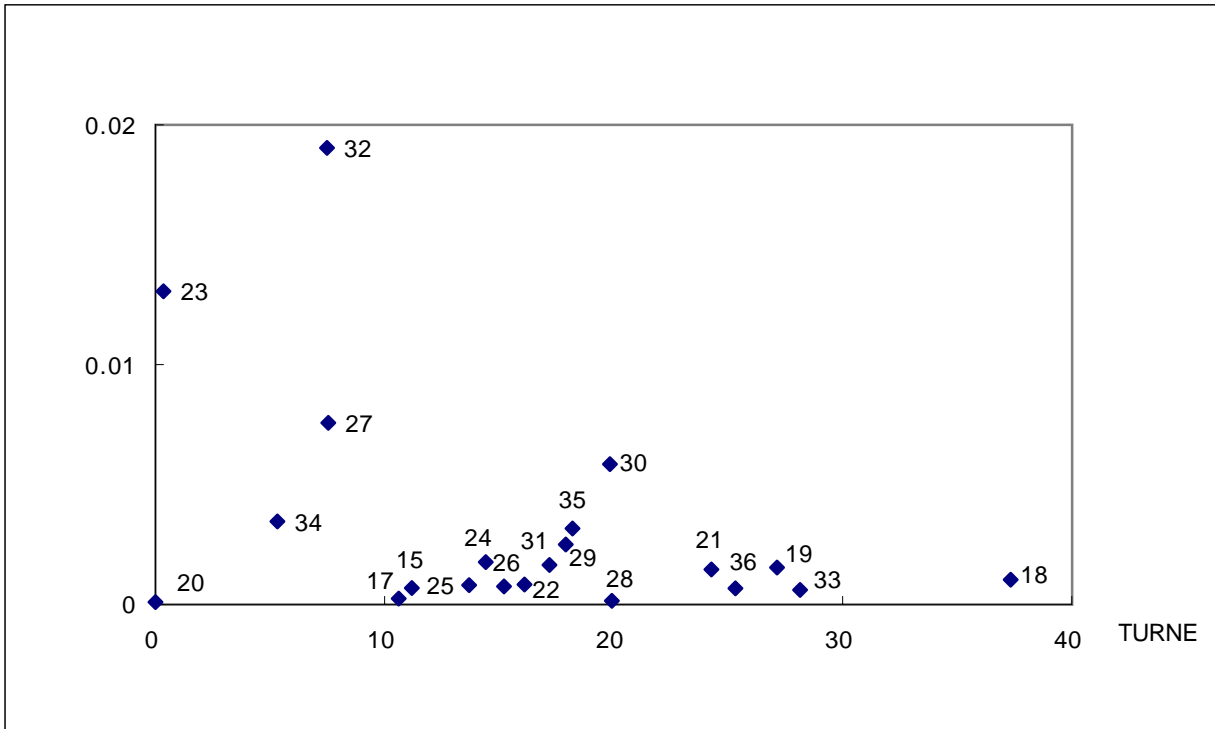


D. REGSH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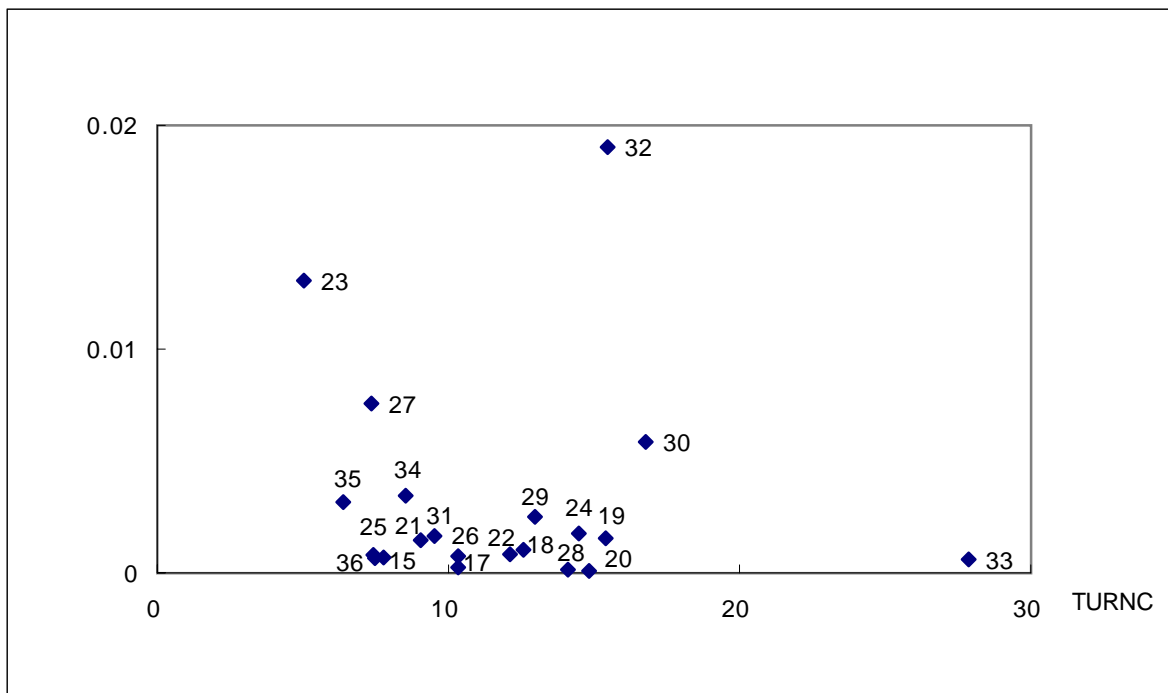


< 4 -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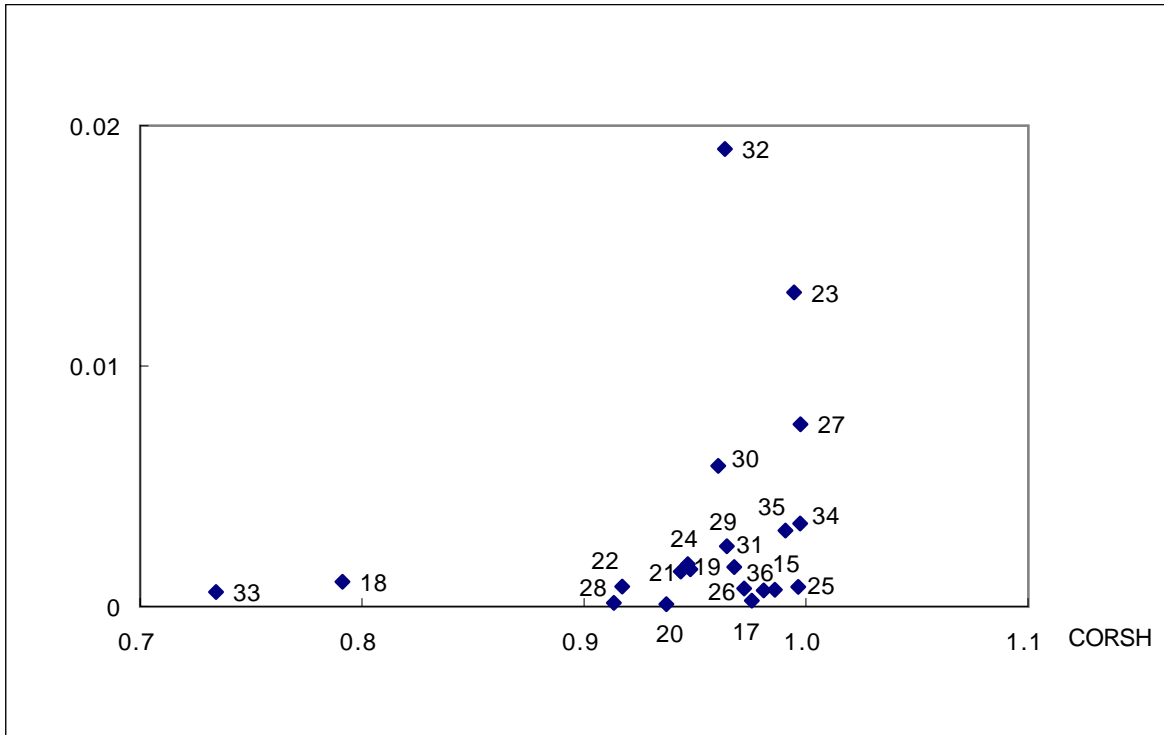
A. / (TUR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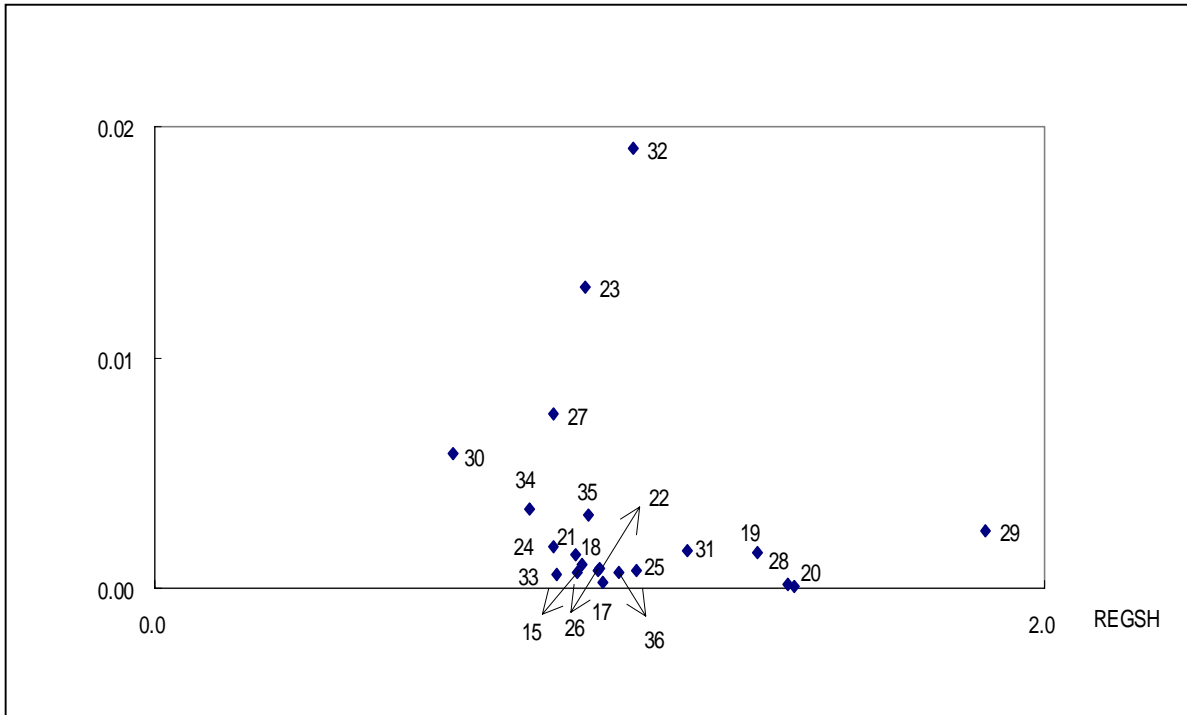
B. (TURNC)



C. (CORSH)



D. (REGSH)



Abstract:

Market Structure and Social Efficiency

by Inhak Hwang

Concerns regarding corporate concentration have been a recurrent theme in Korean public policy since the Fair Trade Law was enacted in 1981. Corporate concentration embodies at least four distinct concepts: aggregate concentration, conglomeration, ownership concentration, and market concentration. Among them market concentration and the resulting in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has been the major concern of most mainstream economists. The discussion in Korea, however, has tended to be misguided by focusing on equity and chaebol hegemony rather than efficiency arguments. This might explain why the Korean public policy has given much more weight on restraining aggregate concentration and conglomeration of the 30 largest chaebols.

As I have shown in another book,⁴⁹⁾ however, aggregate concentration is not a Korean-specific phenomenon. When the 30 chaebols are directly compared with the OECD countries' 30 largest firms, the employment-based aggregate concentration ratio remains relatively low in Korea; i.e. Korea 18.5%, U. S. A. 22.9%, Germany 31.7%, and U. K., 32.6%. It should be also noted that if increases in aggregate concentration do not indicate increases in market concentration, then attention should not be paid to them. Moreover the public policy targeting the sizes of domestic firms only will not fit the changing environment of global competition.

All the above facts being taken into consideration, we need to move our concerns from aggregate concentration to market concentration. Under this background this book deals with the issues on market concentration. More specifically this book examines three important questions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market structure and social efficiency. First, how large are the social costs of imperfect competition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Are they large enough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vigorously in market mechanism? Previous literatures on this issue have concerned themselves with

49) The Myths and Facts of the Korean Economic Concentration,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997.

the costs of monopoly. But it is a well-known fact that monopoly is the exceptions rather than the rules. For this reason the estimation here is based on the imperfect competition model in which monopoly becomes a special case.

Second, what correlations exist there between the social costs and concentration indices such as Herfindahl index and CR_k ? These indices measure market structure—generally size distribution of firms at a point in time. While it has been recognized that measures of market structure provide only a proxy for the intensity of competition, they are often used by public policy economists in the formula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competition policy. So by dealing with this second question this study tests the hypothesis that concentration indices are the reliable indicators of market power. It should be noted that most literatures have tested the hypothesis only in an indirect way by looking at the relation between concentration indices and profit rates.

Third, are concentration indices good substitutes for mobility indices? The Austrian school holds that competition is best characterized as a process; in contrast, the structuralist school postulates that competition is a state of affairs. Mobility statistics are direct measure of the intensity of competition. They reflect the process that takes place within an industry as firms enter and exit, grow and decline. But concentration measures reflect the state of affairs and are indirect proxies of the same phenomenon. Because of the widely held beliefs among structuralist economists that concentration and mobility are closely related, however, previous literatures pay little attention to mobility statistics. By dealing with the third question, this study tests whether these beliefs are empirically valid.

This study uses the firm data during the year 1991~1995. The data come from Annual Reports of Korean Companies published by Korea Productivity Center. Each firm here is placed into one of the KSIC 2-digit industries according to its core activity. This study measures various indicators of market structure, mobility statistics, and social costs and examines the correlation among three different measur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1. The social costs of imperfect competition vary from 0.12% to 2.89% of GNP depending on how to define the social costs. When we follow the tradition to define the social costs as the traditional welfare triangle, the social costs range from 0.12% to 0.23% of GNP. When we modify the welfare triangle by incorporating internal efficiency, they amount to 0.15%~0.28% of GNP. Following the Leibenstein's X-inefficiency hypothesis, they amount to

1.23%~1.36% of GNP. Finally adopting the extreme assumption of rent-seeking hypothesis that all the profits are dissipated, they amount to 2.76%~2.89% GNP.

2. A small set of industries is responsible for the lion's share of the social costs. Following the definition of the traditional welfare triangle, for example, this study shows that 80% of the social costs comes from three industries including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equipment(KSIC code 32), manufacture of basic metals(KSIC code 26), and manufacture of coke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KSIC code 23). This result does not vary much with which definition of the social costs are employed. Thus we might conclude that competition polic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se industries.

3. Concentration indices in general are unreliable indicators of market power. They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with the traditional and the modified welfare criteria. They have no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 social costs based on both the X-inefficiency model and the rent-seeking model. Even when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at maximum 0.60. This magnitude is not sufficiently large especially when we consider the public policy economists' strong beliefs that there is almost one to one correspondence between concentration indices and market power. In other words the empirical finding in this study does not support the hypothesis of "concentration indices as the reliable indicators of market power."

4. There is no close relation between concentration indices and mobility statistics. Concentration indices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only with the entry/exit ratio among various mobility statistics. Even in this cas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0.5, which is lower than expected. Economists have believed that two different measures are good substitutes reflecting the extent of competition and thus it is just a matter of choice which one should be applied. But th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it might be misleading to judge the intensity of competition from market structure measures. Even the high concentrated indices are consistent with high mobility statistics like entry/exit ratio and market instability measure which mean that high intensity of competition.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entry/exit ratio and the social costs has correlation coefficient of -0.44. This imply that the concentration and mobility indices reveal different aspects of the competitive process. Thus in order to pinpoint those industries where competition problem arises, mobility statistic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ddition to market structure measures.